

제 4 차 교 통 약 자 이 동 편 의 증 진 계 획

2 0 2 3 . 4



목 포 시



2023. 4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최종보고서



제 출 문

목포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4.

(주) 동 아 기 술 공 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47

대표이사 김 찬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3
1.1 과업의 배경	3
1.1.1 계획수립 배경	3
1.1.2 법률적 지위	4
1.2 과업의 목적	5
1.3 과업의 범위	5
1.3.1 공간적 범위	5
1.3.2 시간적 범위	6
1.3.3 내용적 범위	6
1.3.4 관련 법규 검토	7
1.4 계획수립 절차	8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실태	17
2.1 교통약자 현황	17
2.1.1 인구	17
2.1.2. 교통약자 현황	19
2.2 도시현황조사	23
2.2.1 도시공간구조	23
2.2.2 일반현황	26
2.2.3 교통시설현황	31
2.2.4 교통소통현황	39
2.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43
2.3.1 실태조사 개요	43
2.3.2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및 시설 조사	62
2.3.3 보행환경조사	76
2.4 관련계획 검토	86
2.4.1 제4차 국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86
2.4.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12, 관계부처 합동	101
2.4.3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2023~2027년)	105



제3장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평가	117
3.1 평가개요 및 3차 계획 검토	117
3.1.1 평가개요	117
3.1.2 기존 3차 사업계획 검토	118
3.2 제3차 계획 평가	120
3.2.1 세부추진성과 평가	120
3.2.2 종합평가	126
제4장 장래 전망 및 계획의 목표	129
4.1 사회·경제여건 전망	129
4.1.1 사회적 여건 변화 전망	129
4.1.2 경제적 여건 변화	132
4.1.3 국가 장래지표 전망	133
4.2 목포시 장래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135
4.2.1 목포시 교통여건 전망 검토	135
4.2.2 사회, 경제지표 전망	136
4.2.3 목포시 교통수요예측	137
4.3 교통약자 전망	139
4.3.1 교통약자 수요 예측방법 검토	139
4.3.2 국가계획 예측치	139
4.3.3 모형이용 교통약자 예측	147
4.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정비검토	150
4.4.1 관련계획 정비목표 검토	150
4.4.3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	153
제5장 분야별 정비방안	157
5.1 교통수단 개선방안	157
5.1.1 저상버스 도입 및 시설정비	157
5.1.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166
5.1.3 교통약자지원시스템 도입(장기)	168
5.1.4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 개선방안	173
5.1.5 버스정류장시설 개선방안	175
5.2 보행환경 개선방안	179



5.2.1 유효보도폭원 확보	179
5.2.2 보도포장정비	183
5.2.3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기준	184
5.2.4 보행자 우선구역	185
5.2.5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188
5.2.6 횡단보도 안전 확충	189
5.2.7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화사업 추진	190
5.3 장애인 관련 시설	192
5.3.1 점자블럭 시설정비	192
5.3.2 기타 교통약자시설 정비	193
5.3.3 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지정운영	196
5.4 제도 및 정책 정비	199
5.4.1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BF제도)	199
5.4.2 홍보 및 교육	201
제6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207
6.1 투자사업규모	207
6.1.1 사업규모	207
6.1.2 연차별 투자계획	209
6.2 투자효과평가 및 재원조달방안	210
6.2.1 투자효과 평가	210
6.2.2 정부의 본계획관련 투자계획	210
6.2.3 재원조달 방안	213
부 록	219



표 차 례

< 표 1-1 > 상위 관련법규 검토	7
< 표 2-1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현황(2021년)	19
< 표 2-2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추이	20
< 표 2-3 > 전국 지역별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2021년말 기준)	21
< 표 2-4 > 목포시 교통약자 현황(2021년)	22
< 표 2-5 > 전라남도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현황 (2016 ~ 2021년)	23
< 표 2-6 > 전라남도 교통약자 수 구성비율	23
< 표 2-7 > 전라남도 교통약자 구성율 산정	24
< 표 2-8 > 목포시 및 전라남도 교통약자 구성율 비교	24
< 표 2-9 > 경·위도상 위치	25
< 표 2-10 > 행정구역	26
< 표 2-11 > 지목별 토지이용	27
< 표 2-12 > 용도별 토지이용(도시지역)	27
< 표 2-13 > 인구 추이 현황	28
< 표 2-14 >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29
< 표 2-15 > 목포시 자동차 보유대수	30
< 표 2-16 > 학생수 추이	31
< 표 2-17 > 경제활동인구 추이	32
< 표 2-18 > 광역교통망 현황	33
< 표 2-19 > 목포시 주요 가로망 현황	34
< 표 2-20 > 도로 연장 추이	37
< 표 2-21 > 도로등급별 연장 현황	38
< 표 2-22 > 주차장 설치현황	39
< 표 2-23 > 철도 수송 실적 변화 추이	39
< 표 2-24 > 버스터미널 운행 현황	40
< 표 2-25 > 광역도로 교통량추이	41
< 표 2-26 >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현황	42
< 표 2-27 > 여객시설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45
< 표 2-28 > 승강장 조사기준	45
< 표 2-29 > 전자문자안내판 조사기준	46
< 표 2-30 > 행선지 표시 조사기준	46
< 표 2-31 > 교통약자용 좌석 조사기준	47



< 표 2-32 > 수직손잡이 조사기준	47
< 표 2-33 > 여객시설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48
< 표 2-34 > 보행접근로 조사기준	48
< 표 2-3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기준	50
< 표 2-3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기준	51
< 표 2-37 > 화장실 일반사항 조사기준	53
< 표 2-38 > 대변기 조사기준	54
< 표 2-39 > 소변기 조사기준	56
< 표 2-40 > 세면대 조사기준	56
< 표 2-41 > 세면대 조사기준	57
< 표 2-42 > 매표소 조사기준	58
< 표 2-43 > 세면대 조사기준	59
< 표 2-44 > 세면대 조사기준	60
< 표 2-45 > 보행환경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61
< 표 2-46 > 보도 조사기준	61
< 표 2-47 > 차량진출입부 조사기준	62
< 표 2-48 > 턱 낮추기 조사기준	62
< 표 2-49 > 점자블록 조사기준	62
< 표 2-5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기준	63
< 표 2-51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조사기준	63
< 표 2-52 > 자동안내시설(음성안내 방송시설) [방송여부]	64
< 표 2-53 > 문자안내판(글자정보)	64
< 표 2-54 > 행선지 표시	64
< 표 2-55 > 승강구 폭	65
< 표 2-56 > 승강구 미끄럼방지	65
< 표 2-57 > 승강구 계단 색상	65
< 표 2-58 > 교통약자 좌석 위치	65
< 표 2-59 > 교통약자 자리 표시	66
< 표 2-60 > 수직 손잡이 설치	66
< 표 2-61 > 교통수단 편의시설 종합평가	66
< 표 2-62 > 버스정류장 약자시설 기준 적합율	67
< 표 2-63 > 여객시설 주변 차량 진입부시설 기준적합율(여객시설 주변)	67
< 표 2-64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조사결과	68
< 표 2-65 > 보행접근로 조사표	69



< 표 2-66 > 출입구(문) 조사표	69
< 표 2-67 > 위생시설 조사표	70
< 표 2-68 > 장애인 대변기 조사표	71
< 표 2-69 > 장애인 소변기 조사표	71
< 표 2-70 > 장애인 세면대 조사표	72
< 표 2-71 > 안내시설 조사표	72
< 표 2-72 > 보안검사장 대기장소 편의시설 조사표	73
< 표 2-73 > 보도시설 조사표	74
< 표 2-74 > 점자블럭 조사표	74
< 표 2-75 > 보도차량 진입부 시설 조사표	74
< 표 2-76 > 진입차량 말뚝(블라드)조사표	75
< 표 2-77 > 목포시 보호구역 조정(통합, 축소, 확대) 기준	75
< 표 2-78 > 보호구역 조정 결과	75
< 표 2-79 > 보호구역 시설 조사 결과표	76
< 표 2-80 > 목포시 시내버스 승강장 조사	77
< 표 2-81 > 저상버스 도입현황	77
< 표 2-82 > 저상버스 운행노선	77
< 표 2-83 > BIT 설치현황	77
< 표 2-84 > 장애인 콜택시 도입현황	78
< 표 2-85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78
< 표 2-86 >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 보행여건 조사 내용	79
< 표 2-87 > 각 노선별 보도 유효폭 조사 현황	81
< 표 2-88 > 세부 노선별 교행가능 구간 조사표	83
< 표 2-89 > 보도경사구간 현황	84
< 표 2-90 > 포장상태조사	85
< 표 2-91 > 보도 연석높이 설치 현황	86
< 표 2-92 > 보행 장애물 조사	87
< 표 2-93 > 재정투입 계획	122
< 표 3-1 > 평가항목 선정개요	117
< 표 3-2 > 사업규모 현황(2018~2022년)	118
< 표 3-3 > 주요 사업비 규모(2018~2022년)	119
< 표 3-4 > 저상버스 도입현황	120
< 표 3-5 > 저상버스 운행 노선	120
< 표 3-6 > 저상버스 노선 운행율 비교	120



< 표 3-7 > 특별교통수단 도달율	121
< 표 3-8 >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121
< 표 3-9 > 목포시 특별교통수단 형식 및 운영현황	121
< 표 3-10 > 목포시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122
< 표 3-11 >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도달율	122
< 표 3-12 >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내용	122
< 표 3-13 >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도달율	122
< 표 3-14 >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	123
< 표 3-15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124
< 표 3-16 >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현황	124
< 표 3-17 > 투광기 설치현황	124
< 표 3-18 > 목포시 육교 철거현황	124
< 표 3-19 > 목포시 육교 철거현황	125
< 표 3-20 > BIT 설치현황	125
< 표 3-21 > 무장애 정류장 설치현황	125
< 표 3-22 > 제3차 종합평가표	126
< 표 4-1 > 전국 인구변화 전망	129
< 표 4-2 > 전국 가구구성 변화 전망	130
< 표 4-3 > 2035년 전국 가구유형별 가구구성비 순위	130
< 표 4-4 > 노선버스 사고 추세	132
< 표 4-5 > 1인당 GDP 현황	132
< 표 4-6 > 지역간 장래 수단별 통행량	133
< 표 4-7 > 통행자 특성 구분	134
< 표 4-8 > 도시기본계획 인구예측치	136
< 표 4-9 > 본 과업적용 인구예측치	136
< 표 4-10 > 목포시 총통행량 예측 보정	137
< 표 4-11 > 연도별 목적통행량 보정 (단위: 통행)	138
< 표 4-12 > 연도별 수단통행량 보정(단위: 통행)	138
< 표 4-13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추계	139
< 표 4-14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장애인 인구추계	140
< 표 4-15 > 목포시 및 전라남도 고령자 인구추계	141
< 표 4-16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영유아 동반자 인구추계	142
< 표 4-17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어린이 인구추계	143
< 표 4-18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임산부 인구추계	144



< 표 4-19 > 목포시 및 전라남도 교통약자 전체 인구추계	146
< 표 4-20 > 장애인수 예측 모형 및 예측결과	147
< 표 4-21 > 고령자수 예측 모형 및 예측결과	147
< 표 4-22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 예측 모형 및 예측	148
< 표 4-23 > 모형이용 교통약자 전망	149
< 표 4-24 >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검토	150
< 표 4-25 > 3차 정책 목표별 세부추진계획	150
< 표 4-26 > 추진전략 및 주요목표	151
< 표 4-27 > 분야별 2026년 목표와 주요내용(2026년)	152
< 표 4-28 > 분야별 세부추진 정책개요	153
< 표 4-29 > 4차년도 개선지표	154
< 표 5-1 > 저상버스 구조비교	157
< 표 5-2 > 국가계획 버스종류별 도입의무율(2026년)	158
< 표 5-3 > 대폐차 고려 저상버스 도입규모	158
< 표 5-4 > 목포시 시내버스 차량 연한	159
< 표 5-5 > 회사별 폐차연도 도달 차량	161
< 표 5-6 > 저상버스 운행노선 계획	162
< 표 5-7 > 휠체어 승강설비	162
< 표 5-8 > 시내버스 수직손잡이 시설기준	164
< 표 5-9 > 중형저상버스 기본 사항	165
< 표 5-10 > 목포시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167
< 표 5-11 > 목포시 특별교통수단 추가확대 대수	167
< 표 5-12 > 바우처 택시 도입목표	168
< 표 5-13 >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168
< 표 5-14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관한 법규	169
< 표 5-15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단계별 구축전략	170
< 표 5-16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축지점	170
< 표 5-17 > 구성요소별 운영방안	171
< 표 5-18 > 구성요소별 운영방안	172
< 표 5-19 > 무장애 버스정류장 정비시설	177
< 표 5-20 > 무장애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	177
< 표 5-21 > 버스정류장 정비 목표	178
< 표 5-22 > BIT설치 목표	178
< 표 5-23 > 버스정류장 접근시설 목표 설치율	178



< 표 5-24 > 조사대상 주요간선도로의 최소보도폭원 미확보 노선 및 정비구간	179
< 표 5-25 > 보행환경 지구 개선사업	181
< 표 5-26 > 차량진입구 시설 현행 및 목표 설치율	181
< 표 5-27 > 보도정비 사업 현행 및 목표 설치율	181
< 표 5-28 > 보도폭 2.0m미만 교행구간 정비계획	182
< 표 5-29 > 보도포장의 시설기준	183
< 표 5-30 > 보행우선구역의 정의	185
< 표 5-31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지정 대상근거	186
< 표 5-32 >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및 면적	186
< 표 5-33 > 목포시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187
< 표 5-34 > 목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현황	188
< 표 5-35 > 목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현황	188
< 표 5-36 >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계획	189
< 표 4-1 > 야간조명개선 투광기 설치사업	189
< 표 5-37 > 육교철거 추진 현황	190
< 표 5-38 > 기철거 육교시설 현황	191
< 표 5-39 > 추가 철거 평가 우선순위	191
< 표 5-40 > 4차연도 철거대상 육교	191
< 표 5-41 > 점자블럭 설치계획	193
< 표 5-42 > 블라드 설치 계획	194
< 표 5-43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정비계획	195
< 표 5-44 > 목포시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계획	196
< 표 5-45 > 투광기 설치 계획	196
< 표 5-46 > 평균 보행 속도 비교	198
< 표 5-47 > 노인보호구역 추가지정	198
< 표 5-48 > BF 인증 대상 시설	200
< 표 5-49 > BF 인증 절차	201
< 표 5-50 > 정부의 교통약자 홍보 계획	202
< 표 5-51 > 교육관련 사례 (교통약자 교육방안 사례)	203
< 표 6-1 > 사업규모 현황(2021~2026년)	207
< 표 6-2 > 주요 사업비 규모(2021~2026년)	208
< 표 6-3 > 주요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21~2026년)	209
< 표 6-4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유형	214
< 표 6-5 > 민간참여의 유형	215



그림 차례

< 그림 1-1 > 계획의 공간적 범위	5
< 그림 1-2 > 계획수립절차	8
< 그림 2-1 > 토지이용	25
< 그림 2-2 > 인구 변화 추이	26
< 그림 2-3 > 자동차보유대수	28
< 그림 2-4 > 학생수 변화 추이	29
< 그림 2-5 > 경제활동 변화 추이	30
< 그림 2-6 > 광역가로망 현황	31
< 그림 2-7 > 목포시 주요간선 가로망도	34
< 그림 2-8 > 도로 연장 변화 추이	35
< 그림 2-9 > 철도여객 수송추이	38
< 그림 2-10 >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현황	41
< 그림 2-11 > 주요 교차로 교통량현황	42
< 그림 2-12 > 전자문자안내판의 표시와 설치예시	44
< 그림 2-13 > 행선지 표시의 설치예시	44
< 그림 2-14 > 수직손잡이 설치예시	45
< 그림 2-15 > 재질/마감, 높이차이 제거 평가 예시	47
< 그림 2-16 >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예시	49
< 그림 2-17 > 출입구 단차, 문형태, 손잡이, 점형블록 평가 예시	50
< 그림 2-18 > 출입구 평가 예시	51
< 그림 2-19 > 대변기 남녀구분 설치 예시	52
< 그림 2-20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평가 예시	53
< 그림 2-21 > 소변기 평가방법 예시	54
< 그림 2-22 > 세면대 평가 예시	55
< 그림 2-23 > 점자블록 규격 및 설치방법 예시	56
< 그림 2-24 > 장애인용 매표소	57
< 그림 2-25 > 승강장 평가 예시	58
< 그림 2-26 > 목포시 음향신호기 설치	66
< 그림 2-27 > 조사대상 주요 간선도로망 현황	78
< 그림 2-28 > 조사구간 중 보도 미설치 구간	80
< 그림 2-29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90
< 그림 2-30 > 국외 도시간 저상 좌석버스 사례(이베코버스 브로셔)	90



< 그림 2-31 > 지역 이동지원센터 지역 및 수단간 정보연계 서비스	92
< 그림 2-32 >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	93
< 그림 2-33 > 일본의 세분화된 버스의 종류별 이동편의시설 기준	99
< 그림 3-1 > 저상버스도입 평가	120
< 그림 3-2 > 도입율비교	120
< 그림 3-3 >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121
< 그림 3-4 > 이용자수 기준 평가	121
< 그림 3-5 > 보행환경 개선 사례	123
< 그림 3-6 > 무장애 정류장 예시	125
< 그림 4-1 >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130
< 그림 4-2 > 지역간 장래 수단별 통행량	134
< 그림 4-3 > 교통약자 전망치	149
< 그림 5-1 > 저상버스 운행사례(목포)	158
< 그림 5-2 > 휠체어 승강설비 시설 기준	163
< 그림 5-3 > 승강설비 시내버스	163
< 그림 5-4 > 휠체어고정 장치	163
< 그림 5-5 > 휠체어전용공간	164
< 그림 5-6 > 교통약자용 좌석 및 안내판 설치의 예	164
< 그림 5-7 > 시내버스 수직손잡이 설치사례	164
< 그림 5-8 >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시범차량	165
< 그림 5-9 > 중형 저상버스 예시	165
< 그림 5-10 > 장애인을 위한 개조된 미니버스	167
< 그림 5-11 > 저상버스 내부(휠체어 공간)	167
< 그림 5-12 > 보행자 안전대기시스템 개념도	169
< 그림 5-13 > 교통약자 지원시스템 구축지점도	171
< 그림 5-14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성체계	172
< 그림 5-15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성도	172
< 그림 4-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	173
< 그림 5-16 >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174
< 그림 5-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안내판설치 예	174
< 그림 5-18 > 장애인주차장 설치	174
< 그림 5-19 > 주차장 확보(개념)	174
< 그림 5-20 > 버스정류장 시설 설치원칙	175
< 그림 5-21 >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례	176



< 그림 5-22 > 무장애 버스 승강장 사례	178
< 그림 5-23 > 최소 유효폭 기준	180
< 그림 5-24 > 교행구간 대피소 설치	182
< 그림 5-25 > 장애물 존, 경계띠, 안전보행로가 설치된 예	184
< 그림 5-26 > 보행안전지대 미설치사진	184
< 그림 5-27 >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정 절차	187
< 그림 5-28 >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구성	189
< 그림 5-29 >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사례	190
< 그림 5-30 > 횡단보도 앞 점자블럭 시설기준	192
< 그림 5-31 > 외국의 진행방향 점자블럭 시설사례(日本)	193
< 그림 5-32 > 블라드 시설기준적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사례	194
< 그림 5-33 > 음향신호기 시설기준(높이)	195
< 그림 5-34 > 각종 음향신호기 시설	195
< 그림 5-35 > 잔여시간표시	196
< 그림 5-36 > 노인보호구역 관련시설	198

제1장 서 론

1.1 과업의 배경

1.1.1 계획수립 배경

- 지속적인 인간 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며,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여객시설·교통수단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의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대됨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
- 이러한 사유로 정부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이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하도록 제도화하였음
- 목표시는 그동안 총 3차에 걸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2021년 기간이 만료되어 금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1.2 법률적 지위

- 계획구분 : 법정계획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 수립주체 : 목표시장
- 확정절차 : 계획 수립 후 도지사에게 제출 후 고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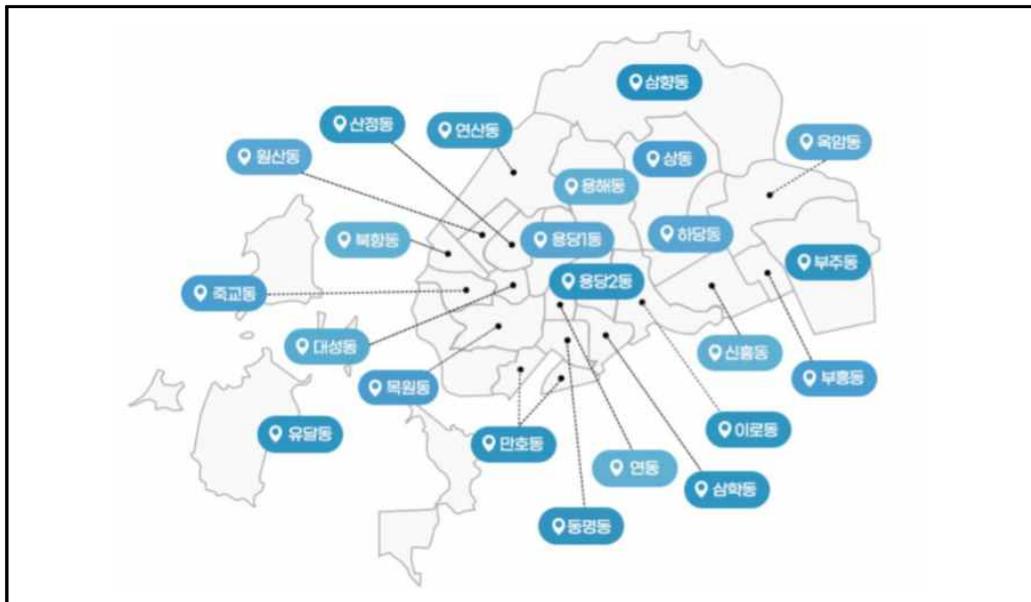
1.2 과업의 목적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따라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수단, 보행환경실태의 조사 분석
- 향후 5년간의 목포시의 실행 가능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대책 및 계획 추진을 마련하고,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3 과업의 범위

1.3.1 공간적 범위

- 본 과업은 목포시 행정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대상은 교통약자 및 보행자 이용공간을 대상으로 함



< 그림 1-1 > 계획의 공간적 범위

1.3.2 시간적 범위

- 계획수립을 위한 시작연도는 2022년, 목표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을 고려하여 2026년으로 함
 - ▶ 기준연도 : 2021년(자료기준은 2019 ~ 2021년 최근연도)
 - ▶ 목표연도 : 2026년(상위계획 : 2022~2026년)
 - ▶ 시행계획 연도 : 2022 ~ 2026년(5년)

1.3.3 내용적 범위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7조 2항의 기본계획 내용은 제6조 2항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과업에서는 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 등을 검토하여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음
- 다음은 해당 내용임
 - ▶ 제3차 목포시 기존계획 성과 평가
 -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검토(2017~2021년)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 ▶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 ▶ 저상버스 도입 규모 및 확보 계획
 -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 장애인 콜택시 도입 규모 및 확보 계획
 - ▶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추진 자원 조달 방안
 -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4 관련 법규 검토

- 교통약자 수립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근거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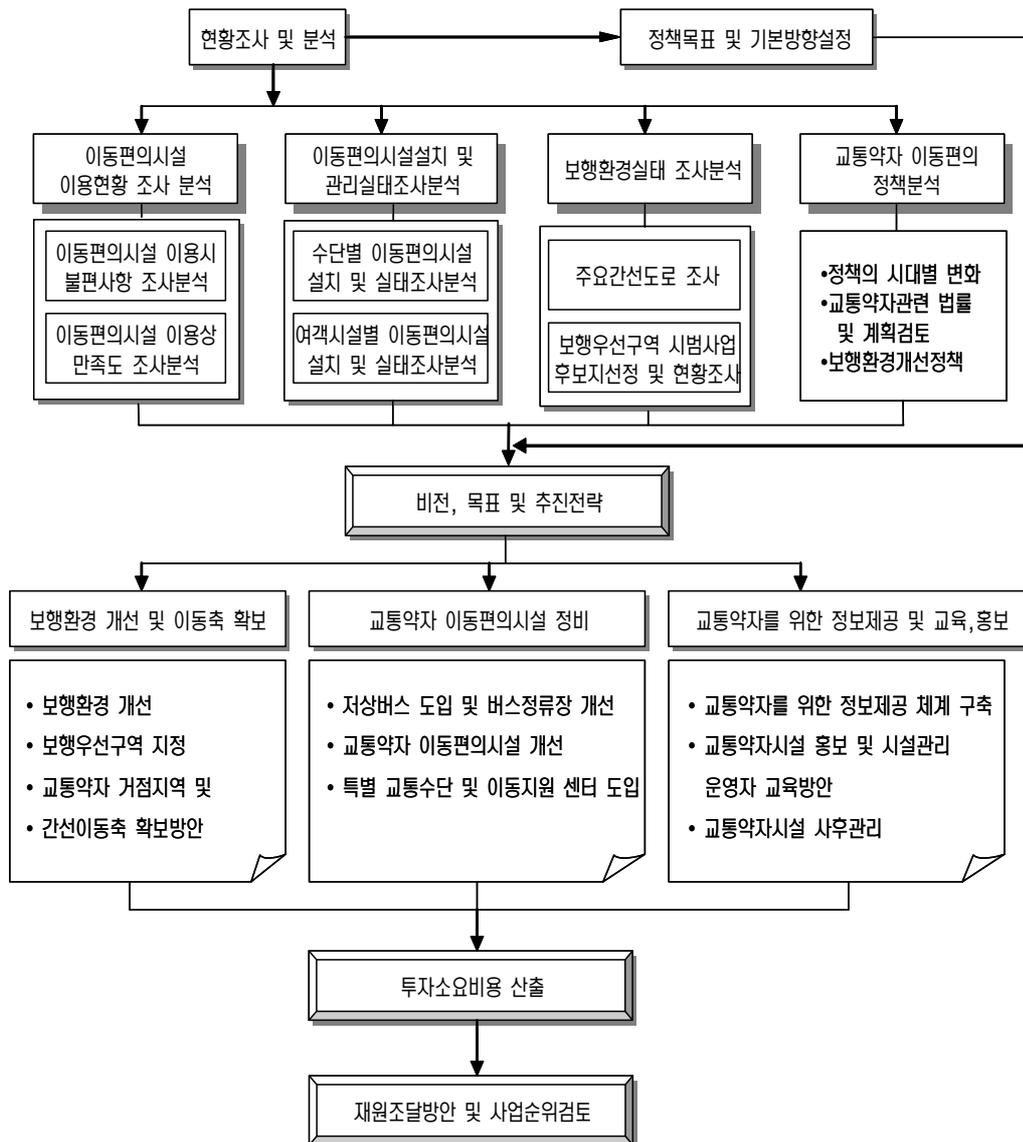
- 다음은 본 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련법규 검토 결과로 주요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 그리고 광역 조례 등이 상위 법임

< 표 1-1 > 상위 관련법규 검토

관련법규		주요 내용 정리
교통약자 관련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시설 설치대상 시설(제9조) · 교통시설 설치기준(제10조) · 저상버스(제1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특별시 광역시 : 운행하려는 대수 2분의 1 -시와 군 : 운행하려는 대수 3분의 1 ·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의 2분의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제5조)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150명당 1대 · 특별교통수단이용자(제6조)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 사람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기타 조례로 정한 자 ·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 차량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하는 차량 · 특별교통수단 시설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기중기 -휠체어 고정설비, 휠체어 손잡이 등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지원계획수립(제5조)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제11조)
	전라남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 조례	·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 위원회 설치

1.4 계획수립 절차

- 다음은 본 계획의 수립절차 및 단계별 주요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에서는 4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란 특성을 반영 일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였음



< 그림 1-2 > 계획수립절차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실태

2.1 교통약자 현황

2.1.1 인구

가. 인구 현황

- 2021년 기준 목포시 인구는 221,64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대수는 103,162세대 이고 세대당 인구는 2.1명임
- 다음은 2021년 기준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현황임

< 표 2-1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현황(2021년)

(단위 : 명)

구분	인구(명)			세대수 (세대)	세대당 인구(명)
	합계	남자	여자		
목포시	221,642	110,665	110,977	103,162	2.1
여수시	281,977	144,724	137,253	128,169	2.2
순천시	283,570	141,499	142,071	124,029	2.3
나주시	119,367	60,436	58,931	59,292	2.0
광양시	152,026	79,308	72,718	67,103	2.3
담양군	47,048	23,885	23,163	24,773	1.9
곡성군	27,948	13,773	14,175	15,536	1.8
구례군	25,423	12,354	13,069	13,462	1.9
고흥군	63,711	31,196	32,515	35,379	1.8
보성군	39,786	19,395	20,391	22,511	1.8
화순군	63,397	31,258	32,139	32,012	2.0
장흥군	37,038	18,023	19,015	20,103	1.8
강진군	34,174	16,570	17,604	18,592	1.8
해남군	68,456	34,089	34,367	35,225	1.9
영암군	57,056	30,563	26,493	28,197	2.0
무안군	92,690	46,676	46,014	42,739	2.2
함평군	31,886	16,068	15,818	17,980	1.8
영광군	52,862	26,481	26,381	27,112	1.9
장성군	44,288	22,782	21,506	23,160	1.9
완도군	50,775	26,285	24,490	26,029	2.0
진도군	31,388	16,001	15,387	16,700	1.9
신안군	38,951	20,987	17,964	21,843	1.8
전라남도	1,865,459	943,018	922,441	903,108	2.1

자료) 전라남도 통계연보 2022년

- 목포시와 전라남도 인구 추이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0.82%로 감소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1.39%로 감소하고 있음
- 다음은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변화 추이임

< 표 2-2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추이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목포시	234,379	235,423	233,175	227,178	221,642	-1.39%
여수시	286,382	287,868	287,479	284,866	281,977	-0.39%
순천시	279,331	281,397	281,722	284,238	283,570	0.38%
나주시	110,110	116,640	117,445	118,251	119,367	2.04%
광양시	155,857	158,162	158,437	153,332	152,026	-0.62%
담양군	47,285	47,952	47,533	47,199	47,048	-0.13%
곡성군	30,131	30,118	29,376	28,514	27,948	-1.86%
구례군	27,525	27,350	26,784	25,925	25,423	-1.97%
고흥군	66,736	66,757	65,972	64,923	63,711	-1.15%
보성군	43,755	43,295	41,908	40,921	39,786	-2.35%
화순군	64,680	64,833	63,646	63,359	63,397	-0.50%
장흥군	40,136	39,913	39,155	38,334	37,038	-1.99%
강진군	36,868	36,598	35,742	35,042	34,174	-1.88%
해남군	73,604	73,280	71,806	70,218	68,456	-1.80%
영암군	55,616	58,703	59,109	57,868	57,056	0.64%
무안군	82,872	83,591	82,733	87,630	92,690	2.84%
함평군	34,328	34,100	33,560	32,685	31,886	-1.83%
영광군	54,774	55,016	54,773	54,026	52,862	-0.88%
장성군	46,111	46,900	46,836	45,457	44,288	-1.00%
완도군	52,109	53,449	52,858	52,128	50,775	-0.65%
진도군	31,765	32,631	32,232	32,659	31,388	-0.30%
신안군	42,070	42,036	41,102	39,702	38,951	-1.91%
전라남도	1,927,645	1,916,012	1,903,383	1,884,455	1,865,459	-0.82%

2.1.2. 교통약자 현황

가. 전국교통약자

- 2021년 기준 전국 교통약자는 15,509천명으로 총 인구의 30.0%이며 전라남도는 인구의 3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약자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 표 2-3 > 전국 지역별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2021년말 기준)

행정구역	총 인구 (천명)	교통약자 인구(천명)							
		소 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천명)	(%)	(천명)	중복제외				
전국	51,639	15,509	30.0	2,645	1,238	8,851	1,943	3,216	261
서울특별시	9,509	2,621	27.6	392	180	1,597	308	491	46
부산광역시	3,350	1,075	32.1	176	80	682	112	187	14
대구광역시	2,385	719	30.1	127	60	417	85	145	11
인천광역시	2,948	823	27.9	149	74	435	113	186	15
광주광역시	1,442	415	28.8	70	36	213	58	100	8
대전광역시	1,452	414	28.5	72	37	221	55	93	7
울산광역시	1,122	311	27.7	51	26	153	47	79	6
세종특별도	372	110	29.7	13	6	37	25	38	4
경기도	13,565	3,749	27.6	579	292	1,881	573	927	76
강원도	1,538	525	34.1	102	45	333	53	86	7
충청북도	1,597	517	32.4	98	47	302	61	100	8
충청남도	2,119	715	33.7	135	60	420	84	140	11
전라북도	1,787	630	35.2	132	56	398	59	110	8
전라남도	1,833	682	37.2	140	57	445	64	108	8
경상북도	2,627	929	35.4	183	76	596	92	152	12
경상남도	3,314	1,061	32.0	190	89	608	125	223	16
제주특별도	677	212	31.3	37	18	111	29	50	4

자료 :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나. 목포시 교통약자

- 목포시 교통약자는 2021년 기준 69,79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고령자가 39,06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2-4 > 목포시 교통약자 현황(2021년)

(단위 : 명)

행정구역	교통약자	교통약자 인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목포시	69,793	13,822	39,063	7,571	16,067	792
여수시	89,019	17,835	56,362	10,079	16,910	1,356
순천시	78,611	15,911	46,062	11,570	19,578	1,563
나주시	38,125	12,949	26,740	5,346	7,645	701
광양시	40,905	7,915	20,994	6,680	10,712	892
담양군	20,085	6,195	14,662	1,180	1,838	155
곡성군	14,926	3,789	10,233	444	1,004	44
구례군	12,695	2,884	8,968	476	1,043	87
고흥군	36,275	5,128	26,507	1,305	2,072	191
보성군	22,857	6,033	15,714	772	1,428	91
화순군	25,667	4,713	17,232	1,600	3,124	191
장흥군	19,526	4,641	13,022	933	1,605	161
강진군	18,293	3,550	12,131	778	1,426	102
해남군	34,380	4,580	22,562	1,968	2,989	295
영암군	24,071	5,608	14,648	1,693	2,730	228
무안군	31,143	5,354	17,986	4,015	7,356	458
함평군	17,381	5,276	11,867	642	1,112	83
영광군	24,473	4,399	15,641	2,322	2,464	413
장성군	20,455	4,393	13,536	1,252	2,123	153
완도군	24,018	4,328	16,452	1,544	2,397	203
진도군	15,606	3,151	10,405	818	1,349	129
신안군	20,567	4,175	14,411	763	1,221	142
계	698,871	146,629	445,198	63,751	108,193	8,430

주) 교통약자 인구: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각 교통약자 합계 중복인구 (장애인-고령자, 장애인-어린이, 장애인-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인구 : 보건복지부(장애인 등록 현황)

고령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5세 이상인구

임산부 인구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생인구현황으로 대체

어린이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6~12세 인구

영유아동반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0~5세 인구

- 2021년 말 전남의 교통약자 인구는 146,62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이 68,40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증가율은 자폐성 장애가 9.4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호흡기 장애는 연평균 -4.77%로 감소하고 있음

< 표 2-5 > 전라남도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현황 (2016 ~ 2021년)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가율
합계	141,578	142,174	142,213	141,888	140,942	146,629	0.70%
지체	74,290	72,205	71,918	70,745	69,601	68,404	-1.64%
시각	14,338	14,104	14,078	13,968	13,846	13,621	-1.02%
청각·언어	18,252	20,383	20,673	21,258	21,405	21,412	3.25%
지적	11,339	11,807	11,847	12,076	12,232	12,350	1.72%
뇌병변	11,697	11,622	11,586	11,506	11,329	11,162	-0.93%
자폐성	586	702	729	792	832	920	9.44%
정신	5,725	5,719	5,728	5,726	5,705	5,698	-0.09%
신장	2,940	3,203	3,237	3,421	3,593	3,849	5.54%
심장	215	191	188	185	179	184	-3.07%
호흡기	646	583	577	538	511	506	-4.77%
간	447	518	519	542	569	600	6.06%
안면	92	90	86	86	90	91	-0.22%
장루·요루	617	654	655	654	659	695	2.41%
뇌전증	394	393	392	391	391	378	-0.83%

자료) 전라남도 통계연보 2022년

- 구성을 분석 결과 시각장애가 46.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각 언어장애가 14.60%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표 2-6 > 전라남도 교통약자 수 구성비율

구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기타
약자수	68,404	13,621	21,412	12,350	11,162	5,698	13,982
구성율	46.65%	9.29%	14.60%	8.42%	7.61%	3.89%	9.54%

- 목포시 전체 인구대비 교통약자 비율은 31.5%이고 전체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56%로 가장 많고, 어린이가 23.0%로 나타남
- 전라남도와 비교할 때 고령자가 7.7% 적고 어린이가 7.5% 많은 것으로 분석됨

< 표 2-7 > 전라남도 교통약자 구성을 산정

(단위 : 명)

행정구역	인구수 (명)	교통약자 인구						교통 약자 구성율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계	
목포시	221,642	13,822	39,063	7,571	16,067	792	69,793	31.5%
여수시	281,977	17,835	56,362	10,079	16,910	1,356	89,019	31.6%
순천시	283,570	15,911	46,062	11,570	19,578	1,563	78,611	27.7%
나주시	119,367	12,949	26,740	5,346	7,645	701	38,125	31.9%
광양시	152,026	7,915	20,994	6,680	10,712	892	40,905	26.9%
담양군	47,048	6,195	14,662	1,180	1,838	155	20,085	42.7%
곡성군	27,948	3,789	10,233	444	1,004	44	14,926	53.4%
구례군	25,423	2,884	8,968	476	1,043	87	12,695	49.9%
고흥군	63,711	5,128	26,507	1,305	2,072	191	36,275	56.9%
보성군	39,786	6,033	15,714	772	1,428	91	22,857	57.4%
화순군	63,397	4,713	17,232	1,600	3,124	191	25,667	40.5%
장흥군	37,038	4,641	13,022	933	1,605	161	19,526	52.7%
강진군	34,174	3,550	12,131	778	1,426	102	18,293	53.5%
해남군	68,456	4,580	22,562	1,968	2,989	295	34,380	50.2%
영암군	57,056	5,608	14,648	1,693	2,730	228	24,071	42.2%
무안군	92,690	5,354	17,986	4,015	7,356	458	31,143	33.6%
함평군	31,886	5,276	11,867	642	1,112	83	17,381	54.5%
영광군	52,862	4,399	15,641	2,322	2,464	413	24,473	46.3%
장성군	44,288	4,393	13,536	1,252	2,123	153	20,455	46.2%
완도군	50,775	4,328	16,452	1,544	2,397	203	24,018	47.3%
진도군	31,388	3,151	10,405	818	1,349	129	15,606	49.7%
신안군	38,951	4,175	14,411	763	1,221	142	20,567	52.8%
계	1,865,459	146,629	445,198	63,751	108,193	8,430	698,871	37.5%

- 다음은 목포시 및 전라남도 교통약자 구성을 비교 결과임

< 표 2-8 > 목포시 및 전라남도 교통약자 구성을 비교

구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계
목포시	교통약자(명)	13,822	39,063	7,571	16,067	792	69,793
	구성율(%)	19.8	56.0	10.8	23.0	1.1	100.0
전라남도	교통약자(명)	146,629	445,198	63,751	108,193	8,430	698,871
	구성율(%)	21.0	63.7	9.1	15.5	1.2	100.0

2.2 도시현황조사

2.2.1 도시공간구조

가. 지리적 위치

- 목포시는 전남 남서단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여 동쪽과 남쪽은 영산호에 면해 영암군을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은 많은 도서들로 이루어진 신안군, 북쪽은 무안군과 접함
- 동경 126°27'~126°26', 북위 34°44'~34°49'에 위치하며, 면적 51.62km², 인구 227,178명임
- 무안반도 남단에 위치한 목포시는 동쪽에 입암산, 서쪽에 유달산, 북쪽에 양을산, 대박산, 지적봉 등으로 둘러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으며 그 주위에 13개의 도서가 넓게 펼쳐져 있어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방파제 구실을 하여 천연적인 양항의 조건을 보임
- 시가지 주변의 영산강 하구에는 연벽, 북항, 대반동, 백련동, 갯바위해안 등의 간석지가 있으며 이들 간석지는 육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퇴적과 바닷물의 유입횟수가 줄면서 정착하게 된 염생식물 덕분에 퇴적물의 집적과 간척이 용이해져 농경지, 주택지, 공장부지등으로 이용됨
- 이밖에도 고하도, 놀도, 달리도 등 6개의 유인도와 7개의 무인도를 포함함

< 표 2-9 > 경·위도상 위치

구 분	경도와 위도의 극점			면 적
	지 명	극 점		
동단	옥암동	북위 34°48'26"	동경 126°27'25"	51.58km ²
서단	충무동 외달도	북위 34°49'30"	동경 126°17'29"	
남단	충무동 허사도	북위 34°44'31"	동경 126°21'43"	
북단	대양동	북위 34°50'27"	동경 126°23'59"	

나. 행정구역

- 일반행정 관할권은 목포시 행정구역 전역으로서 51.62km의 면적에 23개의 행정동과 64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됨
- 다음은 목포시 행정구역 현황임

< 표 2-10 > 행정구역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행정구역(개)			
			행정동	법정동	통	반
2015년	51.58	100	23	64	591	2,554
2016년	51.64	100	23	64	591	2,554
2017년	51.64	193	23	64	598	2,587
2018년	51.64	100	23	64	598	2,587
2019년	51.62	100	23	64	607	2,630
2020년	51.62	100	23	64	618	2,669
용당1동	1.45	2.809	1	2	46	198
용당2동	0.91	1.763	1	1	22	90
연 동	0.66	1.279	1	3	23	101
산정동	0.74	1.434	1	3	28	112
연산동	2.88	5.579	1	3	19	89
원산동	0.62	1.201	1	2	34	170
대성동	0.34	0.659	1	4	16	82
목원동	1.48	2.867	1	14	35	151
동명동	0.79	1.530	1	4	23	90
삼학동	0.82	1.589	1	1	20	84
만호동	0.84	1.627	1	16	14	62
유달동	12.68	24.564	1	15	28	108
죽교동	0.77	1.492	1	3	16	67
북항동	1.67	3.235	1	2	30	128
용해동	2.12	4.107	1	1	39	171
이로동	1.95	3.778	1	1	25	92
상 동	3.15	6.102	1	2	50	211
하당동	1.20	2.325	1	2	23	97
신흥동	1.80	3.487	1	1	36	165
삼향동	7.70	14.917	1	2	15	64
옥암동	2.58	4.998	1	1	22	84
부흥동	0.68	1.317	1	1	23	125
부주동	3.79	7.342	1	1	31	128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1년

다.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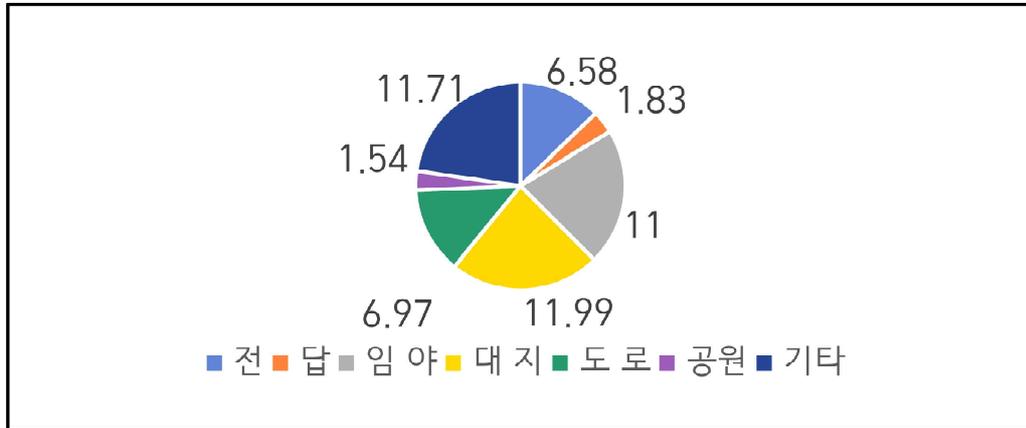
▣ 지목별

- 행정구역 면적은 51.62km²로서 총면적 중 구성비는 대지가 11.99km²(23.22%)를 차지하며, 임야가 21.30%인 11.00km², 전이 6.58km²로 14.17%를 차지함

< 표 2-11 > 지목별 토지이용

구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공원	기타
면적(km)	51.62	6.58	1.83	11.00	11.99	6.97	1.54	11.71
구성비(%)	100.0	12.74	3.54	21.30	23.22	13.50	2.98	22.68

자료) 목포시 통계연보, 2021년



< 그림 2-1 > 토지이용

▣ 용도별

- 목포시 용도지역 합계는 112,490km²로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이 29,748km²를 차지함

< 표 2-12 > 용도별 토지이용(도시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명)	용도지역 합계(km)	도시지역 (km)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2015	238,382	112,490	112,490	14,711	2,001	8,388	29,761
2016	237,739	112,490	112,490	14,711	2,011	8,388	29,761
2017	234,379	112,490	112,490	14,731	1,993	8,388	29,748
2018	232,327	112,490	112,490	14,731	1,993	8,388	29,748
2019	232,327	112,490	112,490	14,731	1,993	8,388	29,748

자료) 목포시 통계연보, 2021년

2.2.2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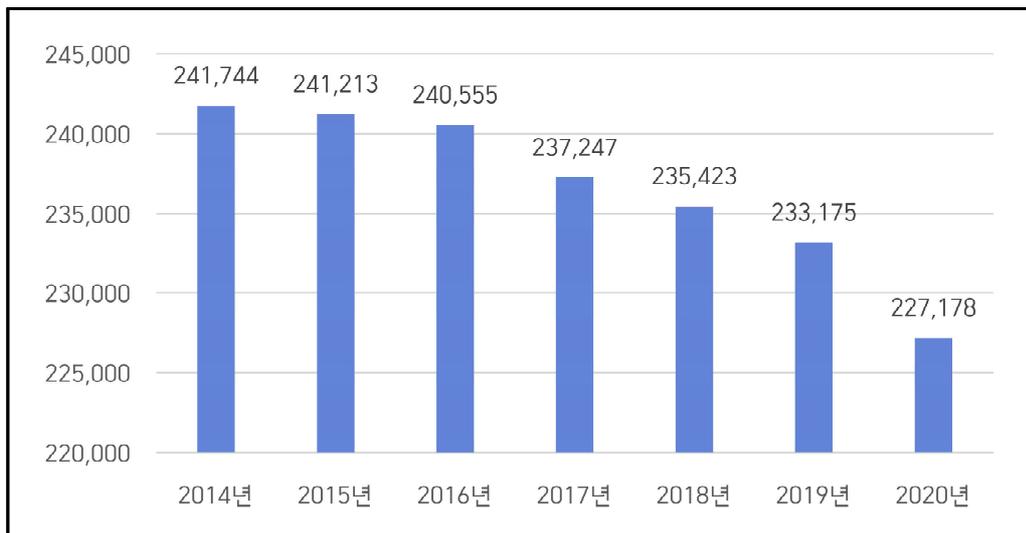
가. 인구

- 최근 6년간(2014~2020)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의 241,744에서 2020년 227,178명으로 꾸준히 인구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
- 총 세대수 2014년의 99,955세대에서 2020년 103,316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40명에서 2.1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표 2-13 > 인구 추이 현황

구 분	인 구 (명)	세 대 수 (세대)	세대당인구 (명)	인구증가율 (%)	65세이상 고령자(명)	인구밀도 (명/km)
2014년	241,744	99,955	2.40	-0.59	30,179	4,772.8
2015년	241,213	100,172	2.38	-0.22	31,203	4,676.6
2016년	240,555	101,180	2.35	-0.27	32,445	4,658.3
2017년	237,247	100,845	2.32	-1.39	33,834	4,594.0
2018년	235,423	101,609	2.29	-0.77	34,821	4,559.3
2019년	233,175	102,481	2.24	-0.95	36,087	4,517.1
2020년	227,178	103,316	2.17	-2.63	37,827	4,402.0
증가율(%)	-0.35	0.68	-1.21	-421.02	4.67	-0.85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1년



< 그림 2-2 > 인구 변화 추이

- 행정구역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동지역은 상동이 9,281세대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인구밀도의 경우에는 부주동이 23,644명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만호동은 3,026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임

< 표 2-14 >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구 분	세대수 (세대)	인구수			65세이상 고령자 (명)	
		인구	남	여		
합 계	103,316	227,178	113,482	113,696	37,827	
면 지 역	용당1동	5,830	10,908	5,475	5,433	3,106
	용당2동	2,931	5,327	2,683	2,644	1,558
	연동	2,762	4,804	2,441	2,363	1,554
	산정동	3,757	8,755	4,270	4,485	1,713
	연산동	3,860	9,893	4,887	5,006	933
	원산동	6,041	13,386	6,600	6,786	1,928
	대성동	2,519	5,244	2,572	2,672	968
	목원동	4,586	8,064	4,144	3,920	2,595
	동명동	3,079	5,769	3,097	2,672	1,848
	삼학동	2,772	6,311	3,165	3,146	1,357
	만호동	1,912	3,026	1,618	1,408	1,044
	유달동	2,831	4,569	2,479	2,090	1,519
	죽교동	1,887	3,322	1,739	1,583	990
	북향동	4,346	9,641	4,865	4,776	1,645
	용해동	7,263	17,592	8,648	8,944	2,336
	이로동	4,283	11,015	5,449	5,566	1,726
	상동	9,281	21,111	10,316	10,795	3,322
	하당동	6,330	12,256	6,323	5,933	1,325
	신흥동	7,183	17,016	8,535	8,481	1,858
	삼향동	2,284	4,933	2,470	2,463	846
옥암동	4,494	11,590	5,573	6,017	1,149	
부흥동	3,984	9,002	4,387	4,615	1,049	
부주동	9,101	23,644	11,746	11,898	1,458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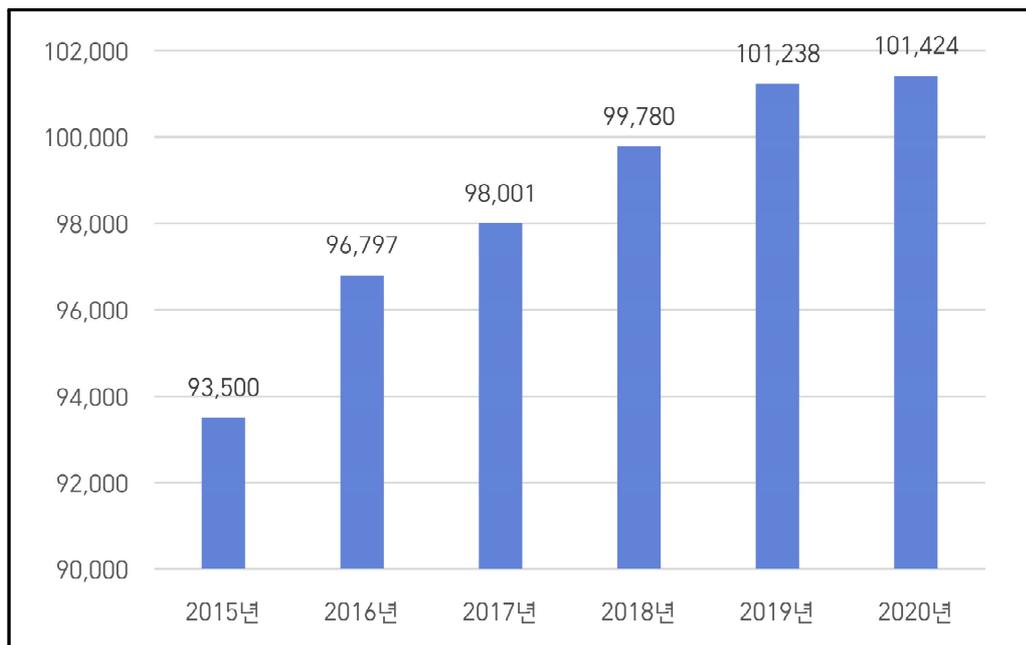
나. 자동차

- 자동차등록대수는 2015년에 93,500대에서 2020년 101,424명으로 증가율 1.64%를 보이고 있음
- 승용차의 경우 73,154대에서 2020년 81,003대로 증가하여 2.0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특수차의 경우 9.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표 2-15 > 목포시 자동차 보유대수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5년	93,500	73,154	4,650	15,329	367
2016년	96,797	76,105	4,454	15,771	467
2017년	98,001	77,307	4,269	15,925	500
2018년	99,780	79,066	4,151	16,050	513
2019년	101,238	80,567	3,996	16,142	533
2020년	101,424	81,003	3,774	16,067	580
증가율 (%)	1.64	2.06	-4.09	0.94	9.59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0년



< 그림 2-3 > 자동차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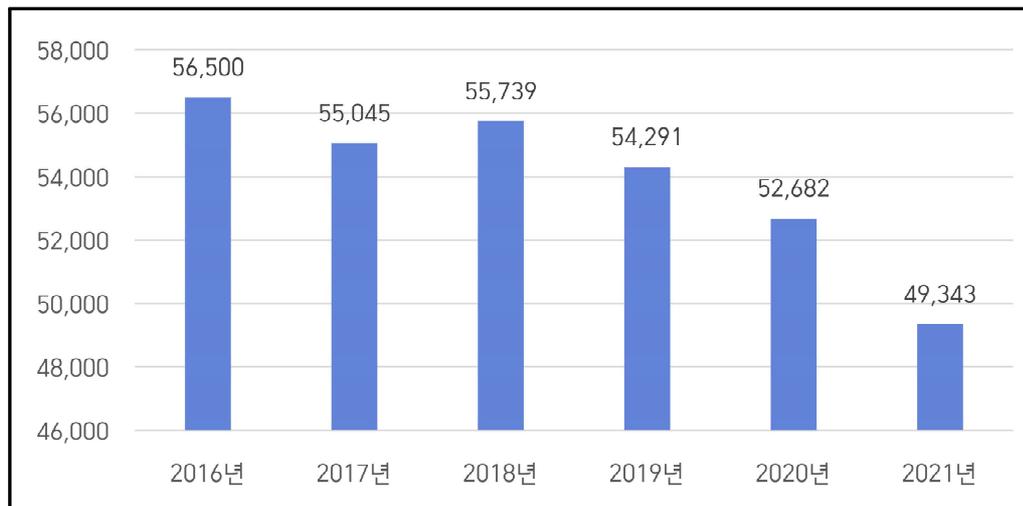
다. 학생수

- 목포시의 학생수는 연평균 약 -2.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직원 1인당 학생수는 2016년에 17.2명에서 2021년 14.6명으로 -3.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표 2-16 > 학생수 추이

구분	인 구 (명)	학 생 수(명)			교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인구
		계	남	여			
2016년	240,555	56,500	31,366	25,134	4,019	17.2	0.23
2017년	237,247	55,045	30,341	24,704	3,996	17.0	0.23
2018년	235,423	55,739	30,839	24,900	4,026	17.0	0.23
2019년	233,175	54,291	30,503	23,788	4,130	16.5	0.23
2020년	227,178	52,682	29,475	23,207	4,146	16.0	0.23
2021년	216,640	49,343	27,719	21,624	4,292	14.6	-
증가율(%)	-1.42	-2.67	-2.44	-2.96	1.32	-3.22	-0.32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1년



< 그림 2-4 > 학생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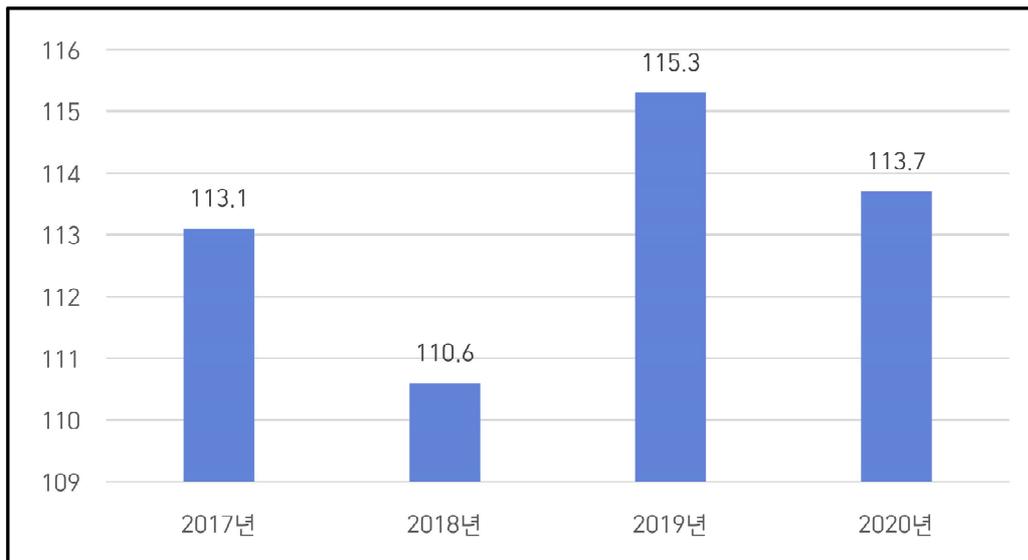
라.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는 194.2천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58.6%이며, 실업율은 3.5%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0.18%이며 실업율 증가율 5.27%로 나타났음

< 표 2-17 >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인구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 실업율
2017년	237.2	197.2	113.1	109.8	57.4	3.0
2018년	235.4	196.5	110.6	108.3	56.3	2.2
2019년	233.2	196.1	115.3	112.6	58.8	2.3
2020년	227.2	194.2	113.7	109.8	58.6	3.5
증가율(%)	-1.51	-0.51	0.18	0	0.69	5.27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0년



< 그림 2-5 > 경제활동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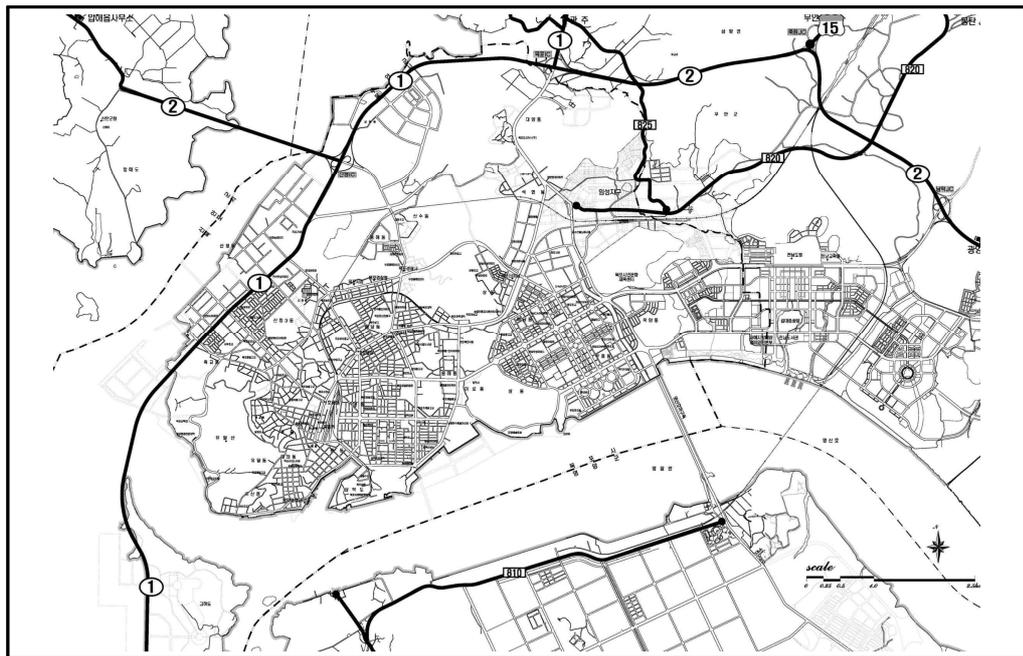
2.2.3 교통시설현황

가. 광역교통체계 현황

- 목포시 광역가로망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1, 2호선 그리고 국지도 49, 60호선 및 지방도 810호선 외 4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2-18 > 광역교통망 현황

구 분	구 간	연장(km)	차로수	비 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 무안	23.5	4	자동차전용도로
목포-광양고속도로	목포 - 광양	106.8	4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1호선	목포시-학교면	32.43	4	시내구간 8차로
국도 2호선	목포시-미암면	19.72	4~6	
	미암면-강진읍	23.66	4	
국지도 49호선	일로읍-몽탄면	5.8	2	
국지도 60호선	현경면-무안읍	6.53	4	
지방도 801호선	독천리-광산리	2.8	2	
지방도 810호선	용당리-용양리	10.75	2	
지방도 811호선	삼향면-일로면	8.85	2	
지방도 815호선	일로면-청계면	7.2	2	
지방도 819호선	학산면-영암면	13.3	2	



< 그림 2-6 > 광역가로망 현황

나. 주요 간선가로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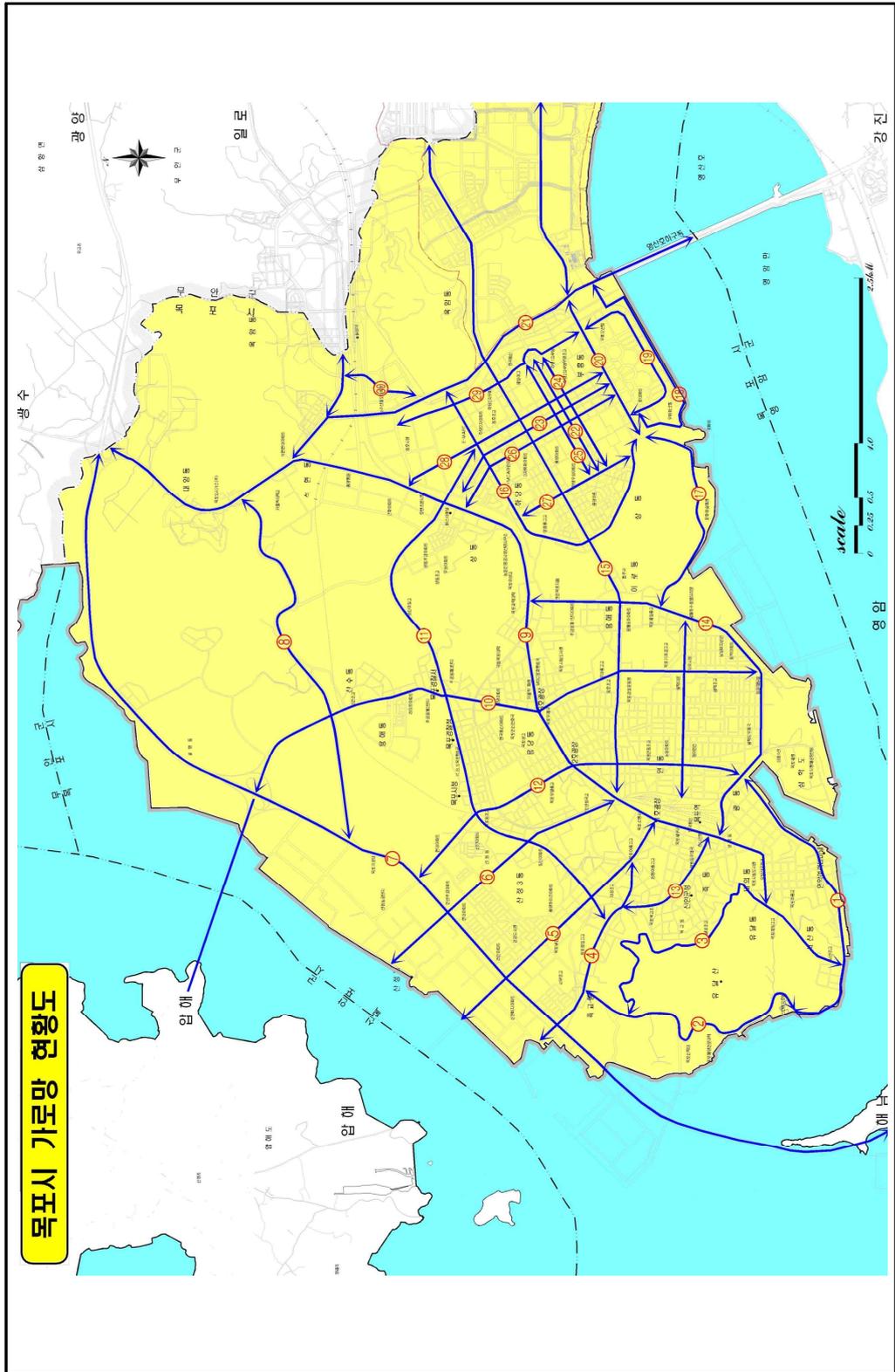
- 목포권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국도는 목포시 북동측에 위치하는 서해안 고속국도가 있으며, 목포시 서측에 목포~광양 고속국도(순천~영암 고속국도)가 있음
- 목포도심과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는 목포도심에서 무안군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 무안군과 영암군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이 있음
- 목포시는 호남선 철도의 종착역 목포역과, 임성리역 2개소가 있음
- 도시내 간선도로는 백년대로, 영산로, 고하대로가 주간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양율로, 대양로, 삼학로, 청호로, 용당로 등이 보조간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북축보다 동서축의 기능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다음은 목포시 주요 간선가로망 현황임

< 표 2-19 > 목포시 주요 가로망 현황

번호	노선명	노 선 구 분			차로수 (왕복)	노폭 (m)	연장 (km)
		시 점	경 유 지	종 점			
1	해안로	동명동4거리	연안여객터미널	신안비치호텔	4	27	2.88
2	해양대학로	신안비치호텔	목포해양대학교	죽교동사거리	4	27	2.68
3	유달로	구조선내화	아리랑고개, 노적봉	덕산마을3거리	2	9	3.77
4	북향로	목여고 앞	홍일로	북향	2~4	12~24	2.23
5	청호로	호남교차로	청호대교, 목여고	해양경찰서	4~8	24~35	5.00
6	연산로	산정농공단지입구	서해초등학교	연동 철도건널목	4~6	20~35	2.20
7	고하대로	서해안IC	사회복지관, 북향삼거리, 고하도	허사도시경계	6~8	25~34	7.52
8	대양로	삽진산단입구	실내체육관	삼향동사무소	2~8	10~34	3.60
9	영산로	국도1호시점	목포역 1·2·3광장	서해안IC	2~8	15~35	8.51
10	용당로	동월예식장	경찰서, 대연초등	압해대교IC	4~6	23~30	4.01

<표 계속>

번호	노선명	노 선 구 분			차로수 (왕복)	노폭 (m)	연장 (km)
		시 점	경 유 지	종 점			
11	양을로	죽교3거리	시청, 양을산, 버스타미널	부영아파트옆	4~6	25	5.40
12	산정로	동명동사거리	2호광장, 목교	연산동4거리	4~6	26	3.37
13	수문로	목포역앞	구중앙시장	순천당약국	2	10	1.14
14	삼학로	목포역	삼학도3거리	과학대앞	4~8	20~35	3.95
15	백년대로	연동철도건널목	유달경기장	부주교	8	40	3.93
16	하당로	갯바위터널삼거리	신흥, 하당동사무소	하당교	4	25	3.15
17	문화의거리 (남농로)	제일중앙	향토문화관	갯바위터널	4	27	2.02
18	미향로	금강교려화학뒤	평화광장뒤	미향초교	2~4	19	2.24
19	평화로	금강교려화학옆	평화광장앞	바다주유소	6	22	1.54
20	통일대로	갯바위터널	하당육교	목포해운항만청	8	35	1.40
21	녹색로	석현삼학주유소	청호육교	하구독시경계	6	35	4.36
22	장미로	노동부	이즈상가	초이스장	-	20	1.18
23	번영로	하당육교	농수산물시장	한국SGI문화회관	-	20	1.74
24	부흥로	노동부	로고스교회앞	부영아파트뒤	4	20	1.19
25	신흥로	노동부	우성아파트앞	제일2차아파트뒤	4	20	1.17
26	비파로	윤송웨딩앞	농산물센터	버스타미널사거리	2~6	10~30	1.76
27	교육로	교육청	노동부	영흥고뒤4거리	4	25	1.35
28	옥암로	E마트사거리	구, 석현철도건널목	자동차매매센터	4~6	30	1.21
29	삼향천로	부흥상가4거리	소방서	벤처빌딩옆	4	21	1.93
30	선곡로	근대연립뒤	종합유통센터	남도골프연습장	5	25	0.80



< 그림 2-7 > 목포시 주요간선 가로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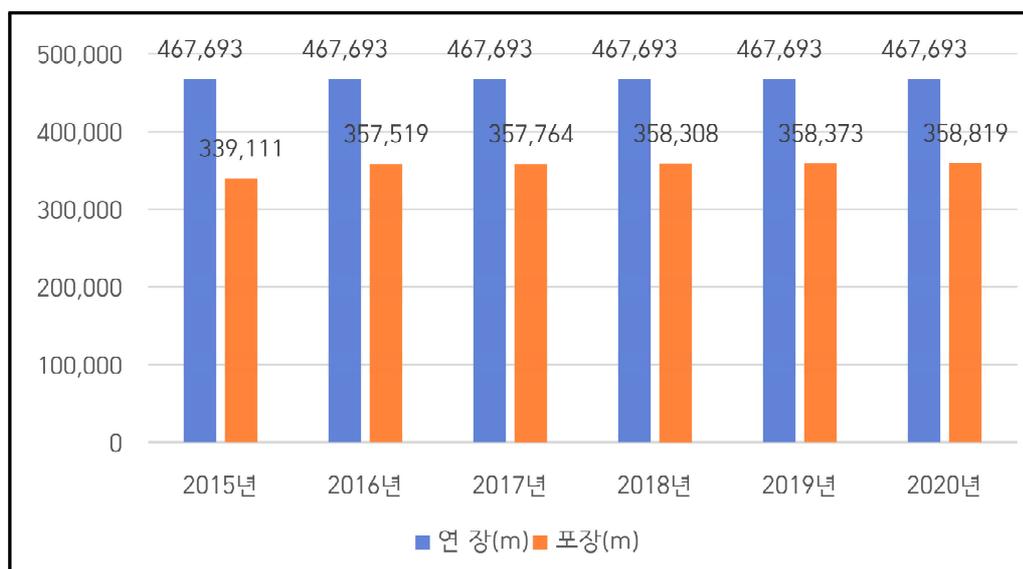
다. 도로연장

- 목포시 도로연장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467,693m에서 2020년 467,693m로 나타났음
- 포장율의 경우 2015년 72.5%에서 2020년 76.6%로 증가하였으며 미개통도로는 111,954 m에서 108,874m로 감소
- 다음은 목포시 도로연장설치현황 추이임

< 표 2-20 > 도로 연장 추이

구 분	연 장(m)	포장(m)	포장율(%)	미포장(m)	미개통(m)
2015년	467,693	339,111	72.5	16,628	111,954
2016년	467,693	357,519	76.4	-	110,174
2017년	467,693	357,764	76.5	-	109,929
2018년	467,693	358,308	76.6	-	109,385
2019년	467,693	358,373	76.6	-	109,320
2020년	467,693	358,819	76.6	-	108,874
증가율(%)	0	1.14	1.11	-	-0.56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0



< 그림 2-8 > 도로 연장 변화 추이

- 도로등급별 연장은 고속도로 및 국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으며 포장율은 100%임
- 시군도는 연장은 동일하나 포장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6년 76.1%이며 미개통 도로는 108.874m임

< 표 2-21 > 도로등급별 연장 현황

구 분	연장(m)	포장(m)	포장율(%)	미포장(m)	미개통(m)	
고속도로	2015년	260	260	100.0	-	-
	2016년	260	260	100.0	-	-
	2017년	260	260	-	-	-
	2018년	260	260	100.0	-	-
	2019년	260	260	100.0	-	-
	2020년	260	260	100.0	-	-
일반국도	2015년	12,800	12,800	100.0	-	-
	2016년	12,800	12,800	100.0	-	-
	2017년	12,800	12,800	100.0	-	-
	2018년	12,800	12,800	100.0	-	-
	2019년	12,800	12,800	100.0	-	-
	2020년	12,800	12,800	100.0	-	-
시군도	2015년	454,633	326,051	71.7	16,628	111,954
	2016년	454,633	344,459	75.8	-	110,174
	2017년	454,633	344,704	75.8	-	109,929
	2018년	454,633	345,248	75.9	-	109,385
	2019년	454,633	345,313	76.0	-	109,320
	2020년	454,633	345,759	76.1	-	108,874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0

라. 주차장

- 주차장은 2019년 5,616개소에 96,312면이며, 노상주차장은 5개소 225면, 노외주차장 47개소 2,901면, 부설주차장은 5,564개소 93,186면으로 설치되어 있음

< 표 2-22 > 주차장 설치현황

구 분	합계		노상				노외				부설	
			유료		무료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14년	4,750	66,689	1	45	3	129	39	2,558	44	1,175	4,663	62,782
2015년	4,893	68,926	1	45	3	129	39	2,558	44	1,175	4,806	65,019
2016년	5,139	71,832	1	45	3	129	39	2,558	44	1,175	5,052	67,925
2017년	5,475	94,602	1	45	3	129	38	2,390	44	1,175	5,389	90,863
2018년	5,632	96,384	1	45	4	165	41	2,599	6	312	5,580	93,263
2019년	5,616	96,312	1	45	4	180	41	2,589	6	312	5,564	93,186
증가율(%)	3.41	7.63	0	0	5.92	6.89	1.01	0.24	-32.87	-23.3	3.6	8.22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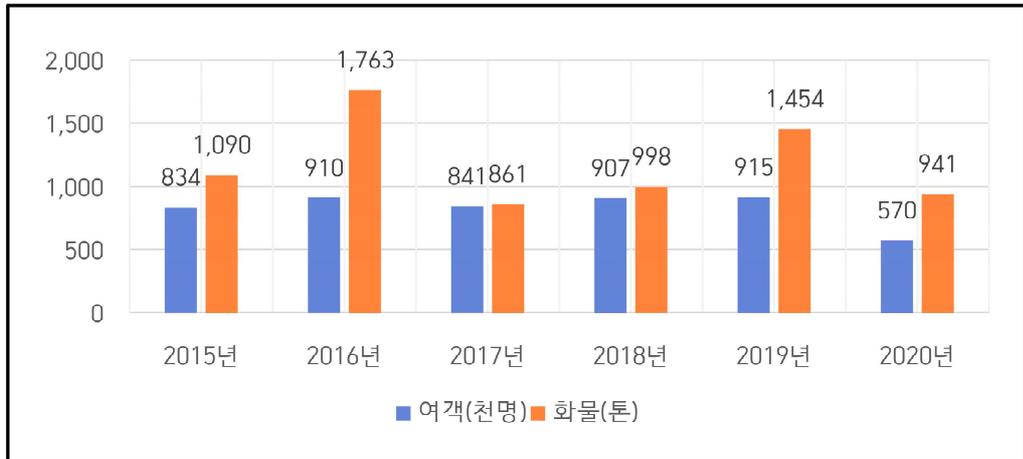
마. 철도 수송

- 철도수송 현황은 2015년 여객 수송 실적은 승차인원이 833,905명으로 -7.32%의 증가율을 보이며 여객수입의 증가율은 -4.52%를 보이고 있음

< 표 2-23 > 철도 수송 실적 변화 추이

구 분	여 객			화 물		
	승차인원 (명)	강차인원 (명)	여객수입 (천원)	발송톤수 (톤)	도착톤 수(톤)	화물수입 (천원)
2015년	833,905	833,524	22,775,172	1,090	3,764	43,515
2016년	909,727	895,473	27,726,167	1,763	2,247	17,264
2017년	841,106	832,744	25,760,404	861	1,784	17,525
2018년	906,505	904,745	27,008,288	998	1,409	13,579
2019년	915,457	923,406	28,702,365	1,454	1,368	10,601
2020년	570,267	579,045	18,075,340	941	1,708	12,293
증가율(%)	-7.32	-7.03	-4.52	-2.9	-14.62	-22.34

자료 : 목포시 통계연보, 2020



< 그림 2-9 > 철도여객 수송추이

바. 버스터미널 운행현황

- 버스터미널 방면별 노선은 30여개 노선으로 주요노선은 다음과 같음

< 표 2-24 > 버스터미널 운행 현황

행선지	배차간격 (분)	운행거리 (km)	소요시간 (시간)	행선지	배차간격 (분)	운행거리 (km)	소요시간 (시간)
서울(호남선)	40	342.7	4:00	성 남	4회/일	368.6	4:30
인 천	80	352.9	4:10	여 수	40	-	2:20
수 원	7회/일	320.0	3:40	완 도	3회/일	103	2:00
인천공항	3회/일	394.3	4:30	전 주	30	-	2:30
동서울	5회/일	394.8	4:30	지도(완행)	60	-	1:10
광주(직통)	15 ~ 20	78	0:55	지도(직행)	60	-	1:10
광주(직행)	60	81.6	1:50	진 도	50	106	1:00
마 산	1회/일	281.6	5:00	땅 끝	4회/일	98.1	2:00
부 산	7회/일	-	3:55	해 남	40	60.3	1:00
부 천	9회/일	373.2	4:30	-	-	-	-

2.2.4 교통소통현황

가. 광역도로 교통량 추이

- 목포시 주변 광역도로 노선별, 구간별 교통량추이를 살펴보면 지방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노선들은 증가추세로 나타남

< 표 2-25 > 광역도로 교통량추이 (단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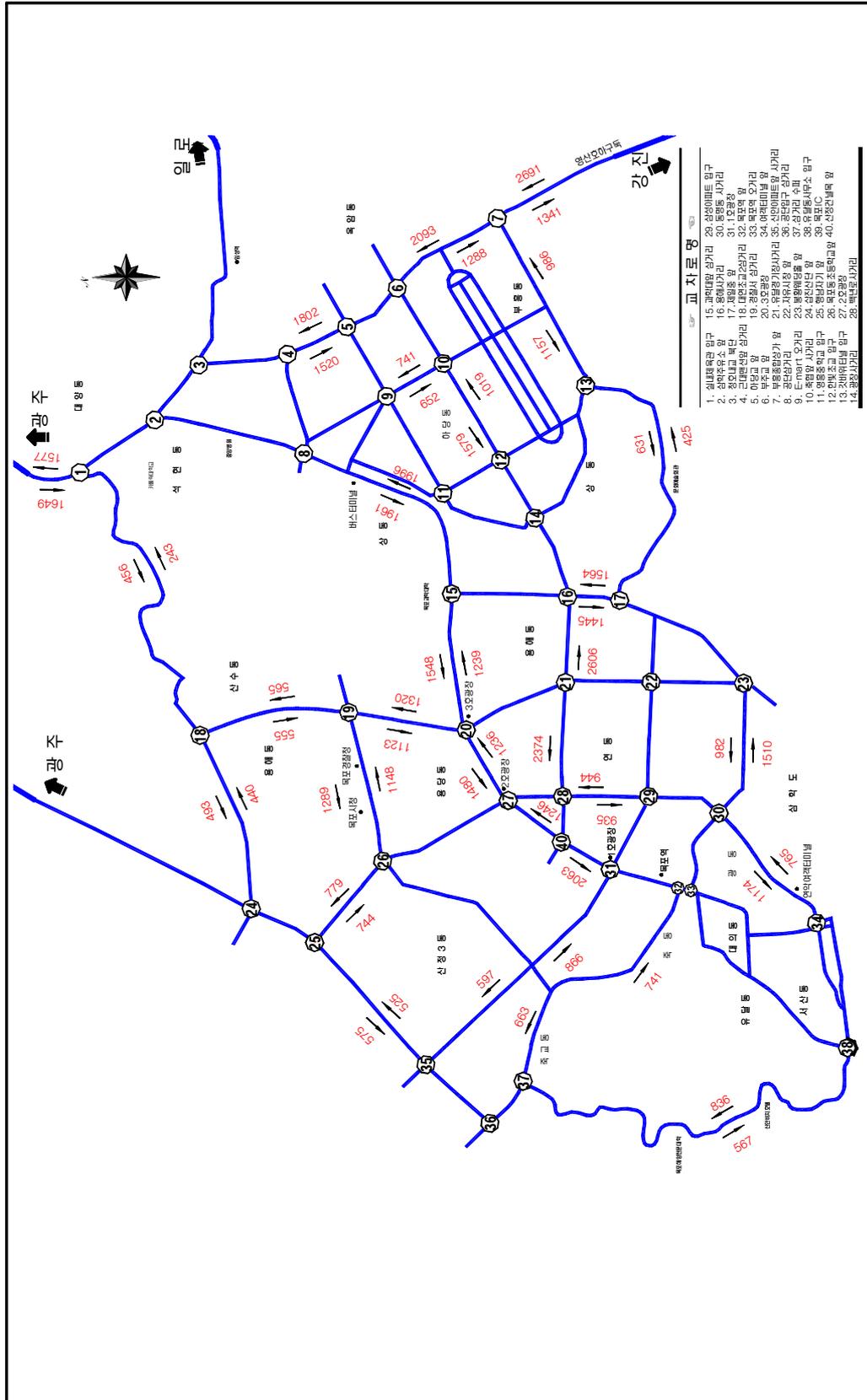
구분	지점번호	구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가율
남해선	01001-1	서영암IC ~ 서호학산IC	12,020	12,135	13,101	12,838	13,485	2.92
서해안선	01501	죽림IC ~ 일로IC	26,196	28,404	27,067	25,895	26,852	0.62
국도1호선	0101-0	목포~무안	22,280	21,876	22,338	20,331	19,926	-2.75
	0101-1	진도~무안	14,772	15,458	16,192	16,313	16,617	2.99
국도2호선	0201-3	삼호~학산	13,710	16,304	17,591	17,827	19,408	9.08
	0201-5	목포~일로	7,703	8,011	8,011	9,310	9,310	4.85
	0201-7	목포~성전	13,979	13,979	14,378	14,378	11,923	-3.9
	0201-8	목포~학산	22,084	24,714	25,905	25,550	27,951	6.07
	0201-9	목포~청계	10,217	10,558	14,092	14,835	14,964	10.01
	0201-10	압해~목포	7,462	8,592	9,412	12,048	12,661	14.13
지방도801	0801-04	삼호~성전	3,110	3,047	2,896	2,623	2,644	-3.98
지방도806	0806-05	삼포~목포	8,408	8,237	8,158	7,383	7,478	-2.89
지방도815	0815-03	삼향~동강	5,666	5,051	4,833	2,095	2,392	-19.39
지방도820	0820-02	삼향~청호	9,979	8,450	8,300	4,155	3,781	-21.54
지방도825	0825-04	청계~목포	9,251	9,377	9,575	10,043	9,288	0.1

나. 주요간선도로 교통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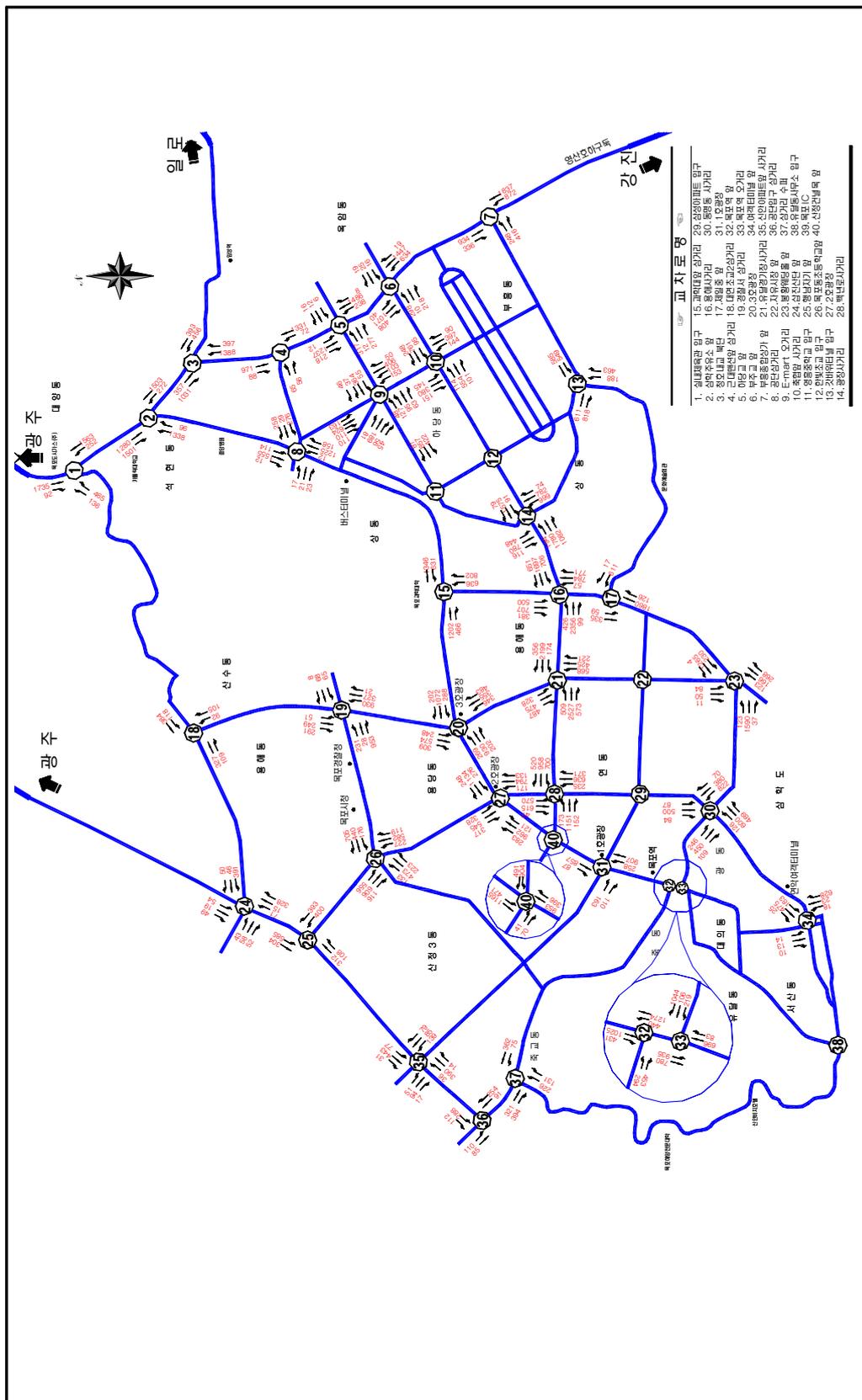
- 다음은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현황으로 영산로와 하당연결로 교통량이 많음

< 표 2-26 >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현황

구 간	방 향	직 진 차로수	첨두시교통량 (대/시)	비고	
해안로	38.유달동사무소 입구 ~30.동명동 사거리	→ 30.동명동 사거리.	2	765	
		→ 38.유달동사무소 입구	2	1,174	
청호로	35.신안아파트앞 사거리 31.1호광장	→ 31.1호광장	2~4	866	
		→ 35.신안아파트앞 사거리	2~4	597	
고하대로	25.행남자기 앞 ~36.공단입구 삼거리	→ 36.공단입구 삼거리	3~4	575	
		→ 25.행남자기 앞	3~4	525	
대양로	24.삼진산단 앞 ~18.대연초교2 삼거리	→ 18.대연초교2 삼거리	4	440	
		→ 24.삼진산단 앞	4	493	
	18.대연초교2 삼거리 ~1.실내체육관 입구	→ 1.실내체육관 입구	1	243	
		→ 18.대연초교2 삼거리	1	456	
영산로	2.삼학주유소 앞 ~15.과학대앞 삼거리	→ 15.과학대앞 삼거리	4	1,961	
		→ 2.삼학주유소 앞	4	1,996	
	15.과학대앞 삼거리 ~20.3호광장	→ 20.3호광장	4	1,548	
		→ 15.과학대앞 삼거리	4	1,239	
	20.3호광장 ~27.2호광장	→ 27.2호광장	2	1,480	
		→ 20.3호광장	2	1,236	
용당로	18.대연초교2 삼거리 ~19.경찰서 삼거리	→ 19.경찰서 삼거리	2~3	555	
		→ 18.대연초교2 삼거리	2~3	565	
양을로	26.목포동초등학교 앞 ~19.경찰서 삼거리	→ 19.경찰서 삼거리	2~3	1,148	
		→ 26.목포동초등학교 앞	2~3	1,289	
산정로	25.행남자기 앞 ~26.목포동초등학교 앞	→ 26.목포동초등학교 앞	2~3	744	
		→ 25.행남자기 앞	2~3	779	
삼학로	30.동명동 사거리 ~23.봉황웨딩홀 앞	→ 23.봉황웨딩홀 앞	4	1,510	
		→ 30.동명동 사거리	4	982	
백년로	28.백년로사거리 ~16.용해사거리	→ 16.용해사거리	4	2,374	
		→ 28.백년로사거리	4	2,606	
	16.용해사거리 ~6.부주교 앞	→ 6.부주교 앞	4	1,019	
문화의거리	17.제일중 앞 ~13.갯바위터널 입구	→ 13.갯바위터널 입구	2	425	
		→ 17.제일중 앞	2	631	
후광로	13.갯바위터널 입구 ~7.부흥종합상가 앞	→ 7.부흥종합상가 앞	4	986	
		→ 13.갯바위터널 입구	4	1,157	
영산강하구로	2.삼학주유소 앞 ~6.부주교 앞	→ 6.부주교 앞	3	1,520	국도2호선
		→ 2.삼학주유소 앞	3	1,802	
	6.부주교 앞 ~7.부흥종합상가 앞	→ 7.부흥종합상가 앞	3	1,288	
		→ 6.부주교 앞	3	2,098	
	7.부흥종합상가 앞 ~검문소	→ 검문소	3	1,341	
	→ 7.부흥종합상가 앞	3	2,691		
석현로, 양을로	8.공단삼거리 ~롯데마트	→ 롯데마트	2~3	652	
		→ 8.공단삼거리	2~3	741	
삼학로	15.과학대앞 삼거리 ~23.봉황웨딩홀 앞	→ 23.봉황웨딩홀 앞	4	1,445	
		→ 15.과학대앞 삼거리	4	1,564	



< 그림 2-10 >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현황



< 그림 2-11 > 주요 교차로 교통량현황

2.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2.3.1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항목 및 기준

-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는 조사항목과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통수단 조사항목

< 표 2-27 > 여객시설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조사대상	조사항목
자동안내시설	방송음성 / 방송언어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위치 / 문자형태 / 문자언어
행선지 표시	설치위치 / 소재
교통약자용 좌석	비율 / 위치 / 안내표시 / 정차스위치
수직손잡이	수직손잡이 / 수직손잡이의 크기 / 승강구 수직손잡이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1) 자동안내시설

- 청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버스 승차객이 어느 위치에서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28 > 승강장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방송음성	도착정류장 이름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음색으로 제공
방송언어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제공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자동안내시설의 평가와 관련하여 버스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음성정보 제공여부를 평가하며 해당 버스의 음성안내시설의 설비 정도에 따라 조사결과 기입함

(2) 전자문자안내판

- 버스 승차객이 어느 위치에서든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29 > 전자문자안내판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위치	정류장의 이름·행선지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전면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
문자형태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며,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
문자언어	전자 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버스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각형 안내시설의 설치여부를 평가하며 버스 내부의 안내시설 설치 위치 및 설비 정도에 따라 조사함



< 그림 2-12 > 전자문자안내판의 표시와 설치예시

(3) 행선지 표시

- 야간 및 햇빛에서도 식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30 > 행선지 표시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위치	버스 외부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소재	강한 햇빛과 야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행선지와 객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 행선지 표시의 설치여부 평가
- 행선지 표시 설치위치 및 소재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입하였으며 증빙사진 항목이 표기된 문항은 증빙 사진을 첨부함



< 그림 2-13 > 행선지 표시의 설치예시

(4) 교통약자용 좌석

- 전용공간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31 > 교통약자용 좌석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위치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
비율	전체 좌석의 1/3 이상 설치
안내표시	교통약자용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 부착
정차스위치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교통약자 좌석의 위치, 비율, 안내표시, 정차스위치 위치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저상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및 고정설비의 설치 유무를 조사함

(5) 수직손잡이

- 어린이를 배려한 손잡이 크기와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수직손잡이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32 > 수직손잡이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비율	2열 또는 3열마다 수직손잡이 설치
규격	지름의 크기 30mm 내외로 설치
승강구수직손잡이	승강구에 승강용 수직손잡이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수직손잡이의 평가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 설치여부를 평가함

**< 그림 2-14 > 수직손잡이 설치예시**

2) 여객시설(버스역, 철도역) 조사항목

< 표 2-33 > 여객시설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조사대상	조사항목
보행접근로	유효폭 / 기울기 / 재질및마감 / 높이차이제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 설치비율 / 보행안정통로 / 주차공간 / 바닥마감 / 바닥맞입식안내표시 / 바닥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 전면활동공간, 유요거리 / 출입구연활동공간 / 출입구단차 / 문의형태 / 미닫이문 / 여닫이문 / 자동문 / 손잡이 / 공중사무실점차표지만 / 점형블록 / 호출벨
화장실일반사항	화장실위치 / 대변기남녀구분설치 / 바닥면높이차이 / 바닥마감 / 점형블록 / 점차표지판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 대변기좌우측유효폭 / 전면활동공간 / 출입문형태 / 출입문유효폭 / 대변기형태 / 수평손잡이 / 세정장치, 유지결이등 / 사용여부설비
소변기	수평손잡이 / 수직손잡이
세면대	설치높이 / 수도꼭지형태 / 수평손잡이 / 점차표시 / 거울
점자블록	설치장소 / 규격및색상 / 설치방법
매표소	활동공간 / 점자블록 / 높이 / 하부공간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활동공간 / 점자블록 / 조작버튼설치위치 / 점차표시 / 음료대분출구높이 / 음료대조작기
버스, 철도역 승강장	바닥기울기 / 바닥마감 / 점자블록 / 차량간격 / 추락방지시설 / 난간 / 차량접근경고시설 / 휠체어승강장안내 / 승강장 / 바닥기울기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1) 보행접근로

- 보행 접근로의 유효폭 기울기 마감상태는 교통약자의 보행에 적절한가를 기준으로 두고 조사하였으며 세부 조사기준은 아래와 같음

< 표 2-34 > 보행접근로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유효폭	휠체어 사용자가通行할 수 있도록 보행로의 유효폭은 2m이상 확보
기울기	보도등의진행방향기울기는18분의1이하 (다만, 지형상관련한경우12분의1까지완화)
재질및마감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높이차이제거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유효폭은 휠체어사용자 등의 보행이동을 고려하여 보도 각 구간을 측정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장애물 없이 보행 가능한 순수 통과 유효폭을 측정하도록 함
-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보도의 종단 기울기와 횡단 기울기를 측정하며 보도의 각 구간을 측정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평가함
- 재질 및 마감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바닥마감 재질 및 마감수준을 평가하며 보도 마감재질의 파손, 바닥배수구 또는 맨홀 덮개와의 단차 등이 존재할 경우 평탄하지 않음으로 평가함

▶ 재질/마감 우수 예시: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음(틈새 1cm이하)



▶ 재질/마감 미설치 예시: 보도 포장 불량, 틈새간격 불량(1cm초과)



▶ 높이차이 제거 보통 예시: 무단차 또는 이용가능한 경사로 설치



< 그림 2-15 > 재질/마감, 높이차이 제거 평가 예시

- 높이차이 제거 평가에 관해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보도 단차, 높이차이가 존재 시 이용 가능한 경사로나 승강기 설치 여부를 평가할 것이며 경사로 이용 가능여부는 유효폭, 기울기, 손잡이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 판단 평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장의 설치 비율 설치장소 및 공간의 크기 보행안전구역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세부 조사기준은 아래와 같음

< 표 2-3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장소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설치비율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비율(주차대수규모10대이상3%)
보행안전통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또는 승강설비)까지 보행안전통로 확보(높이차이 없음, 유효폭은 1.2m이상)
주차공간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 (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바닥마감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바닥및 입식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바닥면	주차공간의승하차에지장을주는높이차이가없어야하며기울기는 1/50 이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설치장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여객시설 출입구 또는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승강기 등과의 이격정도를 평가하며 차량교행구간 없이 40m이내 이격된 경우 가까운 곳에 설치된 정도에 따라 평가
- 설치비율은 주차장내 전체 설치된 주차대수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대수 비율을 평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 100%는 해당 여객시설 관할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에 명기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로 지자체별 관련 조례 확인 후 평가(통상 전체 계획대수 대비 3% 또는 4%)
- 보행안전통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 출입구까지 연결된 보행공간의 유효폭과 단차를 평가하며 주차장 내 보행통로와 보도구간의 보행공간을 함께 평가
-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의 크기를 평가하며 주차구역이 하나만 설치됐다면 주차라인의 끝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연속으로 설치됐다면 주차라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평가

- 바닥마감은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된 주차장만 평가하며 바닥마감 재질과 평탄정도를 평가함
- 바닥 및 입식안내표지는 설치된 안내표지 수준을 평가함 장애인마크는 KS, ISO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평가함
- 바닥면은 장애인전용주차공간 바닥 단차와 기울기 수준을 평가함

- ▶ 주차구역이 하나만 설치된 경우 주차라인의 끝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
- ▶ 주차구역이 연속으로 설치된 경우 주차라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
- ▶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된 주차공간의 미끄럼정도와 단차 여부, 기울기 수준을 접근로 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평가. 미설치된 경우 평가제외
- ▶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설치된 입식안내와 바닥안내 시설의 수준을 평가



※ 휠체어마크는 KS S ISO 7001규격 준수여부 확인



< 그림 2-16 >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예시

(3) 출입문

- 시설 출입문의 주출입문의 유효폭 및 전 후의 활동공간, 문형태, 손잡이등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세부 조사기준은 아래와 같음

< 표 2-3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통과유효폭	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9m 이상 확보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연속된 출입구는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제외)
출입구옆 활동공간	출입문 측면 0.6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구단차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됨
문의형태	회전문인 경우 반드시 다른 형태의 문 추가설치
미닫이문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문지방 또는 홈이 없이 설치
여닫이문	도어 체크가 설치되고 3초 이상 개폐,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과토록 함
자동문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충분한 개방 시간과 감지범위
손잡이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위치하여 설치 (자동문설치시제외)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출입구 옆벽면 1.5m 높이에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점형블록	출입문 전면 0.3m 점형블록 설치
호출벨	자동문 옆에 시설관리자 호출벨 설치(자동문 설치시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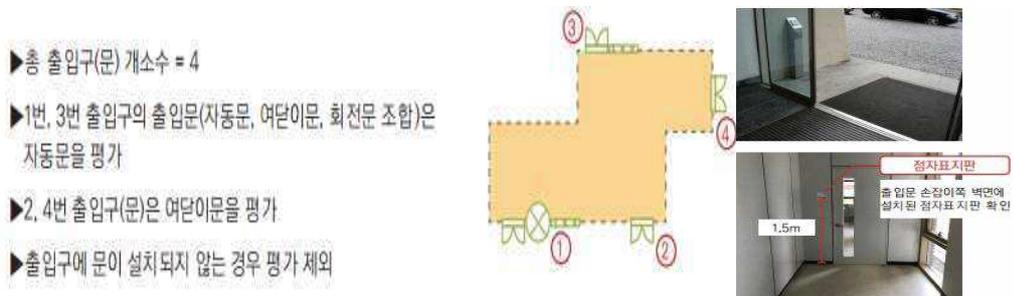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통과유효폭은 휠체어 이용자 등 출입문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효폭과 높이를 평가하며 유효폭과 높이는 출입문 완전 개방 시 문틀두께와 문 프레임의 제외한 통과가능한 유효폭과 바닥에서 상부 프레임까지의 유효높이이며 양개형문인 경우 문의 한쪽만을 측정하여 평가
-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출입문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입문 전·후의 유효 활동공간의 거리를 평가하며, 전후면 활동공간 및 유효거리는 문이 닫힌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방풍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문을 연속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
- 출입구 옆 활동공간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의 개폐시 필요한 공간이며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 출입문 손잡이 쪽 활동공간(날개벽)의 크기를 평가함
- 출입구 단차는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등의 출입문 통과시 걸려 넘어짐 없음을 고려, 출입문 하부 문틀의 단차를 평가함
- 문 형태는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의 형태를 평가하며, 하나의 출입구(문)에 여러 종류 문이 설치된 경우 교통약자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해당문만을 평가하고 문 형태별 평가함이 조사대상 여객시설에 설치된 출입구(문)의 개소수와 동일하게 되도록 기입
- 손잡이는 손이 불편한 사람, 휠체어 사용자 또는 키가 작은 사람 등의 문 조작성을 고려하여 손잡이의 설치 높이와 형태를 평가하며 자동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문)의 손잡이 평가를 제외하고 센서형이 아닌 버튼형 등으로 조작하여 작동되는 자동문인 경우 미닫이문으로 평가



< 그림 2-17 > 출입구 단차, 문형태, 손잡이, 점형블록 평가 예시

- 공중 사무실 점자표지판은 여객시설 내부 실별 용도 인지성을 고려, 사무실 출입구 옆 벽면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를 평가, 공중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은 관리사무소, 고객센터원실 등이며, 순수 사무실 등 관리자 전용공간은 제외함
- 점형블록은 출입문 인지성을 고려, 주출입문 전·후면 점형블록 설치 여부를 평가
- 호출벨은 자동문만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 자동문 미작동시를 대비한 호출벨 설치 여부를 평가하며, 자동문이 아닌 형태의 출입문인 경우 평가를 제외



< 그림 2-18 > 출입구 평가 예시

(4) 화장실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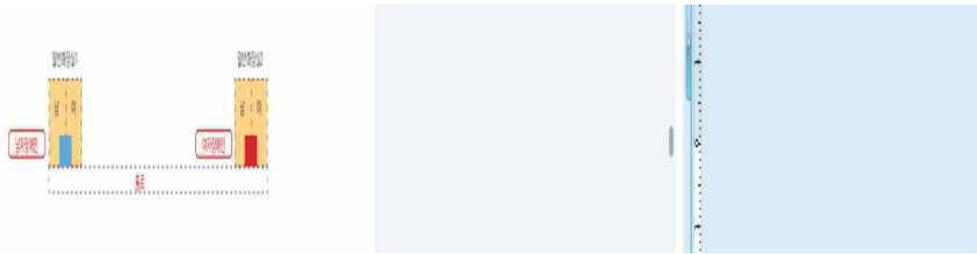
- 해당시설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37 > 화장실 일반사항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화장실위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접근통로의 확보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1개이상 설치
바닥면 높이차이 / 바닥마감	2cm이하의 단차/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점형블록	장애인전용화장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점자표지판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화장실 위치는 대합실 등에서 장애인용 화장실의 위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접근 가능성에 대해선 접근통로의 유효폭, 재질, 단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대변기 남녀구분은 한 개의 화장실구역에서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한 개의 층에서 두개의 화장실 구역에 남자, 여자 각 한개소씩 설치한 경우 공용설치로 평가



< 그림 2-19 > 대변기 남녀구분 설치 예시

- 바닥면 높이차이, 바닥마감은 접근로, 통로의 바닥면 높이차이 및 마감 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평가
- 점형블록, 전자표지판은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점형블록과 점자표지판은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 설치된 것으로 평가함

(5) 대변기

-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크기, 출입문 형태. 기타 설비등의 설치위치가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과 이동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38 > 대변기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대변기칸막이	화장실의 유효바닥면크기는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좌우측유효폭	대변기의 좌,우측에 접근을 위한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활동공간	대변기의 전면에 회전을 위한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문형태	미달이문도 가능, 여달이문은 바깥쪽 개폐되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히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도 가능함
출입문유효폭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대변기형태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 좌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구조)
수평손잡이	대변기의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화장실의 크기가 2X2인 경우 천장에 사다리형태 손잡이 설치 가능)
세정장치 휴지걸이등	대변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 앞은 상태에서 이용가능 위치에 설치
사용여부설비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 시각적 설비 설치 유무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대변기 평가범위 및 개소수 산정에는 남, 여 장애인전용화장실과 일반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대변기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 및 개소수 산정
- 대변기 칸막이는 화장실 내부 벽면을 기준으로 측정, 남녀 각각 평가, 유효폭, 활동 공간은 위생설비, 손잡이, 세면대 등의 공간을 제외, 유효활동공간을 측정

- 출입문 형태, 유효폭은 장애인용 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화장실을 평가
- 대변기 위생도기 형태, 인접하여 설치된 손잡이의 설치위치와 재질 등을 평가함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과 사용여부 설비는 교통약자의 이용성을 고려, 기타 설비의 설치위치와 형태를 평가하며 사용여부설비는 시각 및 문자정보로 쉽게 사용중임을 인지 가능함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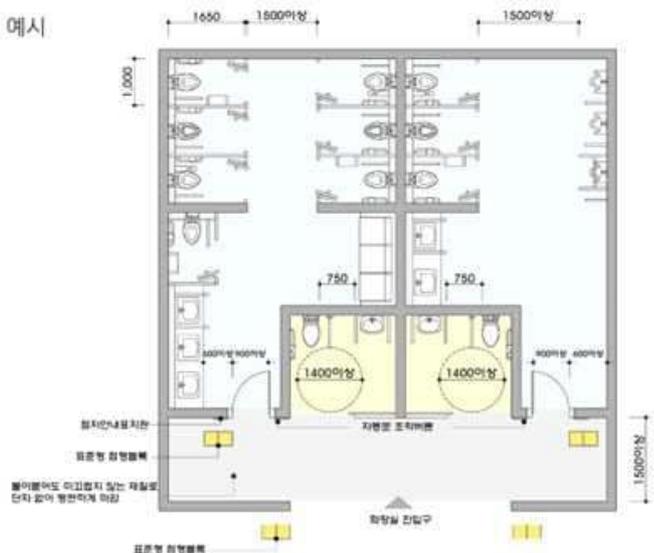
▶ 장애인용화장실 내부 대변기와 세면대 설치 예시



▶ 세정장치 예시



▶ 일반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구성 예시



< 그림 2-20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평가 예시

(6) 소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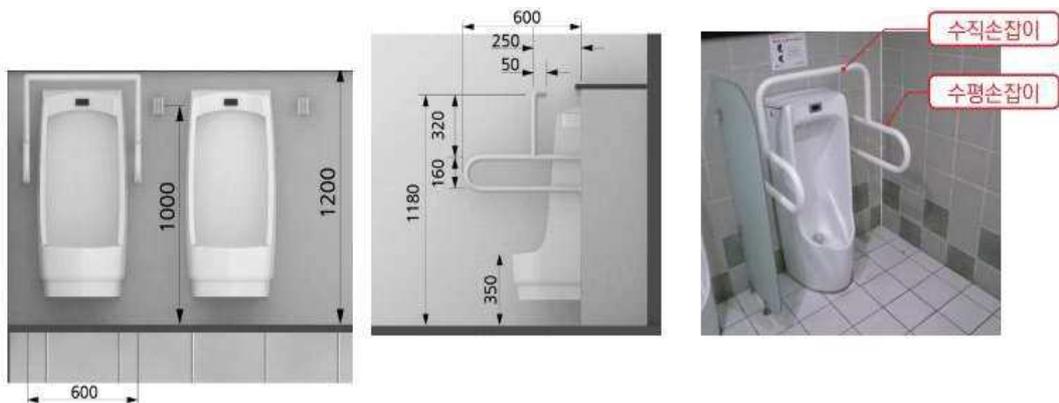
- 구조, 손잡이 설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음

< 표 2-39 > 소변기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수평손잡이	바닥에서 0.8~0.9m, 길이는 벽면에서 0.55m,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
수직손잡이	바닥면에서 1.1~1.2m이며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일반화장실 구역에는 최소 1개소 이상 장애인용 소변기가 설치되어야 함
- 수평, 수직 손잡이는 설치 형태 및 위치를 측정하여 등급별 기준에 따라 평가



< 그림 2-21 > 소변기 평가방법 예시

(7) 세면대

- 설치높이, 수도꼭지 형태, 거울설치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면대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개소수를 산정하며 평가를 진행함
- 지팡이 사용자 등의 신체 지지 등을 고려, 세면대에 설치된 손잡이 또는 신체를 일부 지지할 수 있는 세면대 형태 설치 여부를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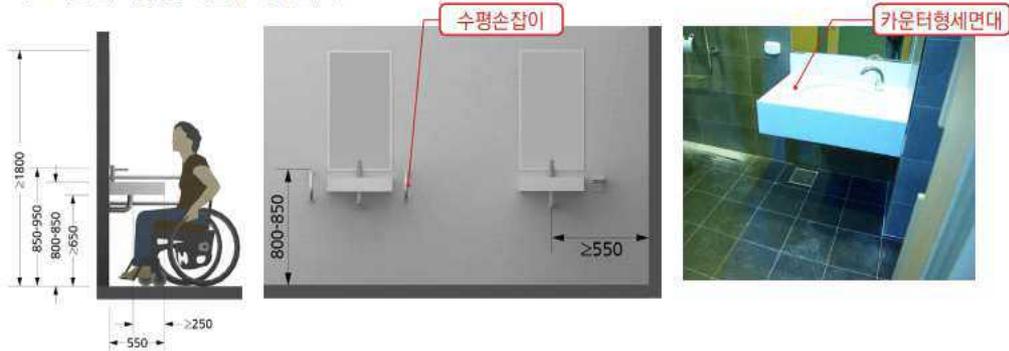
< 표 2-40 > 세면대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높이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는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이고 하단 높이가 0.65m 이상이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수도꼭지형태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누름버튼·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수평손잡이	세면대의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단, 카운터 식세면대 설치 시 제외함
점자표시	냉온수 수도꼭지 점자표시
거울	하단은 바닥면에서 0.9m 내외로 설치, 세로는 0.65m 이상으로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월체어 이용을 고려, 세면대의 설치 높이, 하부 공간 확보 여부, 거울 설치와 위치 및 형태, 손이 불편한 사람의 이용을 고려, 세면대에 설치된 수도꼭지 형태에 대해 평가함
- 수도꼭지 냉온수 방향에 대한 점자표시 설치 여부를 평가하며 광감지식인 경우 수온 유지가 가능하므로 보통으로 평가

▶ 기준에 적합한 세면대 설치 예시



▶ 수도꼭지 형태 예시



< 그림 2-22 > 세면대 평가 예시

(8)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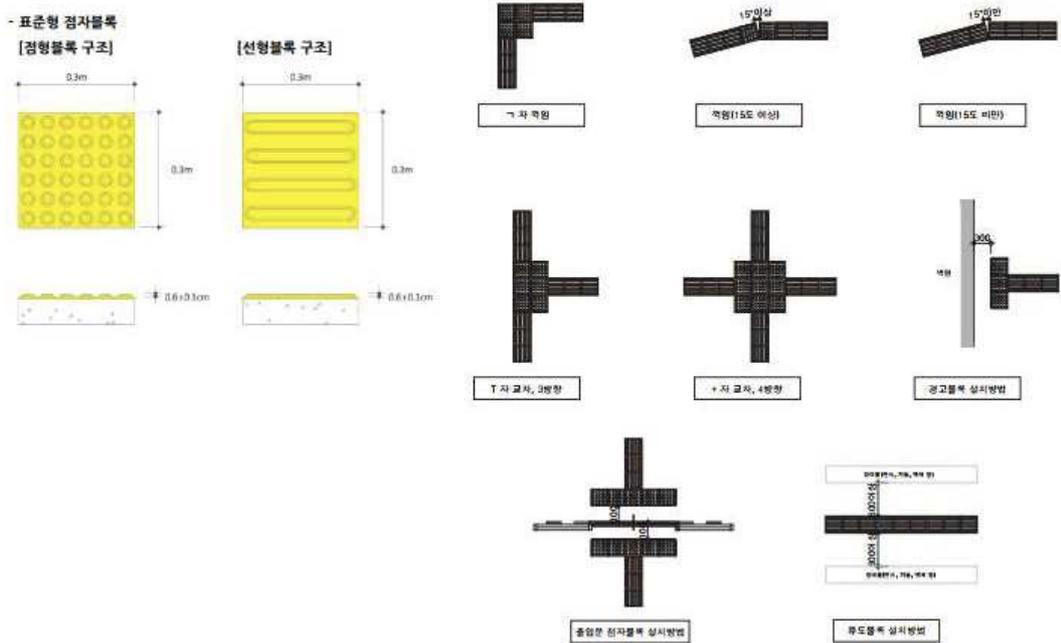
- 시설의 주출입구에서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 2-41 > 세면대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장소	주출입구에서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으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안내소 설치 시 해당장소까지 설치
규격및색상	점자블록의 사용크기는 0.3×0.3m, 노란색 점형 돌출점 높이는 0.6±0.1cm(36개돌출점), 선형돌출선 높이는 0.5±0.1cm(4개돌출선)
설치방법	선형블록은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여 설치하며,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과,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장소 및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에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주출입구에서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까지 연속되게 점자블록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평가함



< 그림 2-23 > 점자블록 규격 및 설치방법 예시

(9) 매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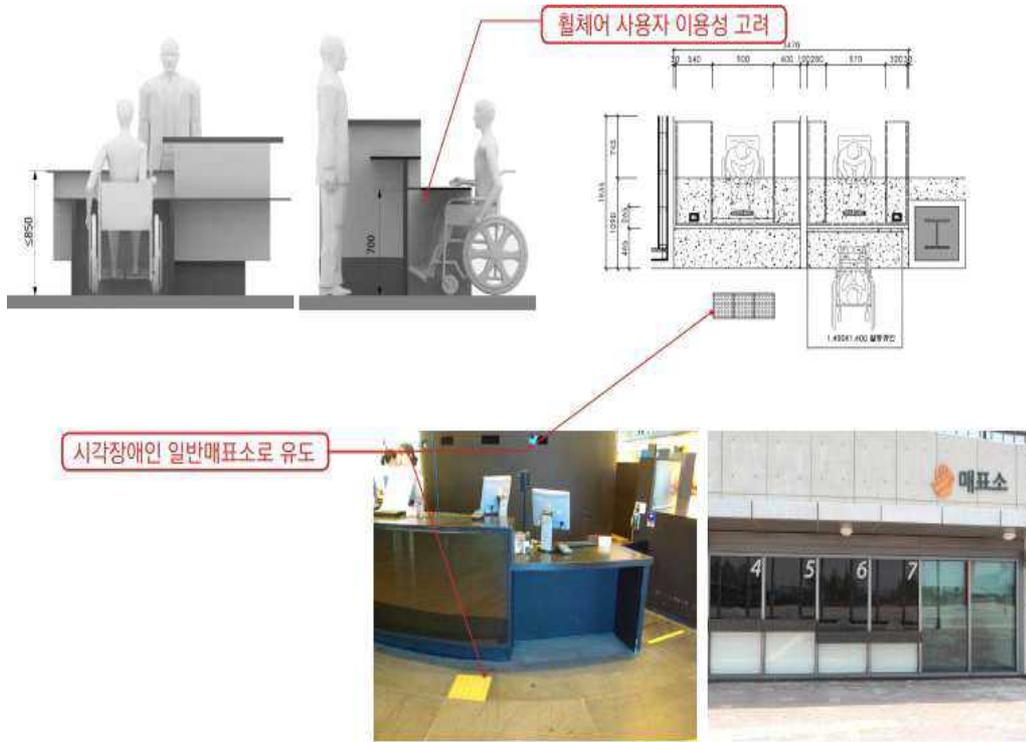
- 해당시설의 매표소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하기와 같음

< 표 2-42 > 매표소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활동공간	매표소 전면에 휠체어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점자블록 높이	매표소 0.3m전면 점형블록 설치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0.7~0.9m 이하에 설치
하부공간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을 확보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여객시설의 모든 장애인용 매표소를 대상으로 평가, 개소수를 산정,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매표소 전면 휠체어의 접근, 회전 가능성 등을 고려, 활동공간을 평가
- 시각장애인 기준으로 점자블록이 일반매표소를 향하여 설치되었는지 평가
- 장애인용 매표소의 형태는 휠체어의 접근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 그림 2-24 > 장애인용 매표소

(1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43 > 세면대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활동공간	자동발매기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점자블록	자동발매기 0.3m 전면 점형블록 설치
조작버튼설치위치	동전투입구·조작버튼 및 상품 출구의 높이는 0.4m~1.2m 이하로 설치
점자표시	조작버튼에 품목·금액 및 행선지등을 점자로 표시
음료대분출구높이	음료대 분출구 높이는 0.7m이상 0.8m이하로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여객시설에 설치된 모든 자동발매기, 음수대, 정수기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개소수를 산정

(11) 승강장

- 교통약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44 > 세면대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바닥기울기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100이하로 설치
바닥마감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점자블록	승강장 가장자리로부터 0.3m내지 0.9m범위 안에 설치
차량간격	차량과의 간격은 5cm이하 구조상 간격이 넓은 경우 경고 설비 마련
추락방지시설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유무
난간	추락우려있는 승강장 끝부분에 1.1-1.5m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유무
차량접근경고시설	청각,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접근 시 경고/ 안내할 수 있는 시설
휠체어승강장안내	승강장 접근 계단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 구역을 안내하는 표지
승강장	유도 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설치
바닥기울기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100 이하로 설치
바닥마감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철도·도시철도·광역철도 차량의 출입문 중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곳에 차량과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된 경우 설치된 것으로 평가
- 난간 승강장 끝부분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벽면, 스크린 등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난간이 설치된 것으로 평가



< 그림 2-25 > 승강장 평가 예시

3) 보행환경 조사항목

(1) 조사 대상 및 조사항목

< 표 2-45 > 보행환경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조사대상	조사항목
보도	유효폭 / 재질 및 마감 / 기울기 / 높이차이 제거 / 보행 안전지대 / 차도 분리 / 장애물구역 확보 / 가로수 가지 높이
차량진출입부	설치 방법 / 재질 및 색상
턱낮추기	경계구간높이차이 /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치안내 /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 음향신호기 위치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 주차공간 / 바닥마감 / 바닥맞입식안내표시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 잔여시간 표시기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2) 보도

- 유효폭 및 포장 기울기 등은 적절인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46 > 보도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유효폭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보행로의 유효폭은 2m 이상 확보하며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 1.5m×1.5m이상의 교행 구간을 설치하며 평지에서는 50m마다, 경사지에서는 30m마다 설치
재질및마감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기울기	보도등의 진행 방향 기울기는 1/18, 좌우 기울기 1/25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까지 완화)
높이차이제거	보행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 방향상 높이 차이는 2cm이하
보행안전지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 설치
차도분리	차도와 보도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cm이하로 설치
장애물구역확보	가로등, 전주, 간판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
가로수가지높이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로수가지가 뻗은 경우 2.5m 높이까지 가지치기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보도의 유효폭을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기록하며, 재질 및 마감에 관해서 보도의 재질 및 마감을 확인하고 조사함
- 보도의 기울기를 측정하고 기록하며 높이차이가 있을시 차이를 측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하에 장애물(간판, 지장물 등)이 있는지 조사함
-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석의 높이를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체크하며 장애물 구역 확보는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이 유효보도폭원 밖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함

(3) 차량진출입부

-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47 > 차량진출입부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방법	보도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 부분은 턱낮추기로 설치
재질및색상	보도,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질감 등을 달리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차량진출입부는 단차, 재질 및 색상 등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항목을 기록하고 조사함

(4) 턱 낮추기

- 경계구간의 턱 낮추기 및 기울기 등을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48 > 턱 낮추기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경계구간 높이차이	보도, 차도의 차이는 2cm 이하로 설치하고 연석만 낮추는 것은 안됨
연석경사로	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이하, 옆면 기울기 1/10이하로 설치하며 0.9m이상의 부분 경사로 설치 가능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확인하여 조사하며 일시대기용 안전지대가 있다면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함
-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유무를 확인하고 가로수 가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함

(5) 점자블록

- 횡단보도와 연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점자블록과 재질 등을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49 > 점자블록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횡단보도 위치안내	횡단보도의 진입부에 횡단보도 폭 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진행방향으로 보도의 폭4/5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횡단보도의 경계 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 설치
음향신호기 점형블록	수동식 음향 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차장의 설치 비율 설치장소 및 공간의 크기 보행안전구역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5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설치비율	주차대수규모 20~50대는 한면,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은 2%~4%이내 조례지정
주차공간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 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길이 6m이상
바닥마감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을 확인 후 주차대수 규모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하며 주차공간 폭과 길이를 조사하며 바닥마감 재질을 조사함

(7)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조사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51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조사기준

조사항목	조사기준
안내방법	녹색 신호기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며, 녹색 신호가 켜져있는 동안은 계속 균일한 신호음 작동
설치위치	수동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해당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높이 1.0m~1.2m 위치에 설치
잔여시간표시기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만 해당

자료:이동편의 실태조사 매뉴얼

- 음향신호기 안내방법과 설치위치 그리고 잔여시간 표시기의 유무를 확인 후 조사기준과 맞게 운영되고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함

2.3.2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및 시설 조사

가. 조사범위

- 목포시 교통수단(시내버스) 조사대상 대수는 3차 168대에서 4차 157대로 11대 감소
- 조사 범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였음

나. 교통수단(시내버스) 편의시설

- 편의시설 조사는 3차를 기준으로 기타 버스회사 내부 자료 및 버스운전자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음
- 교통수단의 설치 점검대상은 안내시설과 승강구 시설 그리고 내부시설임

1) 안내시설

- 3차 연도 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방송시설, 안내문자, 행선지 표지 등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
- 음성안내의 경우 방송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영어 방송은 제외하였음

< 표 2-52 > 자동안내시설(음성안내 방송시설) [방송여부]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 문자 안내판의 경우 설치 여부 및 위치, 글씨크기를 확인하였으며 영문표기는 제외함

< 표 2-53 > 문자안내판(글자정보)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 행선지 표시의 경우 위치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식별가능한지는 제외하였음

< 표 2-54 > 행선지 표시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2) 승강구시설

- 승강구 시설 중 승강구 폭 및 미끄럼방지시설은 차량 제조 시 설치되는 시설로 4차 계획 반영 모두 설치 된 것으로 판단됨
- 승강구 폭은 0.8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100.0% 기준치 이상임

< 표 2-55 > 승강구 폭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 표 2-56 > 승강구 미끄럼방지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 승강구 계단 색상은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명도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100.0% 설치 완료됨

< 표 2-57 > 승강구 계단 색상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참고) 전국 평균 설치율 98.9%

3) 내부시설

- 교통약자 좌석은 위치 및 설치 좌석은 4차 계획의 조사 시 설치 여부만 조사
- 4차 조사결과 교통약자 좌석 위치는 157대 모두 적합하게 설치

< 표 2-58 > 교통약자 좌석 위치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 교통약자 자리 표시는 157대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100.0% 기준치 이상임

< 표 2-59 > 교통약자 자리 표시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 약자 자리 표시 및 수직 손잡이는 3차, 4차 모두 100%설치되어 있음

< 표 2-60 > 수직 손잡이 설치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4) 교통수단 편의시설 종합평가

- 교통수단 편의시설 주요 조사 항목 평가 결과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100% 적합
- 내부시설 중 교통약자 좌석 규모 및교통약자 위치 표지만 100% 적합율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종합평가 결과 교통약자 교통수단 편의시설 설치 적합율은 92.42%임

< 표 2-61 > 교통수단 편의시설 종합평가

구	분	적합율(%)	미적합율(%)	미설치(%)	비고
안내시설	자동안내시설	100.0	0	0	
	문자안내판	100.0	0	0	
	목적지 표시	100.0	0	0	
승강구기준	승강구 폭	100.0	0	0	
	승강구 미끄럼방지	100.0	0	0	
	승강구 계단 색상	100.0	0	0	(98.9%)
내부시설	교통약자 좌석 규모	42.7	57.3	0	(21.9%)
	교통약자 위치	81.5	18.5	0	(75.5%)
	교통약자 자리 표시	100.0	0	0	
	수직손잡이	100.0	0	0	
합 계	종합평가(전국평균 적용)	92.42	7.58	-	전국평균

자료 : 본과업 교통수단조사

주) ()는 전국평균

다. 버스정류장 및 차량진입부 약자시설

1) 조사 기준 및 대상

- 버스정류장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 턱낮춤: 15cm이하
 - 활동공간 : 폭 0.8m 이상, 내부 폭 1.8m X 1.8m 이상
 - 동선분리 : 시각, 휠체어 동선 가능 여부

2) 버스정류장 및 차량진입부 약자시설 조사 결과

- 버스정류장은 여객시설 주변(목포역,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500m) 조사결과 적합율은 낮은 편임
- 점자 음성정보와 정보버튼은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형블럭 설치는 4.8%로 낮은편임

< 표 2-62 > 버스정류장 약자시설 기준 적합율

구분	턱낮춤	활동공간	동선분리	점형블럭	선형블럭	안내위치	점자음성	정보버튼	
3차	적합/사례	13/64	29/64	19/24	5/64	5/29	32/38	3/38	10/44
	적합율(%)	20.3	45.3	29.7	7.8	17.2	84.2	7.9	22.7
4차	적합/사례	25/41	21/42	8/42	4/42	2/42	42/42	0/42	0/42
	적합율(%)	59.5	50.0	19.1	9.5	4.8	100.0	0.0	0.0

- 차량 진입부는 금번 계획 조사 포함으로 본 계획 조사 결과 목포시는 전남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표 2-63 > 여객시설 주변 차량 진입부시설 기준적합율(여객시설 주변)

구분	보도턱낮추기 보도폭유지	색상 및 질감	비고 (미설치)
전남	적합/사례	26/33	4/33
	적합율(%)	78.8	12.1
목포시	적합/사례	56/65	7/65
	적합율(%)	86.2	13.8

자료 : 본과업 현장조사

라. 횡단보도 약자시설

1) 조사 기준 및 대상

- 횡단보도 약자시설(역,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17개 대상)
 - 음향신호기 : 전체 조사 시설 중 설치율
 - 잔여시간 표시기 :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중 설치율

2) 횡단보도 약자시설 조사 결과

-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전남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잔여시간 표시기는 전남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다음은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조사결과임

< 표 2-64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조사결과

구분		음향신호기 (설치율)	신호기위치	잔여시간 표시기
전남 평균	적합/사례	7/49	10/10	6/9
	적합율(%)	14.3	100.0	66.7
목포시	적합/사례	6/17	11/11	6/11
	적합율(%)	35.3	100.0	54.5

주) 여객시설 3개소 주변 17개 횡단보도 조사



< 그림 2-26 > 목포시 음향신호기 설치

마. 여객시설

- 본 과업에서는 조사한 여객 시설은 목포종합버스터미널과 목포역, 연안여객터미널이 조사대상임
- 조사 기준은 보행접근로, 출입구(문), 위생시설, 안내시설, 보안 검사장 편의시설 등을 지침에 따라 조사하였음

1) 보행접근로

- 여객시설은 목포역, 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을 조사하였으며 보행 접근로는 4개 항목 모두 적합하게 설치됨

< 표 2-65 > 보행접근로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유효폭	접근로유효폭2m 이상	2	0	0	4	0	0	1	0	0
기울기	접근로전체구간 1/8이하	2	0	0	4	0	0	1	0	0
재질및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	0	0	4	0	0	1	0	0
높이차이 제거	단차가없어야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2	0	0	4	0	0	1	0	0
보행접근로평균		100	-	-	100	-	-	100	-	-

자료: 본과업 조사

2) 출입구(문)

- 출입구 조사 11개 항목 3개 여객시설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함

< 표 2-66 > 출입구(문)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통과유효폭	0.9m 이상 확보	2	0	0	4	0	0	1	0	0
전면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2	0	0	4	0	0	1	0	0
출입구 옆 활동공간	0.6m 이상 확보	2	0	0	4	0	0	1	0	0
출입구단차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됨	2	0	0	4	0	0	1	0	0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문형태	미닫이문	문지방 또는 홈이 없이 설치	2	0	0	4	0	0	1	0	0
	여닫이문	도어체크 설치되고 3초이상 개폐	0	0	2	0	0	4	0	0	1
	자동문	충분한 개방시간과 감지범위	2	0	0	4	0	0	1	0	0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설치	2	0	0	4	0	0	1	0	0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공중사무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 설치	1	0	0	0	0	4	0	0	1	
점형블록	출입문 전면 0.3m 설치	1	0	0	4	0	0	0	0	1	
호출벨	자동문 옆 설치	0	0	2	0	0	4	0	0	1	
출입구(문) 평균		100	-	-	100	-	-	100	-	-	

자료 : 본과업 조사

3) 위생시설

- 장애인 일반사항(위치 및 점형 블록 등)의 설치율은 버스터미널은 83.3%, 여객선 및 목포역은 75.0%로 조사되었음

< 표 2-67 > 위생시설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화장실위치	장애인이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접근통로 확보	2	0	0	3	1	0	1	0	0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각 1개이상 설치	2	0	0	3	1	0	1	0	0
바닥면 높이차이	2cm이하의 단차	1	1	0	4	0	0	1	0	0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2	0	0	4	0	0	1	0	0
점형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1	1	0	1	3	0	1	0	0
점자표지판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1	1	0	3	1	0	0	1	0
장애인 화장실 평균		75.0	25.0	-	75.0	25.0	-	83.3	16.7	-

자료: 본과업 조사

▣ 장애인 대변기

- 여객시설 장애인 대변기 조사결과 설치율이 평균 83.3%임

< 표 2-68 > 장애인 대변기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1	0	0	4	0	0	1	0	0
수평손잡이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1	0	0	3	0	1	1	0	0
세정장치, 유지결이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유지결이 등은 대변기 앉은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1	0	0	3	1	0	1	0	0
사용여부 설비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1	0	0	2	0	2	0	0	1
장애인 대변기 평균		100	-	-	75.0	6.25	18.75	75.0	-	25.0

자료: 본과업 조사

▣ 장애인 소변기

- 여객시설 장애인 소변기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외 대부분 미설치

< 표 2-69 > 장애인 소변기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수평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손잡이간격:0.6m내외	0	0	1	2	0	2	0	0	1
수직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1.1m~1.2m 길이: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0	0	1	2	0	2	0	0	1
장애인 소변기평균		-	-	100.0	50.0	-	50.0	-	-	100.0

자료: 본과업 조사

▣ 장애인 세면대

- 여객시설 장애인 세면대 조사결과 장애인 세면대 설치율은 76.7%임
- 설치높이, 수도꼭지형태, 수평손잡이, 거울 모두 적합하나 점자표시는 모두 미설치임

< 표 2-70 > 장애인 세면대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설치높이	상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0.65m이상 (휠체어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공간확보)	1	0	0	3	1	0	1	0	0
수도꼭지형태	사용하기 쉬운 형태	1	0	0	4	0	0	1	0	0
수평손잡이	양옆에 설치 (카운터식 세면대 제외)	1	0	0	3	0	1	1	0	0
점자표시	수도꼭지 점자표시	0	0	1	0	0	4	0	0	1
거울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세로길이는 0.65m이상	1	0	0	4	0	0	1	0	0
장애인 세면대 평균		80.0	-	20.0	70.0	5.0	25.0	80.0	-	20.0

자료: 본과업 조사

▣ 안내시설

- 장애인 안내시설은 점자블럭, 안내 및 유도시설, 경보 피난시설 등 대상으로 조사
- 점자블럭은 설치적합율 72.2%임, 안내 및 유도시설은 설치율은 50%, 경보 피난시설의 적합율은 여객선터미널외 미설치

< 표 2-71 > 안내시설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점자블럭	설치장소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으로 이동시 연속적으로 설치 (장애인 안내소 설치시 해당 장소까지 설치)	1	0	0	1	0	1	1	0	0
	규격 및 색상 0.3m×0.3m 노란색	1	0	0	1	0	1	1	0	0
	설치방법 점형블럭:주요지점 및 위험지점 0.3m 전면 설치 선형블럭: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1	0	0	1	0	1	0	1	0
점자블럭 평균		100	-	-	50.0	-	50.0	66.6	33.4	-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안내 및 유도 시설	안내도	점자를 병기한 안내판 설치	1	0	0	1	0	1	0	0	1
	유도 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	0	0	1	1	0	1	1	0	0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50.0	0	50.0	50.0	-	50.0	50.0	-	50.0
경보 피난 시설	청각 경보장치	청각경보장치설치	1	0	0	0	0	2	0	0	1
	시각 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설치	1	0	0	0	0	2	0	0	1
	경보피난시설 평균		100.0	0	-	-	0	100.0	-	-	100.0
안내시설 평균		83.3	-	16.7	33.4	-	66.6	38.9	-	61.1	

자료: 본과업 조사

▣ 보안검사장 대기장소 편의시설

- 보안검사장의 편의시설은 목포역 및 여객선 터미널 66.6% 적합
- 임신부 휴게시설은 목포역은 100.0%, 여객선 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은 미설치

< 표 2-72 > 보안검사장 대기장소 편의시설 조사표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폭 0.9m이상) 설치	0	0	1	0	0	1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0.9m이상	1	0	0	1	0	0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1/12이하의 기울기 확보	1	0	0	1	0	0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평균		66.6	-	33.4	66.6	-	33.4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휴게 시설 위치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 접근가능 위치	1	0	0	0	0	2	0	0	1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별도 설치	1	0	0	0	0	2	0	0	1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1	0	0	0	0	2	0	0	1
	기저귀 교환대 높이	높이 0.85m~0.65m 설치	1	0	0	0	0	2	0	0	1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	0	0	0	0	2	0	0	1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100.0	-	-	-	-	100.0	-	-	100.0
	기타시설 평균		83.3	-	16.7	33.3	-	66.7	-	-	100.0

자료: 본과업 조사

바. 보행환경 실태조사

1) 보도시설

- 조사 대상은 여객시설 3개 시설 주변 500m로 보도 주요 4개 항목 적합율은 95.88%로 조사됨

< 표 2-73 > 보도시설 조사표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유효폭	432	376	56	다수	87.04	12.96
뒹개	511	505	6	-	98.83	1.17
높이차	627	621	6	-	95.69	4.31
가로수 높이	130	128	2	-	98.46	1.54
계	1,700	1,630	70	-	95.88	4.12

자료: 본과업 조사

2) 점자블럭

- 점자블럭은 조사사례 769개 중 적합시설이 392개로 적합율은 50.98%임

< 표 2-74 > 점자블럭 조사표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횡단보도 위치 안내 앞	312	216	62	34	69.23	30.77
임시 대기용 안전시설 앞	339	176	85	78	51.92	48.08
음향신호기 앞	118	0	29	89	0.0	100.0
계	769	392	176	201	50.98	49.02

자료: 본과업 조사

3) 보도차량 진입부 시설

- 보도의 차량진입부 시설 조사 사례는 113개소로 적합율은 69.03%로 조사됨

< 표 2-75 > 보도차량 진입부 시설 조사표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차량진입 턱낮춤	113	92	21	0	81.42	18.59
색상 및 질감	113	64	49	0	56.64	43.36
계	226	156	70	0	69.03	30.97

자료: 본과업 조사

4) 진입차량 말뚝(블라드)

- 차량진입 억제 말뚝 적합율은 34.48%로 낮음(전국평균 71.3%)

< 표 2-76 > 진입차량 말뚝(블라드)조사표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시설규격(지정수)	29	18	11	0	62.07	37.93
설치간격	29	12	17	0	41.38	58.62
점형블록	29	0	0	29	0.0	100.0
계	87	30	28	-	34.48	65.52

자료: 본과업 조사

5) 보호구역 지정 현황

-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96개소와 노인보호구역 4개소로 기존 총 100개소로 운영중이었으나 2022년 조정하여 총 63개소로 통합 조정

< 표 2-77 > 목포시 보호구역 조정(통합, 축소, 확대) 기준

구분	정비주요내용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지정으로 두 보호구역간 거리가 200m 이내인 경우(최대 500m) • 어린이 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 거리 100m 이내인 경우
축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양쪽 지정시편측 축소 • 신호등 2개 이상 교차로 초과 지정 시 축소 • 통학 특성 시 차량이용이 주 교통수단인 경우 축소 •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기준(100명)의 50% 이하인 경우 축소 • 기타 민원 및 주차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택과

< 표 2-78 > 보호구역 조정 결과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96개소	58개소	-38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5개소	+1개소	
합계	100개소	63개소	-37개소	

6) 보호구역 시설물현황 조사결과

- 보호구역 시설 조사 결과는 통합전 전수조사로 세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79 > 보호구역 시설 조사 결과표

구분		보호구역(66개소)	비고
통합 표지 (293EA)	가로형	276	
	세로형	17	
교통 안전 표지 (477EA)	보호구역해제	19	
	보호구역주의(133)	28	
	보호구역지시(324)	46	
	속도제한(224)	31	
	주정차(218, 219)	126	
	과속방지(129)	69	
	기타표지	158	
노면 표지	제한	구형(EA)	278
	속도	신형(518)	29
	보호구역글씨(EA)		263
	주정차	1선(m)	33783
	금지	2선(m)	5556
미끄럼 방지	전면포장(m)	2045	
	부분포장(m)	8438	
횡단 보도 (194EA)	일반(EA)	134	
	고원식(EA)	60	
교통 안전 시설 및 기타	신호등(EA)	31	
	웬스(m)	8124	
	반사경(EA)	60	
	CCTV(EA)	75	
	기타(EA)	225	

사. 버스승강장

- 버스승강장은 총 505개소이며 이중 방풍식이 246개소로 49.8%이고 유개식이 67개소로 13.2%, 지주식이 189개소로 37.0%로 조사되었음
- 즉 전체의 37%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 편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2-80 > 목포시 시내버스 승강장 조사

구 분	방풍식	유개식	지주식	합 계
승강장수(개소)	246	67	189	505
구성율(%)	49.8	13.2	37.0	100.0

아. 저상버스 운행대수 및 운행노선

- 저상버스는 총 운행대수 157대 중 2021년 현재 36대로 운행율은 23.36%이며 운행노선은 20개노선 중 5개노선으로 조사되었음

< 표 2-81 > 저상버스 도입현황

구 분	총 운행대수	운행 대수	도입율	비 고
저상버스	157대	36대	23.36%	

< 표 2-82 > 저상버스 운행노선

구 분	총 운행노선	저상버스 운행노선	노선 운행율	CNG충전소 설치 현황
운행 노선	20개 노선	5개 노선	20.0%	1개소

자. BIT 구축 현황

- BIS(BIT) 구축사업은 2017년 120개소이었으며, 2022년 목표대수는 240개소이나 도달대수는 205개소로 도달율은 70.38%임

< 표 2-83 > BIT 설치현황

구 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BIT (개소)	120	240	205	70.38%

차.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콜택시는 의무대수가 25대이며 현재 19대로 도입 도달율은 76%로 조사

< 표 2-84 > 장애인 콜택시 도입현황

구 분	1,2급 장애인수	도입목표 (법정대수)	운영대수	법정도달율	비고
특별교통수단	3,733명	25대	19대	76%	
비 고		150인당 1대			

카. 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인원은 2021년 현재 22명임

< 표 2-85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구 분	인원	운영 방식	형태	비 고
운영 현황	22명	위탁	콜센터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 운영

2.3.3 보행환경조사

가. 조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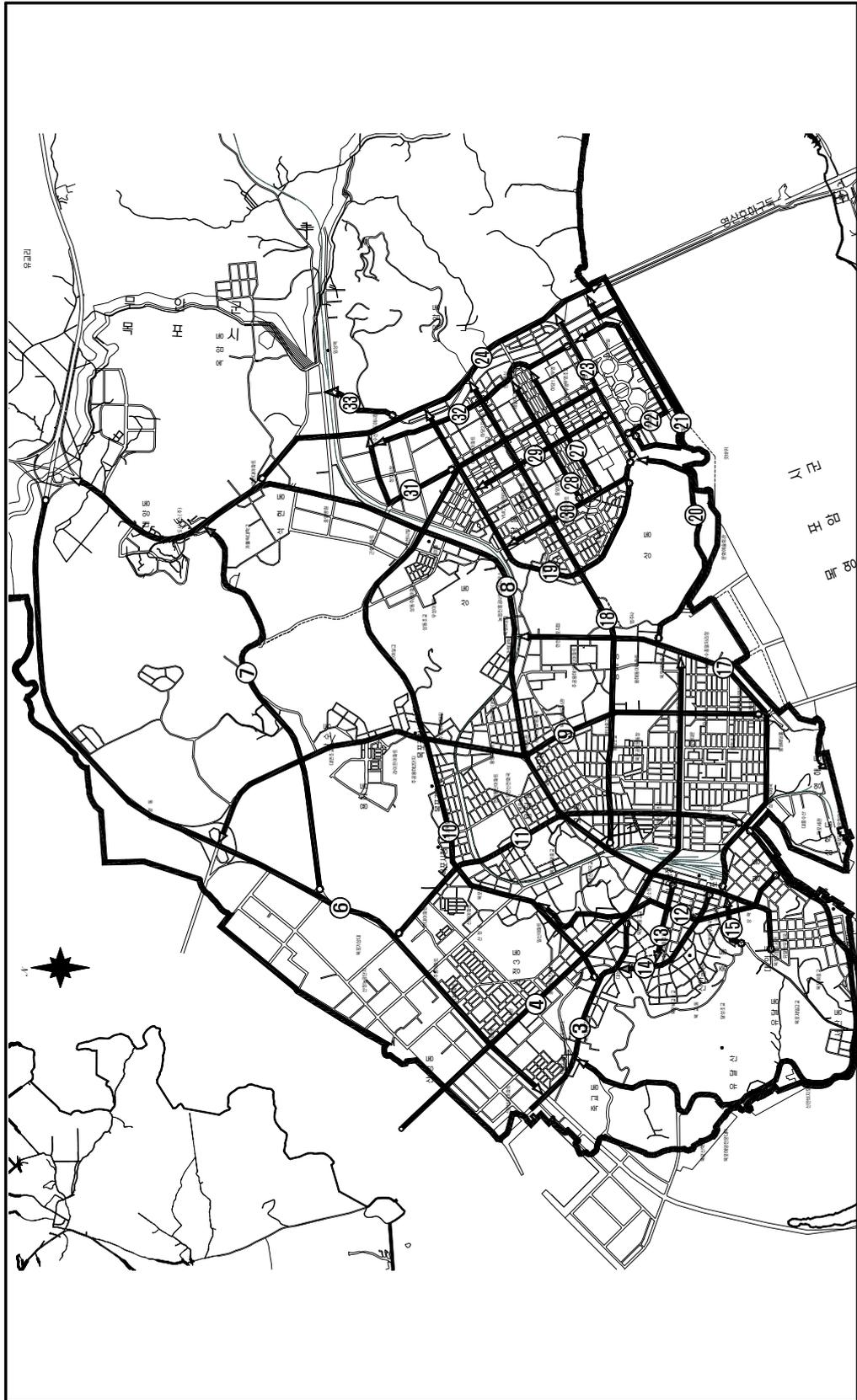
- 본 계획에서는 3차 계획조사 대상 보도가 도로 중 휠체어 이용자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 설치 도로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대상은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기존 2차 및 3차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조사를 시행하였음
- 다만 신도시와 최근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 보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5년 단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 조사내용은 보도와 연계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휴게실 및 음향신호기 등 교통약자 관련 시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음

나. 조사대상도로 현황

- 다음은 조사대상 보행여건조사 현황임

< 표 2-86 >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 보행여건 조사 내용

번호	도로명	노 선 명	계획 차로폭	도로 연장	기종점		연장 (km)	노폭 (m)	차로수 (왕복)	보도폭 (m)
					시 점	종 점				
1	해안로	대로3-13호선	25	5.48	동명동4거리	죽교동4거리	10.96	27	4~6	2~5.5
2	북향로	대로2-4호선	30	0.25	목여고 앞	북향	4.46	12~25	2~4	2~4
		대로3-13호선	25	0.28						
3	청호로	중로2-3호선	15	1.7	입암천	해양경찰서	7.60	24~35	4~8	4~8
		대로3-3호선	25	2.2						
4	고하대로	대로1-2호선	35	1.6	서해안IC	여사도시경계	15.04	25~34	6~8	4~5
		대로1-7호선	35	4.54						
5	대양로	대로1-6호선	35	2.98	삼진산단입구	삼향동사무소	7.2	10~34	2~8	3
		대로1-6호선	35	3.60						
6	영산로	대로1-1호선	35	4.64	국도1호시점	서해안IC	17.02	15~35	2~8	2~5
		대로2-1호선	30	2.34						
		대로3-1호선	25	0.60						
		중로2-1호선	15	0.93						
7	용당로	대로3-4호선	25	2.16	동원예식장	압해대교IC	8.02	23~30	4~6	2.5~4
		대로2-2호선	30	1.85						
8	양을로	대로3-8호선	25	2.68	죽교3거리	부영아파트옆	14.16	25	4~6	2.5~5
		대로2-3호선	30	4.40						
9	산정로	대로3-7호선	25	2.10	동명동사거리	연산주공3거리	6.30	26	4~6	2.5~3
		대로1-5호선	35	1.05						
10	삼일로	중로3-5호선	12	0.23	영화철물옆	산정파출소	4.80	7~12	1~4	2~2.5
		중로3-6호선	12	2.17						
11	남교로	중로3-1호선	12	0.73	KT목포지사	북교초등앞	1.46	11	2	-
12	수문로	중로2-2호선	15	1.45	목포역앞	순천당약국	2.90	10	2	2~2.5
13	삼학로	대로1-1호선	35	3.11	목포역	과학대앞	7.90	20~35	4~8	2~7
		대로3-1호선	25	0.84						
14	백년로	광로3-1호선	40	3.88	연동철도건널목	부주교	7.76	40	8	4
15	하당로	대로3-5호선	25	1.24	교육청	하당교	5.56	25	4	2~4
		중로1-25호선	20	1.54						
16	문화의거리	대로3-12호선	25	1.93	제일중앙	깃바위터널	3.86	27	4	5
		중로1-32호선	20	0.45						
17	미향로	중로1-34호선	20	1.46	금광교려화학뒤	미향초교	4.40	19	2~4	2~9
		대로3-16호선	25	0.29						
		대로2-7호선	30	1.60						
18	평화로	대로2-7호선	30	1.60	금강교려화학옆	바다주유소	3.20	22	6	4
19	후광로	광로3-2호선	40	1.16	깃바위터널	목포해운항만청	2.32	35	8	4
20	영산강하구로	대로1-3호선	35	4.43	석현삼학주유소	하구독시경계	8.86	35	6	3~4
21	부흥로	중로1-19호선	20	1.19	노동부	부영아파트뒤	2.38	20	4	3
22	신흥로	중로1-18호선	20	1.12	노동부	제일2차아파트뒤	2.24	20	4	2~3
23	비파로	대로2-6호선	30	1.21	윤송웨당앞	비피아파트옆	2.42	30	6	3~4
24	교육로	대로3-9호선	25	1.21	교육청	영흥교뒤4거리	2.42	25	4	4
25	석현로	대로2-5호선	30	0.62	E마트사거리	자동차매매센터	2.42	30	4~6	4
		대로3-28호선	25	0.59						
26	옥암로	중로1-20호선	20	1.74	부흥상가4거리	벤처빌딩옆	3.48	21	4	2~4
27	유통로	대로3-29호선	25	0.80	근대연립뒤	남도골프연습장	1.60	25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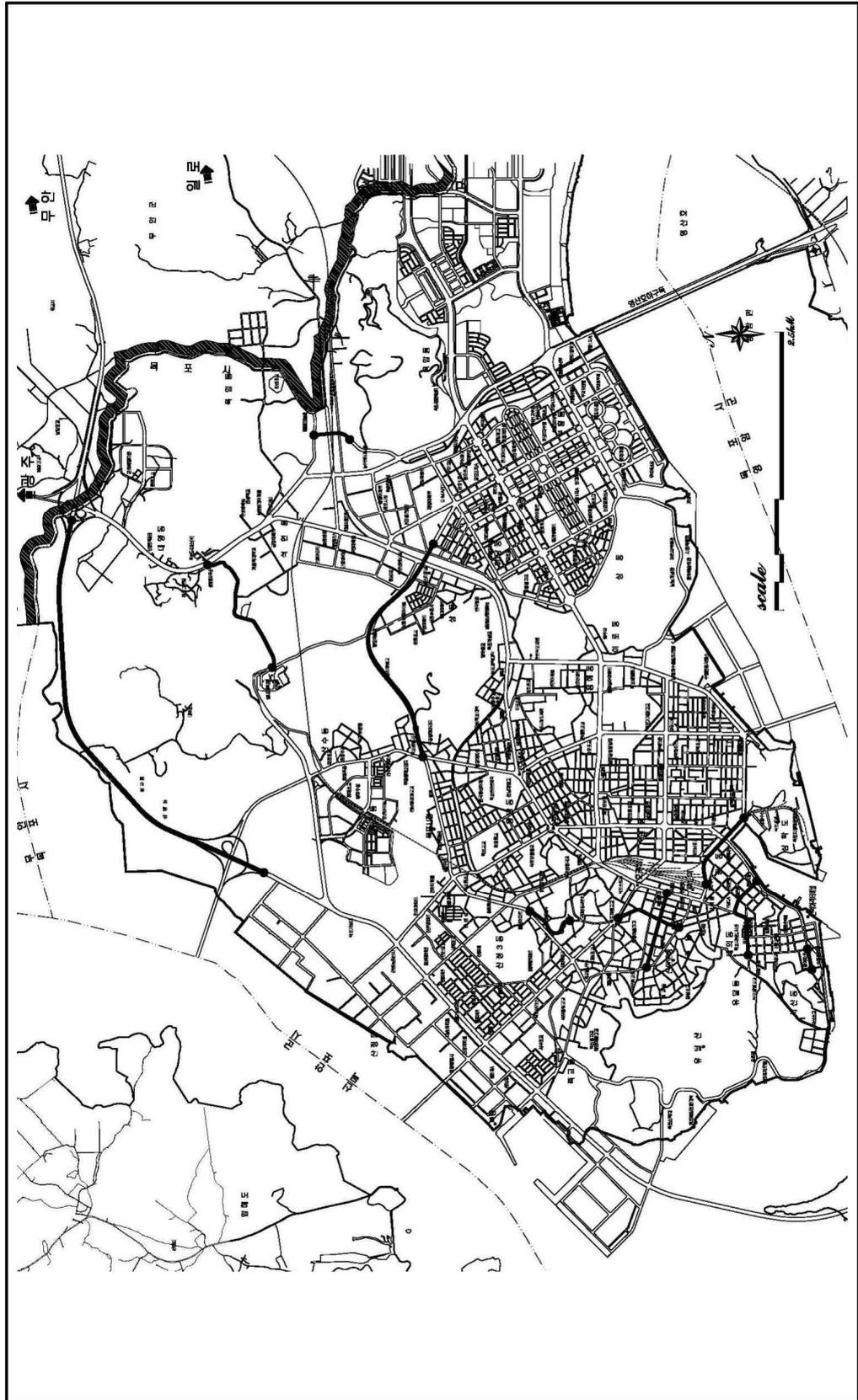


< 그림 2-27 > 조사대상 주요 간선도로망 현황

- 다음은 각 노선별 세부 도로 보도 유효폭 조사 현황이다.

< 표 2-87 > 각 노선별 보도 유효폭 조사 현황

번호	도로명	노 선 명	구간연장 (km)	적합구간 (km)	미달구간 (km)	미설치구간 (km)
1	해안로	대3-13	10.96	10.96	-	-
2	북향로	대2-4,대3-13,중2-3	4.46	4.42	0.04	-
3	청호로	대3-3, 대1-2	7.60	7.50	0.10	-
4	고하대로	대1-6,대1-7	15.04	5.90	0.06	9.08
5	대양로	대1-6	7.2	3.32	-	3.88
6	영산로	대1-1,대2-1,대3-1,중2-1	17.02	14.23	1.80	0.99
7	용당로	대2-2,대3-4	8.02	7.92	0.10	-
8	양을로	대2-3,대3-8	14.16	10.06	0.30	3.80
9	산정로	대3-7, 대1-5	6.30	6.04	0.26	-
10	삼일로	중3-5, 중3-6	4.80	1.38	1.55	1.87
11	남교로	중3-1	1.46	-	-	1.46
12	수문로	중2-2	2.90	2.60	0.30	-
13	삼학로	대1-1,대3-1	7.90	6.94	0.46	0.50
14	백년로	광로3-1호선	7.76	7.76	-	-
15	하당로	대3-5, 중1-25	5.56	4.96	0.60	-
16	문화의거리	대3-12	3.86	3.56	0.30	-
17	미향로	중1-32,중1-34,대3-16	4.40	4.40	-	-
18	평화로	대2-7	3.20	3.20	-	-
19	후광로	광3-2	2.32	2.26	0.06	-
20	영산강하구로	대1-3	8.86	8.76	0.10	-
21	부흥로	중1-19	2.38	2.28	0.10	-
22	신흥로	중1-18	2.24	2.09	0.15	-
23	비파로	대2-6	2.42	2.42	-	-
24	교육로	대3-9	2.42	2.42	-	-
25	석현로	대2-5, 대3-28	2.42	2.42	-	-
26	옥암로	중1-20	3.48	3.28	0.20	-
27	유통로	대3-29	1.60	1.13	0.05	0.42
계			160.74	130.71	6.53	22.40



< 그림 2-28 > 조사구간 중 보도 미설치 구간

다. 보도폭원 교행 불가능 구간 조사

- 보행자 및 교통약자 통행이 가능한 최소보행폭원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유효보도폭원을 확보하지 못한 구간은 총 18구간으로 조사되었음

< 표 2-88 > 세부 노선별 교행가능 구간 조사표

번호	도로명	노 선 명	구간연장 (km)	법적적합 연장(km)	법적기준미달 연장(km)	미설지구간 연장(km)
1	해안로	대3-13	10.96	10.96	-	-
2	북향로	대2-4, 대3-13, 중2-3	4.46	4.42	0.04	-
3	청호로	대3-3, 대1-2	7.60	7.50	0.10	-
4	고하대로	대1-6, 대1-7	15.04	5.90	0.06	9.08
5	대양로	대1-6	7.2	3.32	-	3.88
6	영산로	대1-1, 대2-1, 대3-1, 중2-1	17.02	14.23	1.80	0.99
7	용당로	대2-2, 대3-4	8.02	7.92	0.10	-
8	양을로	대2-3, 대3-8	14.16	10.06	0.30	3.80
9	산정로	대3-7, 대1-5	6.30	6.04	0.26	-
10	삼일로	중3-5, 중3-6	4.80	1.38	1.55	1.87
11	남교로	중3-1	1.46	-	-	1.46
12	수문로	중2-2	2.90	2.60	0.30	-
13	삼학로	대1-1, 대3-1	7.90	6.94	0.46	0.50
14	백년로	광로3-1호선	7.76	7.76	-	-
15	하당로	대3-5, 중1-25	5.56	4.96	0.60	-
16	문화의거리	대3-12	3.86	3.56	0.30	-
17	미향로	중1-32, 중1-34, 대3-16	4.40	4.40	-	-
18	평화로	대2-7	3.20	3.20	-	-
19	후광로	광3-2	2.32	2.26	0.06	-
20	영산강하구로	대1-3	8.86	8.76	0.10	-
21	부흥로	중1-19	2.38	2.28	0.10	-
22	신흥로	중1-18	2.24	2.09	0.15	-
23	비파로	대2-6	2.42	2.42	-	-
24	교육로	대3-9	2.42	2.42	-	-
25	석현로	대2-5, 대3-28	2.42	2.42	-	-
26	옥암로	중1-20	3.48	3.28	0.20	-
27	유통로	대3-29	1.60	1.13	0.05	0.42
계			160.74	130.71	6.53	22.40

라. 도로경사구간 적정성 조사

- 경사진 보도의 연장이 30m이상인 경우 1.5m×1.5m 크기의 수평면 참을 설치하도록 하고있음
- 조사결과 경사구간이 30m이상인 구간은 총 484개 구간으로 15.74km가 해당되며 이는 조사 총연장의 9.79%로 나타났음

< 표 2-89 > 보도경사구간 현황

번호	도로명	노선명	기종점		구간연장 (km)	경사구간 30m 이상	비고 (개소수)
			시점	종점			
1	해안로	대3-13	동명동4거리	죽교동4거리	10.96	2.74	85
2	북항로	대2-4, 대3-13, 중2-3	목여고 앞	북항	4.46	-	
3	청호로	대3-3, 대1-2	입암천	해양경찰서	7.60	0.40	12
4	고하대로	대1-6, 대1-7	서해안C	허사도시경계	15.04	2.55	79
5	대양로	대1-6	삼진산단입구	삼향동사무소	7.2	1.50	46
6	영산로	대1-1, 대2-1, 대3-1, 중2-1	국도1호시점	서해안C	17.02	2.25	70
7	용당로	대2-2, 대3-4	동원예식장	입해대교IC	8.02	0.50	15
8	양을로	대2-3, 대3-8	죽교3거리	부영아파트옆	14.16	0.05	1
9	산정로	대3-7, 대1-5	동명동사거리	연산주공3거리	6.30	0.55	17
10	삼일로	중3-5, 중3-6	영화철물옆	산정파출소	4.80	-	
11	남교로	중3-1	KT목포지사	북교초등앞	1.46	-	
12	수문로	중2-2	목포역앞	순천당약국	2.90	0.40	12
13	삼학로	대1-1, 대3-1	목포역	교학대앞	7.90	-	
14	백년로	광로3-1호선	연동철도건널목	부주교	7.76	1.74	54
15	하당로	대3-5, 중1-25	교육청	하당교	5.56	2.30	71
16	문화의거리	대3-12	제일중앙	갯바위터널	3.86	0.10	2
17	미향로	중1-32, 중1-34, 대3-16	금광고려화학뒤	미향초교	4.40	0.06	2
18	평화로	대2-7	금강고려화학옆	바다주유소	3.20	-	
19	후광로	광3-2	갯바위터널	목포해운항만청	2.32	-	
20	영산강하구로	대1-3	석현삼학주유소	하구독시경계	8.86	0.60	18
21	부흥로	중1-19	노동부	부영아파트뒤	2.38	-	
22	신흥로	중1-18	노동부	제일2차아파트뒤	2.24	-	
23	비파로	대2-6	윤송웨딩앞	비파아파트옆	2.42	-	
24	교육로	대3-9	교육청	영흥고뒤4거리	2.42	-	
25	석현로	대2-5, 대3-28	E마트사거리	자동차매매센터	2.42	-	
26	옥암로	중1-20	부흥상가4거리	벤처빌딩옆	3.48	-	
27	유통로	대3-29	근대연립뒤	남도골프연습장	1.60	-	
계					160.74	15.74	484

마. 포장 상태조사

- 다음은 보도 포장상태 현황으로 미포장 및 미설치 구간이 22.4km로 조사됨

< 표 2-90 > 포장상태조사

번호	도로명	노 선 명	구간연장 (km)	포 장 상 태			법적기준 적합연장 (km)	미설치 (미포장) (km)
				블럭	투수콘	콘크리트		
1	해안로	대3-13	10.96	○	○	○	10.96	-
2	북항로	대2-4,대3-13,중2-3	4.46	○			4.42	-
3	청호로	대3-3, 대1-2	7.60	○		○	7.50	-
4	고하대로	대1-6,대1-7	15.04	○	○	○	5.90	9.08
5	대양로	대1-6	7.2			○	3.32	3.88
6	영산로	대1-1,대2-1,대3-1,중2-1	17.02	○		○	14.23	0.99
7	용당로	대2-2,대3-4	8.02	○		○	7.92	-
8	양을로	대2-3,대3-8	14.16	○	○	○	10.06	3.80
9	산정로	대3-7, 대1-5	6.30	○		○	6.04	-
10	삼일로	중3-5, 중3-6	4.80	○		○	1.38	1.87
11	남교로	중3-1	1.46				-	1.46
12	수문로	중2-2	2.90	○	○		2.60	-
13	삼학로	대1-1,대3-1	7.90	○		○	6.94	0.50
14	백년로	광로3-1호선	7.76	○		○	7.76	-
15	하당로	대3-5,중1-25	5.56	○		○	4.96	-
16	문화의거리	대3-12	3.86	○		○	3.56	-
17	미향로	중1-32,중1-34,대3-16	4.40	○	○		4.40	-
18	평화로	대2-7	3.20	○		○	3.20	-
19	후광로	광3-2	2.32	○		○	2.26	-
20	영산강하구로	대1-3	8.86	○		○	8.76	-
21	부흥로	중1-19	2.38	○		○	2.28	-
22	신흥로	중1-18	2.24	○			2.09	-
23	비파로	대2-6	2.42	○			2.42	-
24	교육로	대3-9	2.42	○		○	2.42	-
25	석현로	대2-5,대3-28	2.42	○		○	2.42	-
26	옥암로	중1-20	3.48	○		○	3.28	-
27	유통로	대3-29	1.60	○		○	1.13	0.42
계			160.74				130.71	22.40

바. 차도분리 및 보행 안전지대

1) 보행안전지대 설치

- 대부분의 보도에 별도의 보행안전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육교 등이 설치된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보행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석의 높이 조사

- 연석의 높이는 최대 25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160.74km중 대부분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기준 미달구간은 22.40km로 나타남

< 표 2-91 > 보도 연석높이 설치 현황

번호	도로명	노 선 명	구간연장	법적기준 적합연장	법적기준 미달연장	비고
1	해안로	대3-13	10.96	10.96	-	
2	북향로	대2-4, 대3-13, 중2-3	4.46	4.42	-	
3	청호로	대3-3, 대1-2	7.60	7.50	-	
4	고하대로	대1-6, 대1-7	15.04	5.90	9.08	
5	대양로	대1-6	7.2	3.32	3.88	
6	영산로	대1-1, 대2-1, 대3-1, 중2-1	17.02	14.23	0.99	
7	용당로	대2-2, 대3-4	8.02	7.92	-	
8	양을로	대2-3, 대3-8	14.16	10.06	3.80	
9	산정로	대3-7, 대1-5	6.30	6.04	-	
10	삼일로	중3-5, 중3-6	4.80	1.38	1.87	
11	남교로	중3-1	1.46	-	1.46	
12	수문로	중2-2	2.90	2.60	-	
13	삼학로	대1-1, 대3-1	7.90	6.94	0.50	
14	백년로	광로3-1호선	7.76	7.76	-	
15	하당로	대3-5, 중1-25	5.56	4.96	-	
16	문화의거리	대3-12	3.86	3.56	-	
17	미향로	중1-32, 중1-34, 대3-16	4.40	4.40	-	
18	평화로	대2-7	3.20	3.20	-	
19	후광로	광3-2	2.32	2.26	-	
20	영산강하구로	대1-3	8.86	8.76	-	
21	부흥로	중1-19	2.38	2.28	-	
22	신흥로	중1-18	2.24	2.09	-	
23	비파로	대2-6	2.42	2.42	-	
24	교육로	대3-9	2.42	2.42	-	
25	석현로	대2-5, 대3-28	2.42	2.42	-	
26	옥암로	중1-20	3.48	3.28	-	
27	유통로	대3-29	1.60	1.13	0.42	
계			160.74	130.71	22.40	

▣ 보행 장애물

- 보행 장애물 조사는 보도에 설치된 전주나, 가로등, 간판 및 공준전화박스 등으로 유효 보도 폭이 확보되지 않거나 진행방향에 위치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지점으로 본 과업 조사결과 총 160.74km로 조사되었음

< 표 2-92 > 보행 장애물 조사

(단위:km)

번호	도로명	노 선 명	구간연장	법적기준 적합연장	법적기준 부적합연장	비고
1	해안로	대3-13	10.96	10.86	0.1	
2	북향로	대2-4,대3-13,중2-3	4.46	4.43	0.03	
3	청호로	대3-3, 대1-2	7.60	7.48	0.12	
4	고하대로	대1-6,대1-7	15.04	14.87	0.17	
5	대양로	대1-6	7.2	7.16	0.04	
6	영산로	대1-1,대2-1,대3-1,중2-1	17.02	17.00	0.02	
7	용당로	대2-2,대3-4	8.02	7.82	0.2	
8	양을로	대2-3,대3-8	14.16	14.14	0.02	
9	산정로	대3-7, 대1-5	6.30	6.24	0.06	
10	삼일로	중3-5, 중3-6	4.80	4.65	0.15	
11	남교로	중3-1	1.46	1.43	0.03	
12	수문로	중2-2	2.90	2.89	0.01	
13	삼학로	대1-1,대3-1	7.90	7.89	0.01	
14	백년로	광로3-1호선	7.76	7.71	0.05	
15	하당로	대3-5,중1-25	5.56	5.53	0.03	
16	문화의거리	대3-12	3.86	3.65	0.21	
17	미향로	중1-32,중1-34,대3-16	4.40	4.29	0.11	
18	평화로	대2-7	3.20	3.08	0.12	
19	후광로	광3-2	2.32	2.22	0.10	
20	영산강하구로	대1-3	8.86	8.81	0.05	
21	부흥로	중1-19	2.38	2.22	0.16	
22	신흥로	중1-18	2.24	2.11	0.13	
23	비파로	대2-6	2.42	2.29	0.13	
24	교육로	대3-9	2.42	2.27	0.15	
25	석현로	대2-5,대3-28	2.42	2.12	0.30	
26	옥암로	중1-20	3.48	3.35	0.13	
27	유통로	대3-29	1.60	1.55	0.05	미설치
계			160.74	158.06	2.68	

2.4 관련계획 검토

2.4.1 제4차 국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가.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 「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등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장기 계획 마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유지하도록 정책의 목표,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투자규모 산정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투자 근거 및 기준 마련

2) 계획의 내용적 범위

- 「교통약자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사항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기본 방향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상태 및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 증진계획 추진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국내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비전 및 목표

- 주변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추진



다. 2026년 교통복지 미래상



라. 세부정책과제

1)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주요목표

- (저상버스 도입률) 시내버스 62.0%, 농어촌버스 42.0%, 마을버스 49.0%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법정운영대수의 100% 확대

(1)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의 도입 확대

: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

① 저상버스의 도입 의무화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증진계획('17~'21)에서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를 42.0%로 설정하였으나, '21년 말 기준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은 30.6% 수준 - 기존 도입된 저상버스의 내구 연한이 제3차 계획기간('17~'21년)에 본격적으로 만료 가 시작되어 저상버스의 자연감소분(폐차) 증가 - 마을 및 농어촌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 매우 저조 ※ '21년 마을 및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 마을버스 3.9%, 농어촌버스 1.4%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노선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대체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 - 도로구조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노선은 교통행정기관 승인을 통해 제외 (저상버스 예외 노선 검토 시, 교통약자 당사자 단체의 의견 청취) - '26년까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 62.0% 달성 추진 ※ (지역별 목표) (서울) 90%, (광역시) 61%, (도지역) 41% - 농어촌 및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각각 42.0%, 49.0% 달성 추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버스의 대체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관련 법령 정비 (~'22년) • 대상 노선버스의 대체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시행 ('23년~)

②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버스 모델을 개발하여 4개 고속도로 노선 대상 (10대) 시범운영(2019~2021년) 실시 ※ (시범운영 노선)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 시범운영 노선은 타 교통수단(철도) 노선과 중복되어 차량도입 및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률 저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운영 확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정착하는 여객시설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지원 - 전국 고속시외버스 운영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 확대 추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미운영 고속시외버스 노선 현황조사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우선 도입 노선 검토 ('22년) • 지자체/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독려 확대('23년~)



< 그림 2-29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③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의 개발 및 운영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광역화로 광역철도 미제공 지역의 광역버스 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버스는 제한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내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는 일반 저상버스, 중형 저상버스, 2층 저상버스 및 휠탑버스가 운영중에 있음 - 2층 버스 및 휠탑버스를 제외한 일반 및 중형 저상버스는 안전장치 미흡으로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행이 불가 - 2층 버스는 탑승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입은 어려우며, 휠탑버스는 타수단대비 승하차 소요시간 및 공간이 제한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의 안전기준 등을 만족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저상 좌석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26년) • 저상 좌석버스 시범운영 실시 ('26년)



< 그림 2-30 > 국외 도시간 저상 좌석버스 사례(이베코버스 브로셔)

(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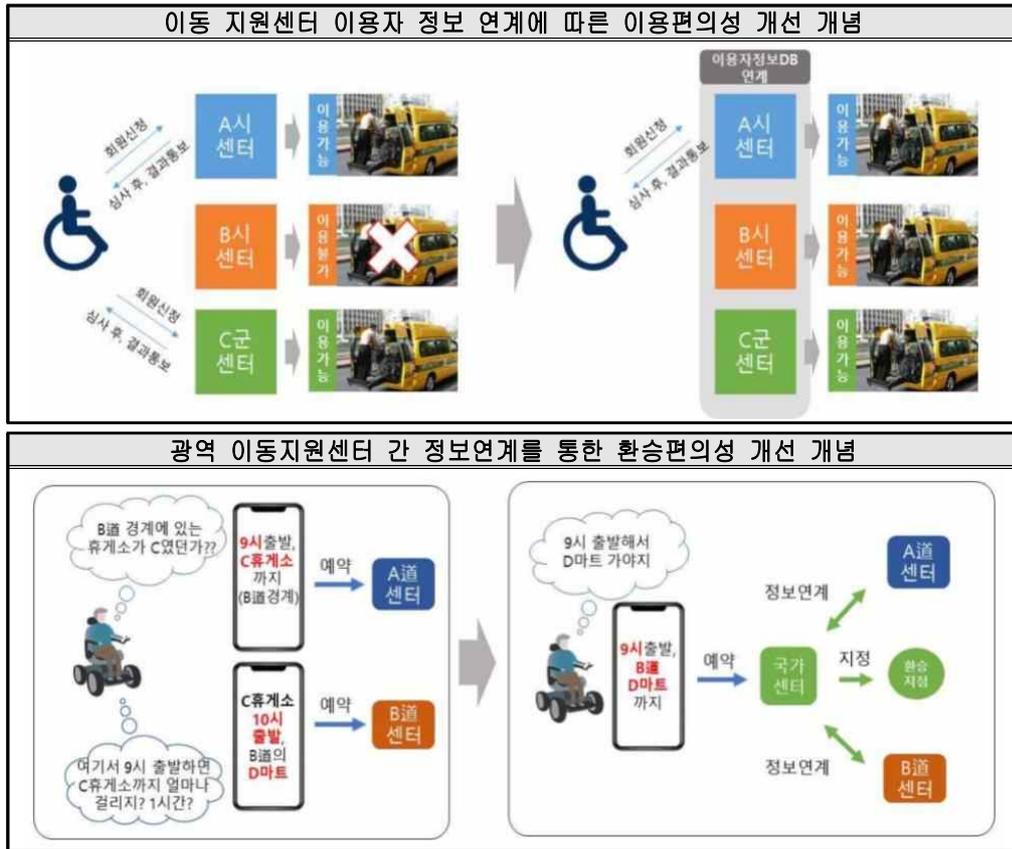
-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확대로 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품질 향상

①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확대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21년 말 기준 보급률은 약 86.0% 수준 ※ 법정대수 조정(1·2급 장애인 200명→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 -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정책 등에 따라 관외 이동 및 24시간 즉시콜 운영, 이용요금 등의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 -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검토 (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100명당 1대) -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지원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지원센터 지원방안 마련 (~‘22년) 및 시행 (‘23년~) • 법정 운영대수 조정(상향)을 위한 법령 정비 (~‘23년)

②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간 정보연계 서비스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가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 시 별도 이용자 등록 필요 - (타 지역에서 이동) 각 지역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만 이용이 가능하여 별도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지역에서의 이용 불가 - (타 지역으로의 이동) 인근 지역과 협약을 맺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필요 ※ 환승을 위해서는 별도 예약 및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센터의 이용대상 등록자(보행상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道)의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지역 간 환승 및 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 - 거주지의 사군에 등록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별도 추가 등록없이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연계 - 타 지역 이동 시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 및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DB 구축 및 환승연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연구 (~‘23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간 환승시범 서비스 (~‘25년) ※ 예약방법 : One-number서비스(문자/전화), 홈페이지 및 어플 링크 제공 등 • 타 교통수단(철도, 시외버스 등)과의 환승서비스 시범 운영 (‘26년~)



< 그림 2-31 > 지역 이동지원센터 지역 및 수단간 정보연계 서비스

③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대체수단 확대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휠체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탑승을 허용하고 있어 예약 및 배차에 불만 발생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시각장애인 등)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대체수단을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 <p>※ '21년말 기준 8개 특별·광역시는 모두 대체수단을 운영중이며, 9개 도지역은 78개(51.0%) 시·군에서 대체수단 운영중</p>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임차 및 바우처택시 등)을 도입 확대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의 운영방법 표준화 ※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정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일반 택시를 대체수단(바우처 택시)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23년)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체수단 도입 확대 검토 ('23년~)

④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수동형 및 전동형 휠체어 이용자 1명(동승자 추가탑승 가능) 만 이용 가능한 차량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 및 운영비용 절감, 탑승 가능한 휠체어 종류의 다양화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범위 확대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 다양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공 - 동일 출발지와 목적지 또는 노선의 일부를 공유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함께 이용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 수동형 및 전동형 휠체어 외에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및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운영방법, 법정 운행대수 산정방안 마련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 수단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검토 (~'24년) • 다인승 및 침대형 휠체어 특별교통수단 운영 검토 ('24년~) • 도시규모 리빙랩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및 원격제어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26년)



< 그림 2-32 >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

⑤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의료·교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소외지역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는 지방 쇠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공공의 적극적 지원 필요 -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대중교통 운행 감소로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운송서비스 제공 필요 - 또한,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운송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서비스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의료·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모델 개발과 통합관리체계 기술 도입 - 지자체별 의료·이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자 교통불편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 해소와 다양한 교통모델 개발 -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ICT, 플랫폼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도입 - 교통약자 DRT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소외지역 의료·교통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현황조사 및 개선 계획 (~'23년) • 교통소외지역 의료·교통복지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연계 (~'24년)

2) 물리적 장애물없는 환경 조성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주요목표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시내버스) 96%, (버스정류장) 66%(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터미널) 73%
 - (보도) 83%(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1)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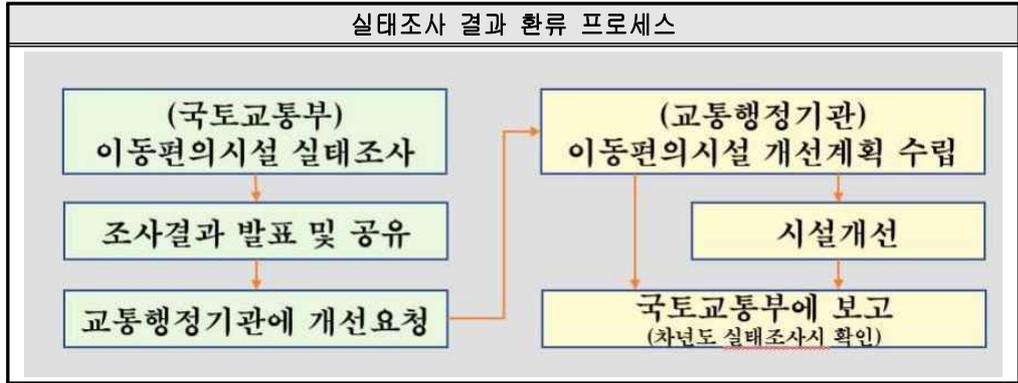
- 개별 대상시설간 연계강화로 교통약자에게 단절없는 이동서비스 제공

①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버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약 90% (일반버스 88.0%, 저상버스 95.8%)로 타 분야(여객시설, 보행환경)에 비해 양호 - 반면, 도로(보도) 및 버스정류장의 구조 및 낮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로 인해 교통약자에게 저상버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21년 기준적합 설치율) 버스정류장 45.4%, 도로(보행환경) 77.6%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한계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편의시설 정비 추진 -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도로의 구조·시설 개선 추진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접근 이동경로의 보행환경 개선 ※ 「보행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정주차 단속 강화를 통한 차량과 보도 간 간격을 해소하고,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정비 추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운행이 부적합한 도로·시설 구조에 대한 개선 ('22년~) • 버스정류장의 보행접근로 및 시설 표준모델 개발 ('24년) 및 보급 ('25년)

②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 중(「교통약자법」 제25조(실태조사)) -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 조사 시, 주요 여객시설 주변에 설치된 정류장·보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어 누락되는 시설이 존재함 - 또한, 교통행정기관에 조사결과를 공유 및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 미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표본수 확대 및 실태조사 결과 환류 프로세스 마련 - 표본조사중인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의 조사를 교통약자 이동특성, 지역 및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확대 - 교통행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차년도 실태조사 시 조치결과 확인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시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 조사 범위 확대 ('22년~) • (교통행정기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조치 결과 제출, 실태조사 시 조치결과 사항 모니터링 ('22년~)



(2)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 웹기반 시스템의 구축·활용으로 교통약자에게 이용편의정보 제공

① 교통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및 대중교통이용 이동경로정보를 일반 보행자와 구분하여 안내 중 -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철도역사의 이동경로정보는 제공중이나 버스 및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여객시설의 경우는 제공하지 않아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정보와 민간지도(카카오맵)를 연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 제공 -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DB 구축 - 민간 지도서비스 사업자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정보 활용도 제고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시설(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 내 이동편의시설 정보의 서비스 제공(‘23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3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4년~) • 여객시설 내 이동경로 안내서비스 제공 및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정보 서비스 제공(‘24년~) • 저상버스 배차정보와 연계한 교통약자 경로서비스 제공(‘26년~)

도시철도역사 내 이동경로 (한국)	교통약자 유형별 보행경로 (일본)	휠체어 보행·대중교통 이동경로 (미국)

② 여객시설별 교통약자 접근성수준 평가 및 제공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 여객시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동편의시설 별 가중치는 고려되지 않아, 이동편의시설이 개선되어도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존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웹기반 여객시설 접근성 수준 평가 및 개선 필요 여객시설 우선순위 제공 - 이동편의시설 현황DB 및 이용자 설문조사 정보 등을 분석하여 웹 기반 개선시급 여객시설 우선순위 제공 -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정보 활용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제공방법론 수립 (~'24년)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정보 제공 ('25년~)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별 시설물의 설치여부에서 벗어나 교통약자 관점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물리적 이동 장벽의 해소

①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시 조사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적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응답형식이 아닌 교통약자와 동행하여 현장점검하는 등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 교통약자 유형을 고려한 각 여객시설의 접근경로, 여객시설 내 이동 및 교통수단 탑승까지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각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및 교통이용 편의서비스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모든 대상시설에 대하여 조사 실시 -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평가지표 개발 ('22년) - 분야별(버스, 철도, 항공 등) 현장조사평가 ('22년~)



②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최적 배차 유도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에서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은 '21년말 기준 30.6% 수준으로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 발생 -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약 19.0%가 저상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그밖의 응답 : 이용하는 노선에 저상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음(26.1%) 장애유형상 보행장애가 없어 시내버스를 타는데 불편함 없음(17.0%)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저상버스를 효율적으로 배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약 8% 추가 도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황 및 차이 분석 - 지역별·요일별·시간대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황 및 차이 분석 - 조사결과의 교통행정기관 공유를 통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배차간격 조절 유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실태분석을 통한 교통약자/비교통약자의 이동특성 차이 분석 ('22년~) 지역·시간대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황 조사 및 결과 배포 ('23년~)

3) 시스템적 장애물없는 환경 조성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주요목표

- 교통행정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 교통수단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

(1)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공공과 민간, 수혜자 그룹간의 상시적 소통체계 마련

① 교통복지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성 및 평가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에서 교통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통수단 사업자, 여객시설 사업자 등 다양하나, 협력체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통복지정책 추진 저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시철도, 보도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정책 시행 일관성 확보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으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광역(시,도)·지역(시,군)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사업자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체계 구축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개선 모범사례 발굴, 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과 지역별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23년) 교통복지지표 개발 및 법제화를 통한 평가 시행 (~'23년)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실행력 제고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증진계획 적기 수립을 통해 국가·지방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증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증진계획을 계획 시작 전년도 상반기에 수립하여 지방 증진계획이 계획연도 이전에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시, 교통복지협의체에서 점검 후 제출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22년~)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고시 ('26년 상반기)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도모

① 이동편의시설 종류 확대 및 기준 정비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교통수단·여객시설별 규모와 특성의 다양화 등을 반영한 이동편의시설 기준의 재정비 필요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 정비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특성·규모를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세분화 등 정비 - 국내외에서 개발·운영중인 교통약자관련 시설 중 이동편의시설로 새롭게 포함 가능한 시설 검토 - 교통약자의 동선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세부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과 상이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 (~'22년) • 「궤도운송법」에 따른 수단 및 시설 중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범위 및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23년) • 교통약자 동선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24년) • 교통수단 세분화 및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22년)



< 그림 2-33 > 일본의 세분화된 버스의 종류별 이동편의시설 기준

②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비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과 BF 인증기준의 상이한 부분 정비 필요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환승시설은 BF인증을 획득해야함에 따라 인증기준 사전 정비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F인증 기준 검토 및 정비를 통해 현장의 혼란 해소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과 BF인증 기준을 비교·검토하고 국제기관과 장애인 등 정책 수혜자를 고려한 BF 인증 기준 정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F인증 기준 정비(~'22년)

4) 심리적 장애물없는 환경 조성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주요목표

- 승무원대상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실적관리체계 마련
-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국민 참여형 인식개선 행사 개최

(1)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서비스 교육의 관리강화를 통한 교육 실효성 강화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을 실시 중 -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교육 시행여부에 대한 실적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 - 승무원 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대상 인식개선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승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실효성있는 교통약자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추진 및 관리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규정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체험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내용에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 포함 검토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23년)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24년) • 교통약자 유형별 표준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24년)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중교통 관련 내용 포함 검토 (‘23년~)

(2) 포용적 교통복지문화 조성

: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차별없는 선진 교통복지문화 정착

① 대국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 - 지역 내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52.4%였으나, 휠체어 이용자 중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10.9%로 큰 차이 - 많은 휠체어 이용자들(27%)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사람들의 시선’ 이라고 응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주민들과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교통약자를 이해하고 함께 돕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동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전 시행 - 교통수단별(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약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자료(영상,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보급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통약자 자원봉사단(항공) 운영 (‘22년~) •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 시행 (‘23년~)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23년~)

2.4.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12, 관계부처 합동

가. 수립배경

-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됨
 -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 총 인구 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 본격화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나. 주요경과

- '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 '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05.9.1)
 -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 적극 추진
- (4차)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
 - 관계부처 과제 제출(5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실무협의('20.9~11월) 실시
 -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실시 및 총리실·BH 통한 관계부처 협의

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1) 기본 관점의 전환

-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
 -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
 -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하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상 설정
- 가족지원 투자와 사회구조적 혁신의 균형적 접근과 실천
 -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과 사회 각 분야의 실천을 통해 생애 주기의 순조롭고 유연한 이행 지원

2)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후 보장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
 -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지향하는 청년층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

*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17.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중 대통령)

-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확립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의 행복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강한 노후의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 지원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자산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
 -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교통 여건 조성 및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통한 고령 친화적 거주 환경 조성

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삶의 기반 강화
 - 학령인구 감소와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교육환경,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 ▶ -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성인들의 대응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인적 역량 제고
-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
 -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차별 없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지나친 수도권 과밀(전체의 50.1%)이 경쟁 심화로 인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 지역통합 모색

라.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



마. 분야별 정책과제

전략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별 핵심과제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일터 조성 및 성차별 피해구제·예방 강화 · 여성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 아동의 안정적 발달 지원 및 아동 보호안전망 강화
	생애 전반 생·재생산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 생애 전반 생식건강 및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전략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별 핵심과제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지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제고 ·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이용 유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교통복지기반 구축 ·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비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별 핵심과제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공공성 강화·격차완화 · 미래사회 대비 교육혁신 · 취창업 지원 등 전문인재로서 성장경로 구축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생애경력개발 · 평생교육·직업훈련 다양화·확대 ·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삶의 여건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지원 ·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유지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퇴직 후 전문성 활용 기회 및 신중년 사회참여 확산
비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별 핵심과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아동양육 지원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노동 포용 사회안전망 · 개인단위 소득보장 및 다양한 노동 보호
	지역상생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공존 지역사회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및 고령친화기업·산업 육성 ·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3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2023~2027년)

가. 개요

1)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중

구분	1차 (' 98~03)	2차 (' 03~07)	3차 (' 08~12)	4차 (' 13~17)	5차 (' 18~22)
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세부 과제	3대분야, 71개 과제	7대분야, 103개 과제	4대분야, 58개 과제	4대분야, 71개 과제	5대 분야, 70개 세부과제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시범사업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주거지원
참여 부처	3개 부처	5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 지난 제5차 종합계획(' 18~' 22)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 정립 필요

2) 수립배경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연구 추진(~'22.11)

- (사전 준비)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제6차 계획 수립 방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등 사전 검토(' 22.2~4)
- (실무추진단) 5차계획 평가 및 6차계획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제 발굴·조율 등 논의를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22.5~11)
- (장애계 과제 제안) 장애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실무추진단 총괄위원회에서 장애계 제안과제 발표 및 논의(9월)

□ 관계부처 등 협의·조율 및 대국민 의견수렴('22.11~'23.1)

- (종합계획 협의·조율) 주요부처 수립연구 참여(5~11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11.29) 논의 등 통해 장애계·관계부처 협의·조율
-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23.1.31)를 통해 장애계·대국민 의견수렴

3) 5차계획 평가 : 주요 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장애등급제 폐지('19.7),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21.8), 장애인권 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21.8) 등 주요 정책과제 대부분 기간 내 달성

- 31년 만에 장애등급제(1~6급) 폐지하여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종합지원조사 단계적 도입 추진(' 19.7)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마련 (' 21.8) 및 시범사업 추진(' 22~24)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및 장애인일자리 지속 확대**
- GDP 대비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 22년 0.72%(추정치)로 ' 12년 0.58% 대비 큰 폭으로 증가(OECD SOCX)

□ (한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개별 장애인 욕구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이용 한계

- ICT 기술 발전 등 사회·기술적 변화로 장애인의 일상의 삶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지속 확대·강화할 필요
- 장애계 요구에 따라 추진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는 진행 중으로, 6차계획에서도 지속 추진 필요
- 장애인 삶의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지표 (의료 이용 등) 개선 필요
- 전반적인 재정 투입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2.14%, ' 22년 추정치)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전체 사회지출 대비 증가폭 완만

4) 정책 여건

□ 전체 등록 장애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1인 가구,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 증가 등 장애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음

- 전체 장애인구는 265만명('21)으로 '15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장애 인구의 고령화, 장애인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함
- 지체장애 등 전통적 다빈도 유형은 감소, 발달장애 비율 증가 추세

□ 소득, 의료, 주거, 고용 등 전통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도 강하게 표출

- 장애인 권리의식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이용자 욕구 기반으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요구 증대
-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수요도 지속 확대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은 감염취약계층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이 확인('20.12. 감염병예방법 개정)

□ 편의시설 설치 확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편의 제공 확대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약 요인은 여전한 수준

- * 교통수단 이용 시 39.8%가 어려움을 느끼며, 주된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52.6%), 전용교통수단 부족
- (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 순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06) 이후 국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은 수동적 보호(Protection)에서 능동적 참여 중심 지원(active support)으로 전환 추세

5)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9대 정책 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원 설치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④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⑧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6) 분야별 핵심 과제

1.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및 주거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낮 활동 등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및 품질 개선 지속 추진 필요
- 장애인 욕구에 맞춰 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지속 추진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 도입 필요
- 법적 근거 마련('22.6)에 따라 24시간 돌봄, 1인 집중 서비스 등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체계 마련 필요('24.6)
- 장애인 의사를 따른 주거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22~'24) 결과 분석을 통해 자립 지원 중장기 로드맵 보완 필요

□ 주요 과제

- (활동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지속 확대(연 8천명 규모) 및 물가인상, 최저임금 등 고려해 서비스단가 인상 추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 등 서비스 다양화 및 장기요양기관을 활동지원 기관으로 추가 지정 하는 등 서비스 선택권 확대 추진('23)
- (개인예산제) 활동지원 급여 중심으로 모의적용 연구('23) 거쳐 시범사업('24~'25), 입법 추진('23~), 시스템 구축('25~'26) 거쳐 본사업 추진('26)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급여 일정액을 공공·민간서비스 구매 및 필요서비스 제공인력(간호, 보행 지도 등) 이용에 활용 가능
- (장애아동)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및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現 만 6세 미만) 상향 검토 추진
-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 연령 상향(6세 → 9세 미만, 1.6만명) 위한 법 개정 검토
-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서비스 이용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23. 960 → '27. 1,440시간/연)

- (최중증 발달장애인) 최중증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24.6)
- 시행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광주광역시, ' 22~) 전국 확대 추진하고, 24시간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서비스 개발 등 추진
- 최중증 1인 집중서비스 확대 및 최중증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복지관 지원 등 통해 최중증 발달 장애인 1:1 낮활동 지원 강화
- 사각지대 발달장애인·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22~)
- (낮 활동)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지원대상 확대(' 23. 2만 → ' 27. 3.2만 명) 및 제공시간 지속 확대 추진(주간활동 日 9시간, 방과후활동 日 4시간 제공)
- - 방과후 1인 집중서비스 도입 등 낮 활동 서비스 고도화하고,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시 일시적(7일)
- 으로 24시간 돌봄 제공하는 긴급돌봄 도입(' 23)
-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22~24) 성과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보완, 본사업 추진(' 25)
- - 희망하는 거주시설의 전환 지원(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 소규모, 의료집중형 전문 기관 등)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지속 지원(수도권 8%, 비수도권 5%), 장애 친화형 주택개량(개조) 도시지역 확대* 추진
- (서비스 기반 고도화) 활동지원 제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및 주간·방과후활동 평가체계 도입, 보수 교육 확대 등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지표 개발 연구(' 23)를 거쳐 고시개정 전문위원회(2기) 구성·운영(' 23)
- 장애 인정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유형 인정기준 개선 연구(' 23~24)를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25~)

2.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17~),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 '18.5~) 등 건강보건관리 추진 중
- 민간인프라가 부족한 어린이 등 장애인 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18~), 재활의료기관 운영('20~, 45개소) 중
-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운동·체육 제도화 필요
- 장애인의 질병·장애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신의료기 술, 보조기 등 기술개발(R&D) 활성화 중요

□ 주요 과제

-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5개년 종합계획 마련
-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재활병원('23. 7개소 → 9개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 ('23. 3개소 → 13개소) 단계적 개원 추진
- 재활운동 논의협의체 운영('24~), 전문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재활운동·체육 활성화 추진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23)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거쳐 본사업 전환('25) 추진
- (장애친화 건강인프라) 공공검진기관을 장애친화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26. 86개 ↑), 구강진료센터('23. 14 → '27. 17개소), 산부인과('23. 10 → '27. 15개소) 지속 확충 추진
- (보조기기) 지원품목 지속 확대('23. 38 → '27. 46개) 및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전동휠체어·스쿠터 등), 보조기기센터 확충(분소 설치) 추진
- 장애인의 건강회복 및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등 장애인 최적화 기술 연구 개발(R&D) 추진('23년 예타 추진)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기술개발 ('24~'28), 돌봄로봇·서비스 실증연구('23~'27) 등 추진

3.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및 학생 수는 지속 증가 추세 (특수교육대상자: '18. 90.8천명 → '22. 103.7천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 수(명)	6,212	6,521	6,975	7,566	8,607

- 장애인의 취업률·진학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졸업 후 취업이 단순노무 직종에 치중되어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종 다양성 부족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체계는 미비, 평생교육도 저조한 수준(평생교육 참여율: 장애인 0.9%('20), 전체 성인 30.7%('21))

□ 주요 과제

- (보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완화,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일반-특수교사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23. 120 → '27. 200교), 우수사례 확산, 교원 연수 등 통해 통합교육 내실화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위해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확대 추진
 -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설계
- 지원 등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지원 강화
- (고등교육)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23~),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 확대('23. 10 → '27. 15교), 발달장애인 교육모델 개발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단계적 확대('23. 53 → '27. 100개 목표), 맞춤형 평생교육
-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추가지출 보전 등 위해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중증), 장애수당(경증) 지원→ 물가인상 등 고려, 급여액 인상 등 지원 확대 필요
- 현재 근로하지 않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약 30만명)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신규 직무 수요 증가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고,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품목 경쟁력 강화 필요

□ 주요 과제

- (장애인연금·수당) 물가인상 반영하여 지원단가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적정 지원이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 검토
-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23. 3만 → ' 27. 4만명),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소득 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 지원 추진(' 24)
- - (직업재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수행인력 처우개선 및 현장중심 직업훈련 확대 (' 22. 1.2천 → ' 27. 1.9천명), 종합 발전계획 수립 추진(' 24)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 23. 1% → 2%) 및 이행 독려하고, 생산품목 다양화, 컨설팅 등 통해 판매 활성화 지원
- (고용기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지급 규모 확대, 공공부문 고용의무 미 이행기관 명단 공표기준 강화(' 23. 100%)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독려
- (고용지원) 디지털 훈련센터 단계적 확충(' 23. 6 → ' 27. 17개소 운영)하고,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출퇴근 비용지원 확대 등 근로자 지원

5. 체육·관광등 장애인 일상 속 여가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22. 77개소) 운영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중('22, 8.7천명)
- 장애인 맞춤형 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30.5%, 주 1회 이상)은 비장애인 대비(61.2%) 낮은 수준('22)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22. 112개소), 지역 내 관광자원·편의시설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도시 개발 추진('22~23, 1개소)
- 무장애 관광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관광지역 내 편의시설 연계 및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종사자 장애인식개선 등 개선 필요

□ 주요 과제

- (생활체육)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확대 및 장애인체육 가상 현실체험관 확충 추진 등 생활체육 기반 강화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확대('22. 2400여개 → '27. 7,500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23. 14 → '27. 26개소) 추진 등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 (무장애관광) 장애인 맞춤형 열린관광지 지속 확대('23. 132 → '27. 252개소) 추진 및 旣 조성 시설 모니터링 등 통해 사후 관리·운영 점검 강화
- 주요 관광거점 간 이동지원을 위한 버스·미니밴 도입 등 관광교통환경 개선 및 맞춤형 관광 안내, 보조기기 대여 등 무장애 관광 통합 지원
- 지역 내 관광자원·민간시설 간 연계 및 접근성 제고하여 관광·이동·숙박·쇼핑 등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전국단위 확대 추진
-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맞춤형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연 1천건) 등 통해 무장애 관광산업 활성화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행복나눔여행 지속 지원(연 500명 규모)

6.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디지털 정보접근을 보장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접근성 문제, 코로나 19 유행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는 정체·하락
- 저소득 장애인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여가 향유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중(’ 22. 연 11만원 지원)
-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개선(’ 17. 일반국민 대비 70% → ’ 21. 81.7%),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중(’ 22. 3.4천건)
- 기술발전으로 VOD, OTT, 개인미디어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재방송 등 비실시간 방송은 제공 의무가 없고 발달장애인 콘텐츠 미흡

□ 주요 과제

- (접근성 제고) 1차 실태조사(’ 22) 바탕으로 접근성 가이드북(매뉴얼) 제작(’ 23), 배포·교육(’ 24~’ 27), 2차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26) 추진
- (접근 지원)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위해 연구(’ 23),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 검토하고, 농인·시각장애인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 (장애예술인) 표준창작공간 조성 및 단체지원·육성,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 23. 上), 유통 플랫폼 구축 등 통해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 (정보격차 해소)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지원, 장애인 등 신체·인지능력 개선 위한 ICT 융합 기술개발(R&D) 추진(’ 23~26)
- (미디어 접근) 고시 개정, 인센티브 개선 등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확대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보급 지원 추진
-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등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하고, 미디어 나눔버스(’ 23. 288 → ’ 27. 320회) 등 맞춤형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7.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편의시설 확대 및 재난안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지속 증가 전망(’ 21. 15.5백만 → ’ 26. 16.8백만명), 저상버스·특별교통 수단 등 지속 확대에도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미흡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 22.5)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확대(21.12, 공공 신축 → 공공·민간 신·증축 등)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17~’ 21) 종료 후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원 부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맞춤형 의료·돌봄 지원 필요

□ 주요 과제

- (이동권)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1) 및 도입 지원 확대, 저상좌석버스 표준 모델 개발(R&D, ’ 23~’ 26) 등 이동권 지원 강화
- 이동지원센터 국고지원, 24시간·광역 이동 등 지원 확대
- (편의시설)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23) 및 확대방안 연구(’ 23)를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추가 확대(법령 개정, ’ 24) 추진
 -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 23, 복지로 내 복지지도) 및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방안(홍보, 컨설팅 등) 모색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3)으로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단계적 확대 추진(’ 26.1, 전면 확대)
- (BF 의무인증) 민간시설로 인증 확대 추진(’ 23. 연구 → ’ 24. 시행령 개정),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인증기관 확대(’ 22. 9 → ’ 27. 15개) 등 인증 활성화
- (재난안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대책 추진 검토 및 지자체에서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 독려
 - 국립재활원 내 전담병상 설치(’ 23~24. 28병상), 대응 매뉴얼 고도화(’ 23, 3판), 활동지원 24시간·긴급활동 지속 지원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 강화

8. 장애인 학대예방하고 정신·여성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 장애인학대 사건은 지속 증가* 추세(' 18. 889건 → ' 21. 1,124건)로,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적극 대응 중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삭제(' 23.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정신장애인 위한 복지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출산비용 지원(' 22. 100만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앙1, 지역 17개소) 및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건강보건관리 지원 중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06),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13~22)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정책분야 국제협력 강화 필요

□ 주요 과제

- (권익옹호) 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증원* 추진 등 학대 대응체계 강화하고, 실태조사, 대응매뉴얼 개발 등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 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점검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홍보 확대(' 23~)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서비스 실태·제도분석(' 23.上) 및 정신재활시설 개선, 주거·고용 지원

9. 거버넌스 강화, 전달체계 개편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개선 필요 사항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06) 이후 장애 개념은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 추세
- (의사소통·이동·자기관리), 사회참여제약(고용·학습) 중심으로 포괄적 장애 개념 제시
-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을 위해 장애계·학계·관계부처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00~) 운영 중이나 사무국 부재 등으로 활성화 곤란
- ’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도입되어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파편화 심각
- 장애정책 연구·행정 지원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10~) 운영 중이나, 노인·아동 등 타 분야 대비 기관 조직 및 기능은 다소 부족

□ 주요 과제

- 현행 장애인복지법(제2조) 상 의학적 장애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장애 모델 도입 위한 장애인권리 보장법안 국회 논의 지원(’23~)
- 다만,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개념 및 등록제는 존속
- 장애인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23~)
- 범정부 장애정책 전달체계 점검 연구(’24)를 통해 실태 분석 및 분절적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하고 법·제도 개정 추진(’25~)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장애인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추진(’23~, 국회 법안논의 지원)

7) 기대효과

분야	주요 성과	'23년	➡	'27년	비고
복지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	본사업('2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연구	➡	서비스 시행 ('24.6)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14만명	➡	17만명	연 8천명 규모 ↑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	7.9만명	➡	10만명	연령상향(6→9세) 검토
건강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	➡	61.4%	57.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본사업('25)	3차 시범사업('21.9~)
보육·교육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	➡	9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	53개	➡	100개	32개('22)
경제활동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 빈곤율	39.0%	➡	37.0%	39.6%('20)
	장애인 고용률	50.6%	➡	51.9%	50.3%('22)
체육·관광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생활체육 참여율	28%	➡	34%	26.6%('22)
	열린관광지 조성	132개소	➡	252개소	112개소('22)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예술창작 참여율	1.2%	➡	1.6%	1.1%('20)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0%	➡	83.6%	81.5%('21)
이동편의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성 강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	➡	100%	86.0%('21)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50㎡이상	➡	50㎡이하	
권익증진 정책기반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률	94%	➡	98%	92.8%('21)
	장애 개념 확대	의학적 장애	➡	사회적 장애	

8) 추진체계 및 재정투입계획

□ 추진체계

- (성과 평가) 9대 정책 분야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생활만족도, 고용율, 이동·편의 개선 등) 지표 설정 및 성과평가 실시
- (평가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연도별 주요 정책성과 및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정책 목표 달성도를 평가
- 매년 제6차 종합계획 이행 수준 모니터링 실시(장애인개발원 위탁)
- (소통 환류) 장애인 당사자, 학계·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활성화 및 장애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검토

□ (재정투입 계획) 제6차 종합계획('23~'27)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 수준(잠정치, 국비 기준)

- ※ 전체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 중 제6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 예산만 포함

< 표 2-93 > 재정투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23	2024~2027
복지·서비스	176.905	24.431	152.475
건강	3.306	757	2.549
보육·교육	1.713	249	1.462
경제활동	108.514	19.942	88.573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3.170	479	2.692
체육·관광	7.234	1.323	5.912
이동·편의·안전	11.225	2.235	8.990
권익증진	726	104	621
계	312.793	49.519	263.274

* 연차별 투입계획(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장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평가

3.1 평가개요 및 3차 계획 검토

3.1.1 평가개요

- 기존 3차 계획연도는 2017~2021년이며 해당 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에 수립되었음
- 본 과업에서는 3차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항목별 성과평가를 시행하였음
- 다만 성과평가 시 정량적 평가 요소와 지침규정과 다른 내용은 제외하고 본 계획에서 조사 가능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였음
- 다음은 평가항목 선정개요임

< 표 3-1 > 평가항목 선정개요

구 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정책 목표	비전 검토	정책 비전	제외
	항목 별 목표	수량화 목표	예측/도달
교통수요	교통약자수요	장애인	예측/도달율
		고령자	예측/도달율
		임산부 및 어린이 등	예측/도달율
교통약자 시설	시내버스	안내, 문자, 행선지	예측/도달율
		기타 약자 시설	예측/도달율
	여객시설	시외·고속버스, 철도역	예측/도달율
		시설 도달율	예측/도달율
		편의시설 조사	금번 조사치
	저상버스 운행	운행횟수(법정)	예측/도달율
	특별교통수단	운행횟수(법정)	예측/도달율
기타 시설	음향 신호기 등	예측/도달율	
보행우선구역	우선 구역 개소	지정 여부	예측/도달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예측/도달율
	노인/장애인	지정 여부	예측/도달율
교육과 홍보	홍보 및 교육	정책 내용	

3.1.2 기존 3차 사업계획 검토

• 다음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규모 현황임

< 표 3-2 > 사업규모 현황(2018~2022년)

구 분	주 요 지 표	단위	2017년 (현황)	2022년 (누적)	3차 사업규모
도시 기반시설	• 2m 이상 보도폭원확보(정비수)	개소수	-	50	100
	• 포장상태개선(연간)	건	242	1,250	2,250
	•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 운영	개소	-	5	8
	• 점자블럭 설치누계(횡단보도, 종방향)	m	-	200	600
	• 블라드 위규시설 정비 및 개선	개소	-	500	1,000
	• 음향신호기 설치(추가설치)	조	299	379	479
	•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추가설치)	조	413	453	503
	• 횡단보행시간 연장 사업추진	개소	-	1식	1식
	• 무장애 버스승강장 설치	개소	1	30	50
	• BIS (BIT설치)	개소	120	240	300
	• 가로등 정비 및 보수	등수	-	750	750
	• 투광기설치 설치 사업		138	163	182
	• 3D횡단보도설치	개소	-	12	24
• 육교철거 횡단보도 복원화 사업	개소	(11개소 철거)	4	5	
교통수단	• 저상버스도입	대	23	45	54 (2024년)
	• 저상버스 운행노선	노선	4	22	25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축	개소	0	9	15
	• 특별교통수단(12급 200인 1대 복지)	대	14	14	14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	1개소 (22명)	1개소 (22명)	1개소 (22명)
기 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비(누적)	개소	6개소	34개소	45개소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추가 지정(누계)	개소	-	10	30

-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사업비 규모 현황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267.1억원으로 추정됨

< 표 3-3 > 주요 사업비 규모(2018~2022년)

구 분	주 요 지 표	단위	추가 사업규모	사업비 (억)	비고
도시 기반시설	• 2m이상 보도폭원확보(정비수)	개소수	50	25.0	
	• 포장상태개선(연간)	건	1,250	52.5	
	•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 운영	개소	5	40.0	국비50%
	• 점자블럭 설치누계(횡단보도, 종방향)	m	200	7.5	
	• 블라드 위규시설 정비 및 개선	개소	500	1.7	
	• 음향신호기 설치(추가설치)	조	379	3.0	
	•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추가설치)	조	453	2.0	
	• 횡단보행시간 연장 사업추진	개소	1식	비예산	
	• 무장애 버스승강장 설치	개소	30	30.0	
	• BIS (BIT설치)	개소	240	10.0	
	• 가로등 정비 및 보수	등수	750	20.0	
	• 투광기설치 설치 사업	개소	163	2.0	
	• 3D횡단보도설치	개소	12	5.3	
	• 육교철거 횡단보도 복원화 사업	개소	4	5.2	
교통수단	• 저상버스도입(버스대수32%목표)	대	45	36.0	국비지원
	• 저상버스 운행노선	노선	22	비예산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축	개소	9	18.0	
	• 특별교통수단(1, 2급 200인 1대 확보)	대	14	0.5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	1개소 (22명)	비예산	
기 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비(누적)	개소	34개소	3.8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추가 지정(누계)	개소	10	4.6	
합 계		-	-	267.1	

3.2 제3차 계획 평가

3.2.1 세부추진성과 평가

가. 저상버스

- 저상버스는 2021년 현재 36대로 총 운영대수 161대의 확보의무대수 54대 대비 66.67%로임
- 이는 당초 계획에서 목표로 한 45대에 비해 9대 부족하며 도달율은 80.00%임

< 표 3-4 > 저상버스 도입현황

구 분	총 운영대수	확보의무대수	운영 대수	도입율	3차 계획 평가		
					2022 목표	2022 대수	도달율
저상버스	161대	54대	36대	66.67%	45대	36대	80.00%

- 저상버스 운행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2022년 도달 목표 대비 운행율은 22.7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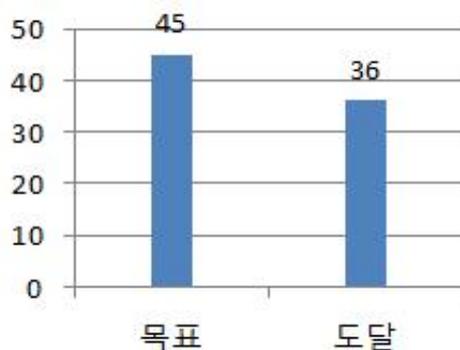
< 표 3-5 > 저상버스 운행 노선

구분	2017년 운행노선	2022년 도달 목표	2022년 운행노선	도달율(%)
저상버스운행노선	4개 노선	22개 노선 (전노선)	5개 노선	2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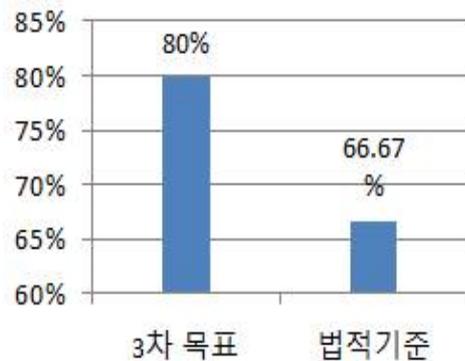
- 전국 저상버스 노선 운행율 비교 시 목포시는 25.0%로 타지역보다 높은 운행 비율로 나타남

< 표 3-6 > 저상버스 노선 운행율 비교

구분	전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노선운행율	18.5%	25.0%	14.8%	7.3%	3.4%	21.4%



< 그림 3-1 > 저상버스도입 평가



< 그림 3-2 > 도입율비교

나.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은 2022년 목표 14대 대비 19대를 운행 중으로 도달율은 135.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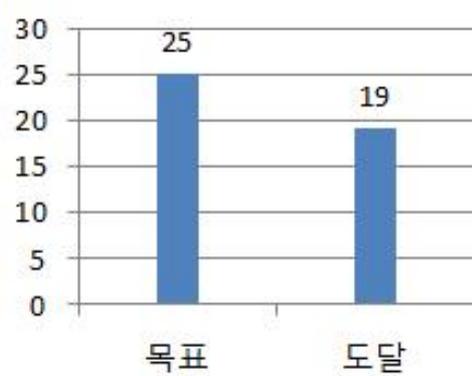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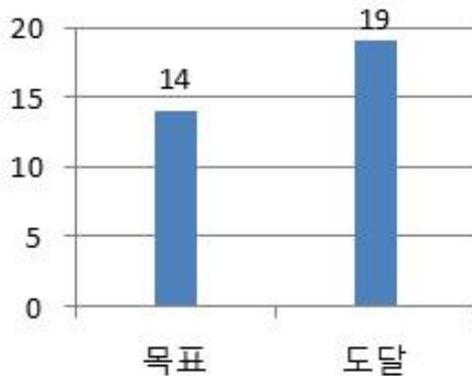
< 표 3-7 > 특별교통수단 도달율

구분	2017년 운행대수	2022년 목표	2022년 도달	도달율(%)
특별교통수단	14대	14대	19대	135.7%

- 관련법 개정으로 보행 중증 장애인 150명 당 1대 기준 변경됨에 따라 해당 기준 적용시 도달율은 76%이며 현재 6대가 부족함

< 표 3-8 >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구분	보행중증장애인 수	도입목표 (법정대수)	운영대수	법정도달율
특별교통수단	3,733명	25대	19대	76%
비고	2022년말	150인당 1대		



< 그림 3-3 >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 그림 3-4 > 이용자수 기준 평가

- 2023년 기준 목표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가 19대, 임차택시가 4대, 바우처택시가 12대임

< 표 3-9 > 목포시 특별교통수단 형식 및 운영현황

구분	특장차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비고
전남 계	180	11	223(235)	
목포시	19	4	(12)	2023년 현황

다. 이동지원센터

- 이동지원센터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22명으로 조사됨

< 표 3-10 > 목포시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구 분	운영형식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인력	비 고
이동지원센터	위탁	콜센터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	22명	

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2년 전체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확인결과 법령 정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 보강 중임
- 3차 계획은 34개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표 3-11 >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도달율

구분	2022년 정비목표	2022년	도입율(%)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4개소	전체 정비 (용역시행)	100.0%	기존대비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초 96개소에서 통폐합 58개소(폐지 및 통합 신설 포함)

< 표 3-12 >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내용

구분	정비			비고
	당초	조정	최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96개소	-38개소	58개소	

마. 노인 보호구역 정비

- 노인보호구역은 2017년 당시 0개소에서 1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5개소가 지정되어 도달율은 50%임

< 표 3-13 >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도달율

구분	2017년 지정수	2022년 목표지정수	2022년 지정수	도달율(%)
노인보호구역 정비	0개소	10개소	5개소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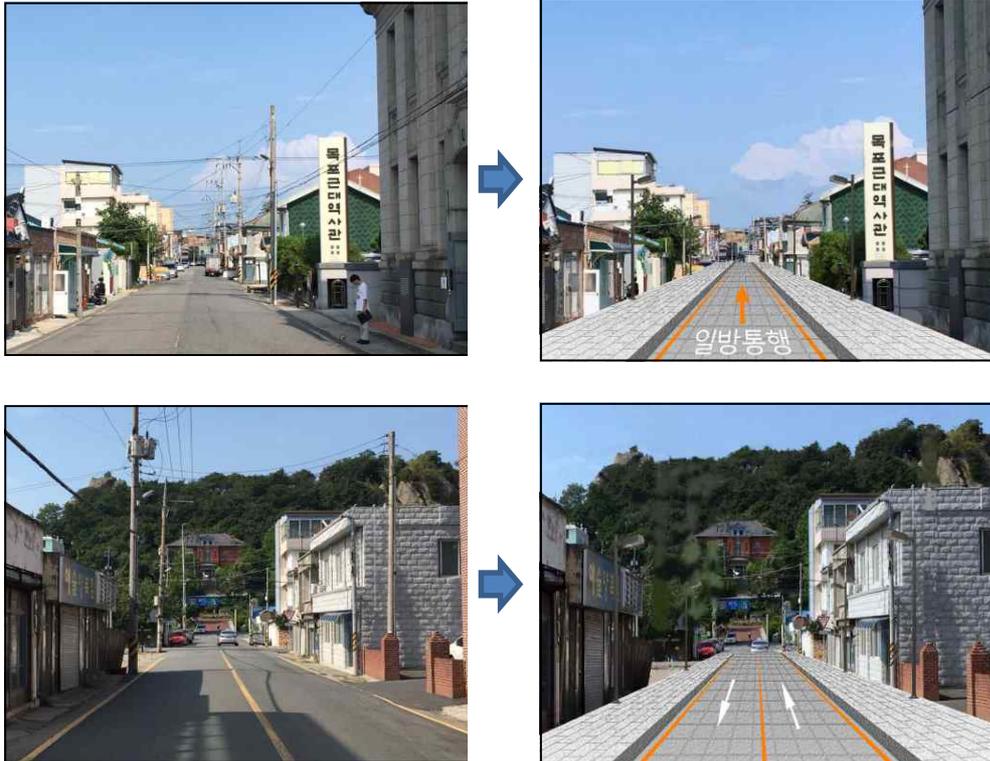
바.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 보행환경 개선지구는 2022년 지정하고 1개소는 사업추진

< 표 3-14 >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

구분	2022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목표	2022년 사업시행	사업시행율	비고
사업시행	5개소	1개소	25%	
지구지정	1식	1식	100%	

- 목포시 보도정비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 점자블럭추진 사업은 매년 추진이 이루어지는 중임
- 위규블라드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도 교체 사업 시행시 이루어짐
-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은 경찰서에서 개선 중
- 가로등 정비 사업 역시 매년 시행 중



< 그림 3-5 > 보행환경 개선 사례

사.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

- 목포시의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는 2022년 379개소 목표대수이나 현재 30.4개 설치되어 있음(확인중)

< 표 3-15 >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음향신호기	299대	379대(+80)	304대(+5)	6.25%

아. 잔여시간 표시기

- 목포시의 2017년 잔여시간 표시기는 총 413개였으며, 2022년 목표대수 453대이며 2022년 도달대수는 850대로 도달율은 992.50%임

< 표 3-16 >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현황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잔여시간 표시기	413대	453대(+40)	850대(+437)	992.50%

자. 투광기 설치

- 목포시의 2017년 투광기는 총 138개였으며, 2022년 목표대수 163대이며 2022년 도달대수는 455대로 도달율은 1,268.0%임

< 표 3-17 > 투광기 설치현황

구분	2017년	2022년 목표	2022년 도달	도달율
투광기 설치사업	138개소	163개소(+25)	455개소(+317)	1,268.0%

차. 육교 철거 사업

- 목포시의 육교철거 사업은 고령화 및 교통약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3차 기본계획에 설치로 제시됨)
- 육교 철거 사업은 최종 철거목표 15개소였으나 그대로 유지 중임

< 표 3-18 > 목포시 육교 철거현황

구분	2017년 철거수	2022년 누적 철거수	2022년 실 철거수누적	도달율
육교 철거 사업	11개소	15개소(+5)	11개소(+0)	0.0%

카. 3D 횡단보도 설치

- 목포시 3D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2022년까지 12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실요성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음

< 표 3-19 > 목포시 육교 철거현황

구분	2017년	2022년 목표	2022년 설치	도달율
3D 횡단보도	0개소	12개소	0개소	0.0%

타. BIS 구축사업

- BIS(BIT) 구축사업은 2017년 120개소이었으며, 2022년 목표대수는 240개소이나 도달대수는 205개소로 도달율은 70.83%임

< 표 3-20 > BIT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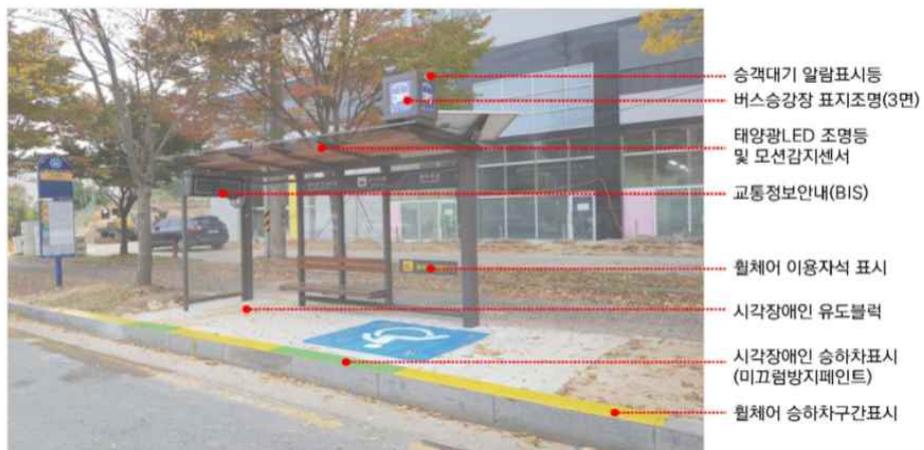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BIT (개소)	120개소	240개소	205개소	70.83%

파. 무장애 정류장

- 무장애정류장 설치 사업은 2022년 목표개소 30개소였으나 별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음

< 표 3-21 > 무장애 정류장 설치현황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무장애정류장	1개소	30개소	없음	0.0%



< 그림 3-6 > 무장애 정류장 예시

3.2.2 종합평가

- 제3차 종합평가 결과 상시 시행 정비 포함시 62.26%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표 3-22 > 제3차 종합평가표

구분	사업내용	2022년 목표	2022년 도달	도달율(%)	전체(%)
교통수단 정비	저상버스도입	45대	36대	80.0	84.61
	저상버스 운행노선 확대	22개 노선	5개 노선	22.73	
	특별교통수단 확대	14대	19대	135.70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	1개소(22명)	1개소(22명)	100.0	
보호구역 정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34개소	34개소	100.0	75.00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10개소	5개소	50.08	
보행환경 정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5개소	1개소	20.00	(66.02) (100초과 100%로 봄)
	보도정비(포장)	1식	1식	100.00	
	점자블럭 확대	200m	1식	100.00	
	위규블라드 정비	500	1식	100.00	
	음향신호기	379	304	6.25	
	잔여시간	453	850	992.50	
	횡단보도 신호 조정	1식	1식	100.0	
	가로등 정비 보수	1식	1식	100.0	
	투광기 설치 사업	163	455	(1,250)	
	육교철거 사업	+4개소	0	0.0	
	3D횡단보도	12개소	0	0.0	
버스정류장	BIT	240	205	70.83	35.42
	무장애정류장	30개소	0	0.0	
전체	4개분야				62.26

제4장 장래 전망 및 계획의 목표

4.1 사회·경제여건 전망

4.1.1 사회적 여건 변화 전망

가. 전국 인구감소 및 고령자 증가

-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30년 52,160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0년 51,091천명 수준에 이를 전망되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성장률 둔화 예상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6년 50,801천명에서 2040년 16,501천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되어 지속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39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0년 28,873천명 수준에 이를 전망

< 표 4-1 > 전국 인구변화 전망

구 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전체 인구(천명)	5,184	5,120	5,019	4,736	4,262	3,766	
인구성장률(%)	0.14	-0.10	-0.35	-0.80	-1.21	-1.24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천명)	3,738	3,381	2,852	2,419	2,066	1,737
	구성비(%)	72.1	66.0	56.8	51.1	48.5	46.1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인구(천명)	815	1,306	1,724	1,900	1,868	1,747
	구성비(%)	15.7	25.5	34.4	40.1	43.8	46.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

나. 1인 가구 유형으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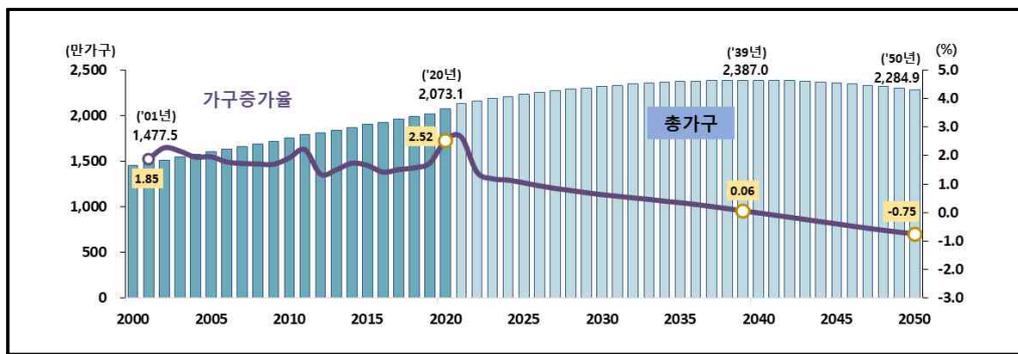
- 가구분화 및 가구 해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가구는 2015년 18,705천 가구에서, 2035년 22,261천 가구로 1.2배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구증가율은 2030년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인구증가율과 달리, 1인가구·부부 가구 등 가구분화 및 가구 해체 진행
-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이후 전 가구의 35% 차지

- 2035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보다 많아질 전망

< 표 4-2 > 전국 가구구성 변화 전망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총 가구수(천 가구)	2,073.1	2,230.9	2,318.0	2,386.6	2,284.9	
증가율(%)	2.52	1.03	0.62	-0.02	-0.75	
1인 가구	가구수(천 가구)	647.7	765.3	825.5	905.5	905.4
	구성비(%)	31.2	34.3	35.6	37.9	39.6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20~2050」.



< 그림 4-1 >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 표 4-3 > 2035년 전국 가구유형별 가구구성비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서울	1인가구	부부+자녀	부부	한부모+자녀	기타
부산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대구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인천	1인가구	부부+자녀	부부	한부모+자녀	기타
광주	1인가구	부부+자녀	부부	한부모+자녀	기타
대전	1인가구	부부+자녀	부부	한부모+자녀	기타
울산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경기	1인가구	부부+자녀	부부	한부모+자녀	기타
강원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충북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충남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기타	한부모+자녀
전북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전남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경북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경남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제주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기타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 2010~2035」, 2012.

다. 新교통서비스 등장

- 대표적인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인 카셰어링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Zipcar, Car2go, Autolib와 같은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린카, 쏘카, 씨티카 등이 서비스되고 있음
-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위치 기반 서비스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예약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
-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개인의 위치에 기반한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버택시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앱기반 택시 콜 서비스가 대표적인 O2O 교통서비스에 해당
- 2011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출퇴근정기이용권 버스로 제도화된 e버스도 일종의 O2O 교통서비스임
- 해외에서 P2P형 카셰어링 서비스와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유경제형 O2O 교통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와 제34조(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임
 - ▶ 사용하지 않는 자가용 승용차를 차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서비스
 - ▶ 우버블랙 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위배
 - ▶ 렌터카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고급 렌터카로 운송서비스 제공
- 개인차량 운영(우버)등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배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로 운송서비스 제공

[참고]

- e버스[인천사례]
 - ▶ e버스란 수요대응 맞춤형 버스로 사전예약제 및 SNS기반 이용 버스임
 - ▶ 차량은 우등 전세 차량과 같은 버스를 이용 e버스 정기 이용권을 사전 구입 탑승(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다운 회원가입 후)
 - ▶ 수요자 요구에 의해 운행되고 현장 이용권 미구입시 요금 차등부과

라. 교통사고 불안감 가중

-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추세
 - ▶ 교통사고 사망자수 : (2017) 147명 → (2018) 115명 → (2019) 90명 → (2020) 68명 → (2021) 53명
- 반면 2021년 노선버스 사고 발생건수가 5,116건으로 지속 감소추세
- 또한 노선버스 사고 발생건수의 감소에 따라 부상자수도 꾸준히 감소추세임

< 표 4-4 > 노선버스 사고 추세 (단위 : 건, 인)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
발생건수	6,796	6,904	7,500	5,518	5,116	7.36
사망자수	147	115	90	68	63	23.59
부상자수	10,623	10,577	11,354	7,816	7,041	10.83
중상자수	2,921	2,699	2,721	1,937	1,725	14.07
경상자수	6,935	7,115	7,754	5,405	4,897	9.09
부상신고자수	767	763	879	474	419	16.32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가해운전자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2021.

4.1.2 경제적 여건 변화

(1) 소득수준 증가 및 소득양극화 심화

-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

< 표 4-5 > 1인당 GDP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
1인당GDP (달러)	29,242	28,724	29,287	31,605	33,429	31,929	31,727	34,984	2.86%

자료 : 통계청, 「1인당 명목 및 실질 국내총생산」, 2021

- 소득양극화 심화되며 전체인구 지니계수는 변화가 없으나 노인인구 지니계수는 점차 증가하여 고령자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됨

나. 교통부문 가구소비지출액 증가

- 교통부문의 가구 소비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교통관련 지출액은 유가변동, 자가용 보유증가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대중교통과 관련된 철도운송 및 육상운송의 지출액은 감소추세임

다.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증가

- 대도시권의 광역, 고밀화로 교통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교통의 사회적 비용인 교통혼잡비용은 증가함
- 자동차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인 총 교통부문의 비용은 증가

4.1.3 국가 장래지표 전망

가. KTDB의 지역간 여객 OD 변화 전망

- 2025년 이후 총 통행량은 감소함
- 승용차 : 2025년 이후 감소, 버스 : 2020년 이후 감소, 지하철/철도 : 2025년 이후 감소
- 승용차 부담률은 2020년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하나 버스 부담률은 보합 또는 다소 감소하며 지하철/철도 부담률은 2025년까지 증가 후 다소 감소
- 다음은 지역간 장래 수단별 통행량 예측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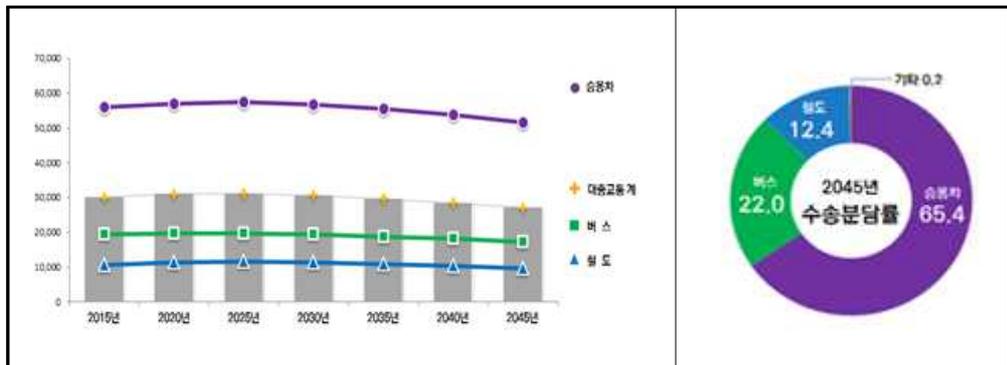
< 표 4-6 > 지역간 장래 수단별 통행량 (단위 : 천 통행/일, %)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연평균 증가율
승용차	57,129	57,439	56,718	55,449	53,714	51,575	-0.41
대중교통	31,070	31,191	30,719	29,760	28,482	27,161	-0.54
버스	19,646	19,624	19,360	18,854	18,170	17,386	-0.49
철도	11,424	11,567	11,359	10,906	10,312	9,775	-0.62
기타	113	122	131	141	152	164	1.50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전국지역간 주수단 OD(252종)(2014-2040)」, 2016

* 철도 = 일반철도+고속철도

**기타 = 항공+해운



< 그림 4-2 > 지역간 장래 수단별 통행량

나. 대중교통 통행자수의 변화

- 통행자 특성(운전면허 보유여부, 승용차 보유 여부, 통행자 구분)에 따라 이용 통행수단이 분류됨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

- 운전면허 보유
- 승용차 보유
- 승용차 이용 가능 경제적 능력(유지비용 감당) 및 환경(주차장 확보 등) 보유

대중교통 이용자

- 비자발적 의존 통행자: 운전면허 보유, 승용차 보유, 승용차 이용 가능 경제적 능력(유지비용 감당) 및 환경(주차장 확보 등) 미보유
- 경제적 의존 통행자: 운전면허 보유, 승용차 미보유
- 절대적 의존 통행자: 운전면허 미보유, 승용차 미보유

< 표 4-7 > 통행자 특성 구분

운전면허 보유여부	승용차 보유 여부	통행자 구분	이용 통행 수단
운전면허 보유	승용차 보유	선택 통행자	자가용 승용차 이용
		비자발적 의존 통행자	
운전면허 미보유	승용차 미보유	경제적 의존 통행자	대중교통 이용
		절대적 의존 통행자	

4.2 목포시 장래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4.2.1 목포시 교통여건 전망 검토

가.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 목포시는 남약신도시와 옥암지구, 임성지구 등 도시공간구조가 동측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교통축의 이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운행체계의 변화요구의 증가가 예상됨

나. 자동차 증가 추세 가속화

-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목포시도 주변의 도시규모 확대와 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증가 추세 가속화가 예상됨
- 이에 따른 수단분담율은 시내버스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전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보이용자 비율로 점점 증가

다. 주변 도로망의 확장

-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로망(목포-광양축, 목포-압해축, 국지도49호선축등)의 확충으로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의 증대가 예상됨
- 이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해지고 도시의 진출입축이 다양화 될 것으로 판단됨

라. 시민의 삶의 질 여가 증대

-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가수요 증가로 인한 여건 변화
- 이로 인해 해당 인프라 확대와 교통약자와 보행 수요의 지속적 증가

4.2.2 사회, 경제지표 전망

가. 상위계획상 지표 전망

- 일반적으로 교통수요 예측과 관련된 도시성장지표는 인구, 가구, 학생수, 고용자수, 건물연상면적, 지역총생산(GDP), 자동차대수 등이며 이들 지표는 회귀모형식이나 시계열분석 등을 통해 예측함
-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인구예측치의 경우 2016년 기준 298,354명으로 연평균증가율을 1.12%로 분석되었으며, 교통정비기본계획의 경우 394,765명으로 연평균증가율을 2.90%로 분석됨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기준년도 인구수 자체가 현실과 차이가 많은 상위계획의 예측치를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적 인구추이가 반영되어 있는 자연증가율(2003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23%)을 적용하여 2016년 목표인구를 예측하였으며, 2016년 이후의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회적 증가인구에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목표연도 인구를 설정

< 표 4-8 > 도시기본계획 인구예측치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244,871	247,700	262,656	271,007	0.68%
자연적 증가인구	215,825	202,658	198,250	196,163	
사회적 증가인구	29,046	45,042	64,406	74,844	

- 2011년 목포시 인구는 244,871인에서 2016년 및 2026년까지 각각 0.23%, 0.90% 증가하여 2016년에 247,700인, 2026년에 271,007인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장래 도시지표에 대하여 장래 목표인구 설정에 따라 목포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치를 재산정하여 본 과업에 적용하였음

< 표 4-9 > 본 과업적용 인구예측치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연평균증가율(%)	
					2011~2016	2016~2026
인구	244,871	247,700	262,656	271,007	0.23	0.90
가구수	98,809	100,283	106,771	110,615	0.30	0.99
고용자수	71,287	72,110	76,464	78,895	0.23	0.90
학생수	63,469	62,964	64,139	64,823	-0.16	0.29
차량보유대수	82,536	93,795	110,540	125,582	2.59	2.96

4.2.3 목포시 교통수요예측

가. 접근 방법

- 현재의 통행패턴과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현황, 교통체계와 교통량 등을 이용하여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하며, 이들 예측모형에 장래의 교통패턴과 교통체계, 그리고 사회·경제지표 및 토지이용을 적용하여 대상지역의 장래 교통량 변화를 전망할 수 있음
- 교통수요 추정과정은 기준연도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를 기본으로 통행발생, 통행배분, 교통수단선택, 노선배정의 추정모형을 적용하여 현재의 통행패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 후 장래의 추정된 토지이용과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수요추정 모형에 대입하여 산출하게 됨
- 본 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분석되어진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목포시」의 수요를 토대로 목표인구 보정에 따른 장래 도시지표와 현장 조사자료를 적용하여 본 계획기간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나. 장래 통행량예측

1) 통행발생

-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목포시」에서 제시한 연도별 목적통행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인구 보정에 따른 장래 도시지표를 적용하여 본 계획기간별 총통행량을 예측하였음
- 본 계획의 장기목표연도인 2016년의 목적통행은 445,315통행, 수단통행은 519,228통행으로 예측되었음

< 표 4-10 > 목포시 총통행량 예측 보정

(단위 : 인, 통행)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2026년
인 구	246,564	247,132	247,700	262,656	271,007
교통인구	233,693	234,230	234,769	248,944	256,859
목적통행	443,274	444,293	445,315	472,202	487,217
수단통행	516,848	518,037	519,228	550,578	568,084

2) 연도별 목적통행량

-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목포시」에서 제시한 연도별 목적통행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본 계획의 연도별 목적통행량을 산정하였음

< 표 4-11 > 연도별 목적통행량 보정 (단위: 통행)

구 분		등교	출근	귀가	업무	기타	계
2016년	통행량	64,545	87,843	178,313	43,553	71,061	445,315
	비율(%)	14.49	19.73	40.04	9.78	15.96	100.00
2021년	통행량	67,100	94,209	188,994	46,544	117,030	472,202
	비율(%)	14.21	19.95	40.02	9.86	15.96	100.00
2026년	통행량	66,644	100,506	193,496	48,494	138,240	484,176
	비율(%)	13.76	20.76	39.96	10.02	15.50	100.00

3) 연도별 수단통행량

- 본 계획의 장기 목표연도인 2016년의 경우 약 519천통행/일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이중 버스의 경우 149천통행/일로 전체 수단통행 중 약 28.7%정도의 비율을 차지 할 것으로 분석되어졌음
- 목포시 장래 연도별 수단통행량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4-12 > 연도별 수단통행량 보정 (단위: 통행)

구 분		버스	승용차	택시	도보	기타	계
2016년	통행량	148,924	262,321	47,399	51,433	9,150	519,228
	비율(%)	28.68	50.52	9.13	9.91	1.76	100.00
2021년	통행량	148,399	288,665	49,827	54,068	9,619	550,578
	비율(%)	26.95	52.43	9.05	9.82	1.75	100.00
2026년	통행량	135,118	317,654	50,616	54,924	9,771	568,084
	비율(%)	23.78	55.92	8.91	9.67	1.72	100.00

4.3 교통약자 전망

4.3.1 교통약자 수요 예측방법 검토

- 교통약자 수요예측은 국가계획 예측지표와 본과업 모형을 이용 예측지표를 이용하여 검토함
- 교통약자는 종류별로 예측하였으며 인구 규모와 비교하였음
- 또한 본 계획을 반영하는 교통약자 수요는 두가지 방법 중 더 많은 예측값을 이용하였음

4.3.2 국가계획 예측치

가. 인구

- 목포시 인구는 통계청 추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22년 222,267명에서 2026년 214,301명으로 매년 -0.9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표 4-13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인구추이			통계청 인구 추계					연평균 증감률
	2017년	2021년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포시	234,379	221,642	-1.39%	222,267	220,030	218,006	216,111	214,301	-0.91%
여수시	286,382	281,977	-0.39%	260,819	259,128	257,521	255,988	254,531	-0.61%
순천시	279,331	283,570	0.38%	266,844	266,365	265,726	265,120	264,544	-0.22%
나주시	110,110	119,367	2.04%	117,921	120,055	121,929	123,593	125,111	1.49%
광양시	155,857	152,026	-0.62%	146,525	146,526	146,085	145,714	145,354	-0.20%
담양군	47,285	47,048	-0.13%	43,084	43,149	43,210	43,293	43,407	0.19%
곡성군	30,131	27,948	-1.86%	26,925	26,765	26,667	26,597	26,570	-0.33%
구례군	27,525	25,423	-1.97%	23,997	24,120	24,250	24,376	24,509	0.53%
고흥군	66,736	63,711	-1.15%	58,636	58,417	58,189	57,981	57,810	-0.35%
보성군	43,755	39,786	-2.35%	36,727	36,495	36,356	36,241	36,156	-0.39%
화순군	64,680	63,397	-0.50%	57,571	57,254	56,955	56,695	56,476	-0.48%
장흥군	40,136	37,038	-1.99%	33,176	33,178	33,400	33,557	33,692	0.39%
강진군	36,868	34,174	-1.88%	30,801	30,573	30,421	30,296	30,199	-0.49%
해남군	73,604	68,456	-1.80%	62,330	61,867	61,515	61,180	60,886	-0.58%
영암군	55,616	57,056	0.64%	52,908	52,317	51,878	51,495	51,174	-0.83%
무안군	82,872	92,690	2.84%	78,915	78,532	78,250	77,970	77,720	-0.38%
함평군	34,328	31,886	-1.83%	29,018	28,958	28,941	28,958	28,988	-0.03%
영광군	54,774	52,862	-0.88%	48,270	48,118	47,923	47,741	47,575	-0.36%
장성군	46,111	44,288	-1.00%	41,479	41,551	41,590	41,667	41,759	0.17%
완도군	52,109	50,775	-0.65%	46,606	46,423	46,254	46,098	45,936	-0.36%
진도군	31,765	31,388	-0.30%	27,861	27,701	27,582	27,479	27,382	-0.43%
신안군	42,070	38,951	-1.91%	33,926	33,931	33,955	33,983	34,016	0.07%
전라남도	1,927,645	1,865,459	-0.82%	1,746,606	1,741,453	1,736,603	1,732,133	1,728,096	-0.27%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나. 장애인

- 2017~2021년 전라남도 장애인 수는 0.7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목포시는 -3.89%로 감소하여 5,654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음
- 다음은 목포시 및 전라남도 장애인 인구 추계 결과임

< 표 4-14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장애인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과거 추계			장애인 수 장래예측					연평균 증감률
	2017년	2021년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포시	13,915	13,822	-0.17%	6,626	6,457	6,289	6,121	5,654	-3.89%
여수시	18,079	17,835	-0.34%	17,834	17,834	17,833	17,833	17,832	-0.03%
순천시	15,757	15,911	0.24%	17,037	17,830	18,659	19,526	20,434	4.65%
나주시	8,590	12,949	10.81%	12,963	12,977	12,991	13,005	13,019	0.11%
광양시	7,567	7,915	1.13%	7,916	7,917	7,918	7,919	7,919	0.01%
담양군	4,075	6,195	11.04%	6,202	6,209	6,216	6,222	6,229	0.11%
곡성군	3,318	3,789	3.37%	3,171	3,152	3,143	3,134	3,131	-0.32%
구례군	2,858	2,884	0.23%	2,723	2,695	2,668	2,641	2,615	-1.01%
고흥군	7,600	5,128	-9.37%	5,123	5,118	5,114	5,109	5,104	-0.09%
보성군	4,556	6,033	7.27%	4,377	4,351	4,325	4,300	4,274	-0.59%
화순군	5,025	4,713	-1.59%	5,254	5,299	5,344	5,389	5,435	0.85%
장흥군	4,055	4,641	3.43%	3,784	3,731	3,679	3,628	3,576	-1.40%
강진군	3,469	3,550	0.58%	3,550	3,550	3,551	3,551	3,551	0.01%
해남군	6,556	4,580	-8.58%	5,977	5,941	5,906	5,870	5,835	-0.60%
영암군	4,705	5,608	4.49%	2,660	2,674	2,689	2,704	2,719	0.55%
무안군	6,378	5,354	-4.28%	6,329	6,321	6,313	6,306	6,298	-0.12%
함평군	3,850	5,276	8.20%	3,690	3,657	3,625	3,592	3,559	-0.90%
영광군	5,259	4,399	-4.37%	5,031	4,986	4,940	4,895	4,850	-0.91%
장성군	4,231	4,393	0.94%	4,091	4,075	4,059	4,043	4,027	-0.39%
완도군	4,648	4,328	-1.77%	4,327	4,326	4,326	4,325	4,324	-0.02%
진도군	3,236	3,151	-0.66%	3,135	3,115	3,095	3,076	3,050	-0.68%
신안군	4,447	4,175	-1.57%	4,110	4,046	3,982	3,920	3,857	-1.58%
전라남도	142,174	146,629	0.77%	135,911	136,262	136,663	137,108	137,293	0.25%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및 각 시군 예측치

다. 고령자

- 목포시 고령자 인구는 2022년 40,451명에서 2026년 48,403명으로 연평균 4.5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전라남도 고령자 인구는 2022년 433,364명에서 2026년 501,471명으로 연평균 3.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표 4-15 > 목포시 및 전라남도 고령자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과거 추계			고령자 수 장래예측					연평균 증감률
	2017년	2021년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포시	33,834	39,063	3.66%	40,451	42,297	44,185	46,314	48,403	4.59%
여수시	48,569	56,362	3.79%	55,329	57,386	59,799	62,598	65,395	4.27%
순천시	39,498	46,062	3.92%	45,747	47,890	50,346	53,427	56,579	5.46%
나주시	24,178	26,740	2.55%	26,231	27,145	28,036	29,248	30,403	3.76%
광양시	17,712	20,994	4.34%	21,239	22,407	23,730	25,362	27,165	6.35%
담양군	13,623	14,662	1.85%	14,137	14,595	15,141	15,793	16,459	3.88%
곡성군	10,035	10,233	0.49%	9,710	9,857	10,072	10,346	10,630	2.29%
구례군	8,447	8,968	1.51%	8,877	9,071	9,361	9,693	10,034	3.11%
고흥군	25,496	26,507	0.98%	25,109	25,446	26,047	26,703	27,417	2.22%
보성군	15,441	15,714	0.44%	15,043	15,220	15,495	15,806	16,117	1.74%
화순군	15,828	17,232	2.15%	17,080	17,687	18,374	19,120	19,910	3.91%
장흥군	12,682	13,022	0.66%	12,297	12,586	12,859	13,128	13,467	2.30%
강진군	11,773	12,131	0.75%	11,532	11,806	12,118	12,426	12,703	2.45%
해남군	21,862	22,562	0.79%	21,525	22,001	22,594	23,261	23,934	2.69%
영암군	13,777	14,648	1.54%	14,184	14,679	15,230	15,821	16,479	3.82%
무안군	16,467	17,986	2.23%	17,284	17,986	18,725	19,590	20,463	4.31%
함평군	11,447	11,867	0.90%	11,149	11,391	11,584	11,897	12,211	2.30%
영광군	15,002	15,641	1.05%	14,923	15,343	15,705	16,153	16,590	2.68%
장성군	12,805	13,536	1.40%	12,767	13,044	13,374	13,893	14,419	3.09%
완도군	15,760	16,452	1.08%	15,418	15,678	16,047	16,512	16,940	2.38%
진도군	10,191	10,405	0.52%	9,858	10,113	10,292	10,646	10,952	2.67%
신안군	14,024	14,411	0.68%	13,474	13,684	14,023	14,421	14,801	2.38%
전라남도	408,451	445,198	2.18%	433,364	447,312	463,137	482,158	501,471	3.72%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라. 영유아 동반자

- 목포시 영유아 동반자 인구는 2022년 7,102명에서 2026년 5,448명으로 연평균 6.4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전라남도 영유아 동반자 인구는 2022년 60,706명에서 2026년 47,321명으로 연평균 6.0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표 4-16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영유아 동반자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과거 추계			영유아 동반자 장래예측					연평균 증감률
	2017년	2021년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포시	9,533	7,571	-5.60%	7,102	6,471	5,927	5,600	5,448	-6.41%
여수시	11,359	10,079	-2.94%	9,535	8,691	8,018	7,540	7,216	-6.73%
순천시	11,233	11,570	0.74%	10,970	10,169	9,459	8,893	8,502	-6.17%
나주시	5,274	5,346	0.34%	5,164	4,806	4,440	4,279	4,175	-5.18%
광양시	7,352	6,680	-2.37%	6,497	6,190	5,935	5,624	5,507	-4.05%
담양군	1,395	1,180	-4.10%	1,103	1,066	997	968	922	-4.38%
곡성군	656	444	-9.30%	409	355	318	302	308	-6.84%
구례군	659	476	-7.81%	441	401	377	371	343	-6.09%
고흥군	1,268	1,305	0.72%	1,191	1,067	980	882	810	-9.19%
보성군	1,201	772	-10.46%	747	646	583	534	508	-9.19%
화순군	1,771	1,600	-2.51%	1,480	1,426	1,348	1,278	1,218	-4.75%
장흥군	1,004	933	-1.82%	840	763	722	675	610	-7.69%
강진군	1,104	778	-8.38%	765	697	629	587	560	-7.50%
해남군	2,716	1,968	-7.74%	1,892	1,702	1,542	1,397	1,344	-8.19%
영암군	2,217	1,693	-6.52%	1,754	1,657	1,567	1,484	1,460	-4.48%
무안군	3,424	4,015	4.06%	3,898	3,726	3,575	3,415	3,291	-4.14%
함평군	874	642	-7.42%	585	547	511	470	457	-5.99%
영광군	1,835	2,322	6.06%	2,238	2,106	1,984	1,843	1,644	-7.42%
장성군	1,712	1,252	-7.52%	1,120	1,028	978	934	937	-4.36%
완도군	1,727	1,544	-2.76%	1,441	1,289	1,169	1,076	994	-8.87%
진도군	922	818	-2.95%	782	716	673	621	587	-6.92%
신안군	961	763	-5.60%	752	672	587	524	480	-10.62%
전라남도	70,197	63,751	-2.38%	60,706	56,191	52,319	49,297	47,321	-6.04%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마. 어린이

- 목포시 어린이 인구는 2022년 13,263명에서 2026년 9,361명으로 연평균 8.3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전라남도 어린이 인구는 2022년 90,254명에서 2026년 70,281명으로 연평균 6.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표 4-17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어린이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과거 추계			어린이 수 장래예측					연평균 증감률
	2017년	2021년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포시	12,844	16,067	5.76%	13,263	12,312	11,282	10,219	9,361	-8.34%
여수시	12,693	16,910	7.43%	14,147	13,485	12,735	11,923	11,017	-6.06%
순천시	13,946	19,578	8.85%	16,313	15,770	15,030	14,262	13,539	-4.55%
나주시	4,935	7,645	11.56%	6,624	6,438	6,174	5,811	5,494	-4.57%
광양시	8,193	10,712	6.93%	9,013	8,570	8,080	7,631	7,158	-5.60%
담양군	1,329	1,838	8.44%	1,514	1,416	1,321	1,212	1,141	-6.83%
곡성군	820	1,004	5.19%	834	790	732	656	585	-8.48%
구례군	852	1,043	5.19%	845	825	757	671	629	-7.11%
고흥군	1,652	2,072	5.83%	1,651	1,575	1,449	1,348	1,281	-6.15%
보성군	1,210	1,428	4.23%	1,118	1,018	919	807	715	-10.57%
화순군	2,391	3,124	6.91%	2,519	2,416	2,256	2,110	1,962	-6.06%
장흥군	1,217	1,605	7.16%	1,320	1,244	1,131	1,003	942	-8.09%
강진군	1,144	1,426	5.66%	1,148	1,042	977	885	807	-8.43%
해남군	2,442	2,989	5.18%	2,489	2,345	2,185	2,020	1,814	-7.60%
영암군	2,181	2,730	5.77%	2,393	2,213	2,055	1,883	1,707	-8.10%
무안군	4,633	7,356	12.25%	6,232	6,181	5,925	5,626	5,324	-3.86%
함평군	952	1,112	3.96%	904	790	722	655	594	-9.97%
영광군	2,004	2,464	5.30%	2,051	1,963	1,848	1,782	1,827	-2.85%
장성군	1,702	2,123	5.68%	1,730	1,616	1,513	1,394	1,277	-7.31%
완도군	1,838	2,397	6.86%	2,032	1,920	1,787	1,674	1,535	-6.77%
진도군	1,043	1,349	6.64%	1,101	1,044	966	913	839	-6.57%
신안군	1,011	1,221	4.83%	1,013	922	883	796	733	-7.77%
전라남도	81,032	108,193	7.49%	90,254	85,895	80,727	75,281	70,281	-6.06%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바. 임산부

- 목포시 임산부 인구는 2022년 906명에서 2026년 884명으로 연평균 0.6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전라남도 임산부 인구는 2022년 8,293명에서 2026년 8,075명으로 연평균 0.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표 4-18 > 목포시 및 전라남도 임산부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大			임산부 수 장래예측					연평균 증감률
	2017년	2021년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포시	1,309	792	-11.80%	906	847	833	859	884	-0.61%
여수시	1,845	1,356	-7.41%	1,258	1,180	1,158	1,186	1,212	-0.93%
순천시	1,718	1,563	-2.34%	1,335	1,265	1,255	1,304	1,352	0.32%
나주시	891	701	-5.82%	728	690	685	712	739	0.38%
광양시	1,186	892	-6.87%	962	917	910	937	957	-0.13%
담양군	271	155	-13.04%	189	175	171	175	179	-1.35%
곡성군	98	44	-18.14%	70	65	63	64	66	-1.46%
구례군	111	87	-5.91%	66	61	60	62	64	-0.77%
고흥군	203	191	-1.51%	133	122	118	119	122	-2.14%
보성군	209	91	-18.77%	107	97	93	95	96	-2.68%
화순군	279	191	-9.04%	195	187	185	191	197	0.26%
장흥군	146	161	2.48%	109	99	96	98	101	-1.89%
강진군	195	102	-14.96%	122	112	109	111	112	-2.12%
해남군	582	295	-15.62%	306	280	269	270	269	-3.17%
영암군	390	228	-12.56%	314	292	284	286	287	-2.22%
무안군	466	458	-0.43%	502	488	488	502	512	0.49%
함평군	141	83	-12.41%	95	88	85	87	88	-1.90%
영광군	333	413	5.53%	312	294	288	294	298	-1.14%
장성군	312	153	-16.32%	195	182	178	185	192	-0.39%
완도군	282	203	-7.89%	186	169	162	163	163	-3.25%
진도군	162	129	-5.54%	105	97	95	96	97	-1.96%
신안군	178	142	-5.49%	98	88	85	86	88	-2.65%
전라남도	11,307	8,430	-7.08%	8,293	7,795	7,670	7,882	8,075	-0.66%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아. 전체 교통약자 예측

- 목포시의 총 교통약자 예측결과 2026년 총 69,750명으로 목포시 인구대비 32.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44.24%로 예측된 것에 비해 11.7% 낮음

< 표 3-1 > 전라남도 교통약자 전체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2026년 인구	2026년 교통약자 수						인구대비 교통약자 비율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약자계	
목포시	214,301	5,654	48,403	5,448	9,361	884	69,750	32.55%
여수시	254,531	17,832	65,395	7,216	11,017	1,212	102,672	40.34%
순천시	264,544	20,434	56,579	8,502	13,539	1,352	100,406	37.95%
나주시	125,111	13,019	30,403	4,175	5,494	739	53,830	43.03%
광양시	145,354	7,919	27,165	5,507	7,158	957	48,706	33.51%
담양군	43,407	6,229	16,459	922	1,141	179	24,930	57.43%
곡성군	26,570	3,131	10,630	308	585	66	14,720	55.40%
구례군	24,509	2,615	10,034	343	629	64	13,685	55.84%
고흥군	57,810	5,104	27,417	810	1,281	122	34,734	60.08%
보성군	36,156	4,274	16,117	508	715	96	21,710	60.05%
화순군	56,476	5,435	19,910	1,218	1,962	197	28,722	50.86%
장흥군	33,692	3,576	13,467	610	942	101	18,696	55.49%
강진군	30,199	3,551	12,703	560	807	112	17,733	58.72%
해남군	60,886	5,835	23,934	1,344	1,814	269	33,196	54.52%
영암군	51,174	2,719	16,479	1,460	1,707	287	22,652	44.26%
무안군	77,720	6,298	20,463	3,291	5,324	512	35,888	46.18%
함평군	28,988	3,559	12,211	457	594	88	16,909	58.33%
영광군	47,575	4,850	16,590	1,644	1,827	298	25,209	52.99%
장성군	41,759	4,027	14,419	937	1,277	192	20,852	49.93%
완도군	45,936	4,324	16,940	994	1,535	163	23,956	52.15%
진도군	27,382	3,050	10,952	587	839	97	15,525	56.70%
신안군	34,016	3,857	14,801	480	733	88	19,959	58.68%
전라남도	1,728,096	137,293	501,471	47,321	70,281	8,075	764,441	44.24%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 연도별 전라남도 교통약자수 추계 예측 결과 모든 시군에서 교통약자는 2026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목포시의 경우는 연평균증가율 0.51%로 증가할것으로 나타남

< 표 4-19 > 목포시 및 전라남도 교통약자 전체 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과거 추계			총 교통약자 수 장래예측					연평균 증감률
	2017년	2021년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포시	222,267	218,006	214,301	68,348	68,384	68,516	69,113	69,750	0.51%
여수시	260,819	257,521	254,531	98,103	98,576	99,543	101,080	102,672	1.14%
순천시	266,844	265,726	264,544	91,402	92,924	94,749	97,412	100,406	2.38%
나주시	117,921	121,929	125,111	51,710	52,056	52,326	53,055	53,830	1.01%
광양시	146,525	146,085	145,354	45,627	46,001	46,573	47,473	48,706	1.65%
담양군	43,084	43,210	43,407	23,145	23,461	23,846	24,370	24,930	1.87%
곡성군	26,925	26,667	26,570	14,194	14,219	14,328	14,502	14,720	0.91%
구례군	23,997	24,250	24,509	12,952	13,053	13,223	13,438	13,685	1.39%
고흥군	58,636	58,189	57,810	33,207	33,328	33,708	34,161	34,734	1.13%
보성군	36,727	36,356	36,156	21,392	21,332	21,415	21,542	21,710	0.37%
화순군	57,571	56,955	56,476	26,528	27,015	27,507	28,088	28,722	2.01%
장흥군	33,176	33,400	33,692	18,350	18,423	18,487	18,532	18,696	0.47%
강진군	30,801	30,421	30,199	17,117	17,207	17,384	17,560	17,733	0.89%
해남군	62,330	61,515	60,886	32,189	32,269	32,496	32,818	33,196	0.77%
영암군	52,908	51,878	51,174	21,305	21,515	21,825	22,178	22,652	1.54%
무안군	78,915	78,250	77,720	34,245	34,702	35,026	35,439	35,888	1.18%
함평군	29,018	28,941	28,988	16,423	16,473	16,527	16,701	16,909	0.73%
영광군	48,270	47,923	47,575	24,555	24,692	24,765	24,967	25,209	0.66%
장성군	41,479	41,590	41,759	19,903	19,945	20,102	20,449	20,852	1.17%
완도군	46,606	46,254	45,936	23,404	23,382	23,491	23,750	23,956	0.58%
진도군	27,861	27,582	27,382	14,981	15,085	15,121	15,352	15,525	0.90%
신안군	33,926	33,955	34,016	19,447	19,412	19,560	19,747	19,959	0.65%
전라남도	1,746,606	1,736,603	1,728,096	728,528	733,455	740,516	751,726	764,441	1.21%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및 각 시군 예측치

4.3.3 모형이용 교통약자 예측

가. 교통약자 수요예측

1) 장애인수 예측 모형 및 예측결과

- 장애인수는 과거추세를 이용한 회귀모형 이용 예측결과 장애인은 -2.46% 감소 예상

< 표 4-20 > 장애인수 예측 모형 및 예측결과

구분	예측모형	예측 결과(명)	
		연도	예측 결과(명)
장애인 수 예측모형 및 예측 결과	$Y = \alpha + \beta X$ $(R=0.99)$ $(R^2=0.98)$	2021년	6,720
		2022년	6,626
		2023년	6,457
		2024년	6,289
		2025년	6,121
		2026년	5,954(목표연도)
		2027년	5,786
		증가율	-2.46%

2) 고령자수 예측 모형 및 예측결과

- 고령자는 노인인구 증가로 모형이용예측 예측결과 2026년 45,773명으로 연평균 3.17%증가 예상

< 표 4-21 > 고령자수 예측 모형 및 예측결과

구분	예측모형	예측 결과	
		연도	예측 결과
고령자 수 예측모형 및 예측 결과	$Y = \alpha + \beta X$ $(R=0.99)$ $(R^2=0.99)$	2021년	39,063
		2022년	40,435
		2023년	41,769
		2024년	43,104
		2025년	44,438
		2026년	45,773(목표연도)
		2027년	47,108
		증가율	3.17%

3) 임신부 및 영유아동반자 예측 모형 및 예측

- 임신부 및 영유아동반자는 목포시에 적용할 모형이 적정치 못해 전국 증가율을 적용 산정하였음
- 다음은 임신부 및 영유아동반자 예측 모형 및 예측표임

< 표 4-22 > 임신부 및 영유아동반자 예측 모형 및 예측

구분	예측모형	년도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예측모형 및 예측결과	적용모형은 전국 임산부 (+1.5%) 및 영유아동반자 (-5.8%)증감율을 적용	2021년	792	7,571
		2022년	804	7,132
		2023년	816	6,718
		2024년	828	6,329
		2025년	841	5,962
		2026년	853	5,616
		2027년	866	5,290
		증가율	+1.5%	-5.80%

4) 어린이수 예측 모형 및 예측 결과

- 어린이수는 -1.48%의 감소 예상

구분	예측모형	예측 결과	
		년도	예측 결과
어린이 수 예측모형 및 예측결과	$Y = \alpha + \beta X$ (R=0.84) (R ² =0.70)	2021년	16,067
		2022년	16,170
		2023년	15,874
		2024년	15,579
		2025년	15,283
		2026년	14,987
		2027년	14,692
		증가율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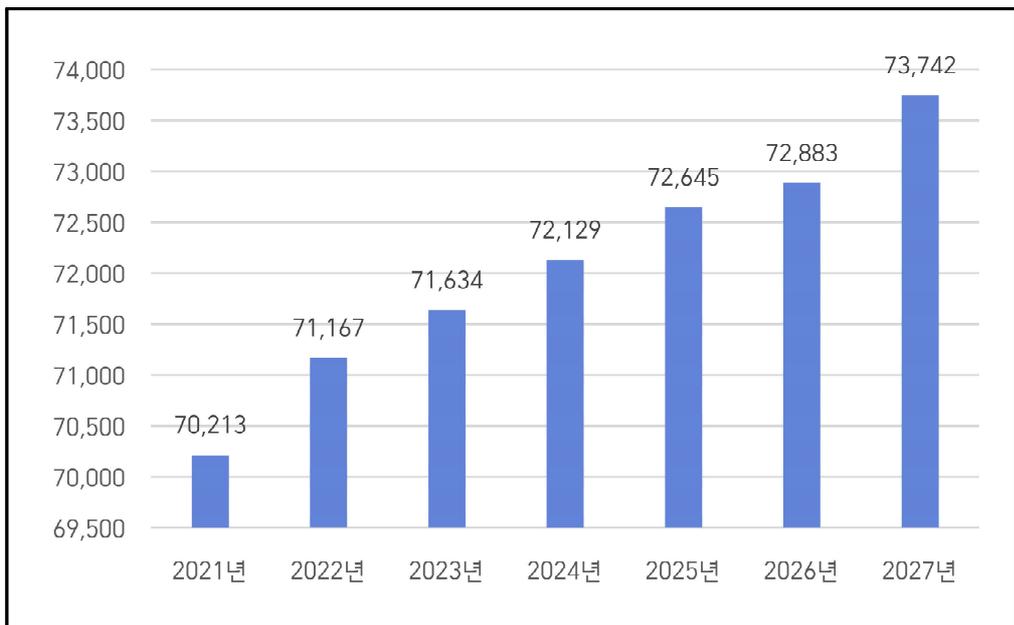
4) 전체 교통약자수 예측

- 교통약자 전망은 단기 예측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세연장을 반영하여 예측하였음
- 다만 변수가 있는 임신부 및 영유아 동반자는 영유아 수를 고려 동일 비율로 적용 산정
- 전체 교통약자수는 2021년 70,213명에서 2027년 73,742명으로 증가, 인구대비 약자 비율은 32.12%에서 33.75%로 증가 예상
- 본 계획은 국가계획 예측치보다 모형이용 예측치가 많아 모형치를 이용하였음

< 표 4-23 > 모형이용 교통약자 전망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연도)	2027년	증가율
총인구	218,589	216,939	217,256	217,573	217,890	218,199	218,508	-0.01%
약자계	70,213	71,167	71,634	72,129	72,645	72,883	73,742	0.82%
장애인	6,720	6,626	6,457	6,289	6,121	5,654	5,786	-2.46%
고령자	39,063	40,435	41,769	43,104	44,438	45,773	47,108	3.17%
임산부	792	804	816	828	841	853	866	1.50%
어린이 (5~6세)	16,067	16,170	15,874	15,579	15,283	14,987	14,692	-1.48%
영유아 및 동반자	7,571	7,132	6,718	6,329	5,962	5,616	5,290	-5.80%



< 그림 4-3 > 교통약자 전망치

4.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정비검토

4.4.1 관련계획 정비목표 검토

가. 제3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검토

1) 추진목표

- 기존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제시되었음

< 표 4-24 >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검토

정책목표	정책방향
1. 보행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 불편 해소 • 보행환경 개선사업 • 제도정비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확충 • 목포시 적정 디자인 마련
3. 교통약자 이동편의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거주지 및 거점지역 정비 • 특별 교통수단 정비 • 법정시설 확보
4. 교통약자시설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기 시설 평가 • 홍보 및 교육 등 시행 • 사후관리 시스템

2) 세부추진계획

- 기존 3차 계획의 4개 정책 목표에 따른 분야별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표 4-25 > 3차 정책 목표별 세부추진계획

중점과제	세부계획
보행환경개선	• 횡단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용방안
	• 보도용 방호울타리(가드펜스, 블라드)의 설치
	• 보행로 개선사업
	• 엘리베이터 육교 설치
교통수단 개선	• 버스차량 개선
	• 저상버스 도입
	• 안내시설 설치(자동음성안내, 전자문자 안내판 등)
	•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 이용정보 제공
여객시설 개선	• 여객터미널, 안내시설 및 계단의 높이, 손잡이 및 점자표시 개선
	• 여객터미널 내 영상통신 중개서비스 구축
	• 여객터미널 내부 시설뿐만 아닌 보행 접근로 등의 개선
	• 버스정류장, 안내시설 및 쉼트 등의 개선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관한 교통정보 제공
이동편의시설 사후관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홍보 및 교육방안
	• 교통약자 DB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나. 제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 검토

1) 4차국가계획 비전 및 목표

정 책 목 표	
·	정책비전 : 모든 사람이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기간, 교통사업자간 여네성 강화 •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 문화 정책 	

2) 4차국가계획 주요목표

- 주요전략으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의 도입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이 있음

< 표 4-26 > 추진전략 및 주요목표

추진전략	주요목표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의 도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도입률) 시내버스 62.2% - (서울) 100%, (광역시) 70%, (도지역) 52% • (마을버스) 49.0%, (농어촌버스) 42.0%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26년까지 전국 100% 달성 및 유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보행환경) 83.0% - (버스정류장) 특별·광역시 74.9%, 도지역 53.0% - (철도) 철도차량 99.0%, 도시·광역철도차량 98.0% - (역사) 철도 90.3%, 도시·광역철도 93.4% - (항공) 항공기 90.0%, 공항여객터미널 92.0% - (해양) 여객선 81.0%, 여객선터미널 92.0%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교통복지협의회 구성 - 전국 169 지방자치단체(시·군·특별자치도) 협의체 구성 • 교통수단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대상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실적관리체계 마련 •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국민 참여형 인식개선 행사 개최

3) 분야별 교통약자 미래성

- 다음은 제4차 국가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6년 미래상(주요 목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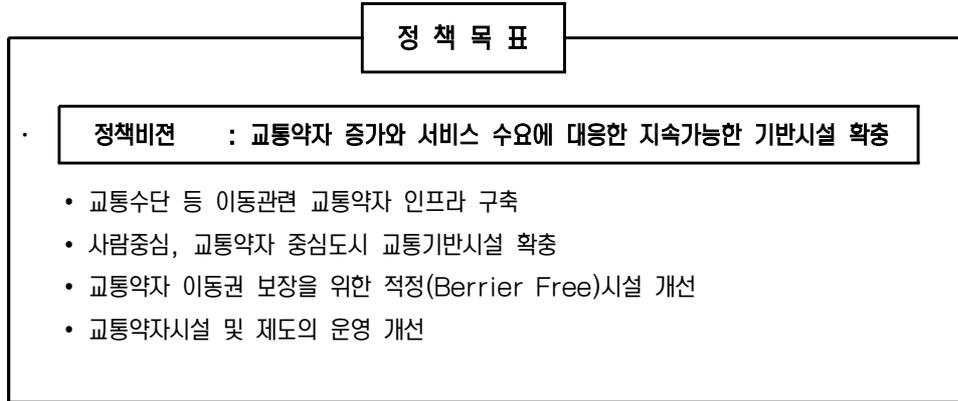
< 표 4-27 > 분야별 2026년 목표와 주요내용(2026년)

구분	2026년 미래상	주요내용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버스 확대	• 62.2%(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	•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신규도입 또는 대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 의무
	• (마을버스)49.0% (농어촌버스) 42.0%	
	•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확충	• 차량개발 및 시범운영 진행 예정
	• 저상 광역버스 도입	•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광역버스 개발
특별교통수단 개선	•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 중증 보행상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는 전국 이동지원센터 어디서나 한번만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 이용가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 지역 이동지원센터 연계	• 버스정류장의 접근,보행환경, 버스정류장의 시설 개선 • 환승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비
	•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보도)특별·광역시 94%, 도지역72.8% -(버스정류장)특별·광역시 74.9%, 도지역 53.0% -(철도)철도차량 99.3%, 도시·광역철도차량 98.0% -(역사)철도 90.3%,도시·광역철도 93.4% -(항공)항공기 90%, 공항여객터미널 92% -(해양)여객선 81%, 여객선터미널 92%	• 각 교통행정기관에 부여되는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여 이동편의시설 개선 독려
교통약자 유형별 길 찾기 서비스	• 실태조사 결과DB의 민간데이터 연계를 통한 길 찾기 서비스 제공	• 여객시설 접근경로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현황자료를 활용한 교통약자 특성(시각장애, 휠체어,유모차 이용 등)별 길 찾기 서비스 제공

4.4.3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

가. 정책목표

- 본 과업에서는 국가계획의 부합성과 상위계획의 추진전략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나. 목표시 개선지표

- 다음은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지표 및 정책개요임

< 표 4-28 > 분야별 세부추진 정책개요

정 책 목 표	세 부 추 진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 등 이동관련 교통약자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획에 부합한 시설 확충 ▶ 교통수단의 개선추진 ▶ 저상버스 도입확충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 교통이용수단 지원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 교통약자 중심도시 교통기반시설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보행자를 위한 기초시설 확보 ▶ 비규격, 위규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추진 ▶ 교통약자중심 운영 체계 개선(신호 및 첨단시설등) ▶ 기타 노인, 장애인수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 보호구역 정비 및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정 시설 개선 (Berrier F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의 지속적 개선 추진 ▶ 교통약자관련 도시기반시설 확충 ▶ 교통약자 참여형 계획수립 및 개선 ▶ 기타 Barrier Free 사업의 단계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시설 및 제도의 운영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시설 모니터링 강화 ▶ 특별교통수단 운영 합리화 ▶ 각종 교통약자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 개선 ▶ 목포시 교통약자 관련 조례 정비

다. 세부 개선지표

• 다음은 본 계획 목표연도 세부 개선목표 지표임

< 표 4-29 > 4차년도 개선지표

구분	주요 지표	단위	2021년	2026년	비고	
인구지표	인구	인	218,589	218,199		
	교통약자	합계	인	70,213	72,883	
		장애인	인	6,720	5,654	
		고령자	인	39,063	45,773	
		임산부	인	792	853	
		어린이	인	16,067	14,987	
	영유아 및 동반자	인	7,571	5,616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도입	대	36	100	대당205	
	특별교통수단(장,쿨)	대	39	46	대당48	
	바우처택시(운영비)	대	12	12	운영비	
	임차택시	대	4	4	운영비	
	소계(4개 사업)	대	91	162		
	이동지원센터 확충	개소	1식	1식	년 1,500	
교통수단정비 및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약자시설 정비(내부시설)	개소	1식	1식		
	시내버스 승강장 약자접근성개선	개소	1식	1식		
	무장애버스 정류장	개소	0	12	대당15	
	버스정류장 현대화(유개화)	개소	361(유개)	401	개당40	
	BIT 설치	개소	205	245	개당8	
	소계(5개 사업)	개소	-	-		
여객시설정비	여객터미널 정비	개소	1식	1식		
보호구역 정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개소	63개소	73개소		
	보호구역 정비(표준화)	개소	63개소	63개소		
	소계(2개 사업)	개소	-	-		
보행환경 정비	보행환경 개선지구	개소	1개소	4개소		
	차량진입구및 보도폭정비	개소	1식	1식		
	보도 재포장	개소	1식	1식(2)		
	육교철교(철거수)	개소	11개소	13개소		
	점자블럭설치(점,선형)	개소	1식	1식	대당0.2	
	위규블라드교체	개소	1식	1식	대당0.4	
	음향신호기 설치	개소	304	344	대당0.2	
	잔여시간 표시기 추가 설치	개소	850	890	대당0.5	
	투광기 설치	개소	455	495	대당3	
	가로등 설치	개소	1식	1식		
소계(9개 사업)	개소	-	-			
	전체계(22개 사업)		91	162		

제5장 분야별 정비방안

5.1 교통수단 개선방안

5.1.1 저상버스 도입 및 시설정비

가. 저상버스 도입 기준

- 저상버스(non-step-bus)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승객에게도 탑승시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임
- 저상버스는 구동계통과 차량바닥 설계 등 차량구조의 변경으로 차량 바닥의 높이가 약 16~19cm 로 승강구의 계단을 없애고, 차량에 전동슬로프를 장착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가능하게 함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임
- 기본방향
 - ▶ 교통약자의 이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편의 제공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 ▶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근거(50%),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저상버스 운행사업자의 인센티브제도 이용
 - ▶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도로의 구조 파악을 통한 투입 가능 노선을 검토함
 - ▶ 지자체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저상버스도입 계획을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 준수
- 저상버스 도입한계
 - ▶ 저상버스는 낮은 차체 및 긴 곡선반경으로 인해 목포시 버스노선으로 운행하는 데에는 일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반영

< 표 5-1 > 저상버스 구조비교

구 분	차량 탑승방법	최저지상고	최소회전반경	장애인탑승방법
일반버스	버스 승강장에서 2단계 오른후 탑승	25.0cm (25.5cm)	8.8cm (8.9cm)	-
준 저상버스 (one step Bus)	버스 승강장에서 1단계 오른후 탑승	25.0cm (22.5cm)	8.9cm (8.9cm)	장애인 슬로프 이용
저상버스 (Non step Bus)	버스 승강장에서 바로 탑승	19.0cm (16.0cm)	10.2cm (8.9cm)	리프트 이용

주 : 준 저상버스 및 저상버스는 대우차량 기준이며, ()는 현대차량임.

-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지침 및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7~2021)에 의거 조사



< 그림 5-1 > 저상버스 운행사례(목포)

- 제4차 국가계획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도입율은 62%임
- 이에 따라 목포시는 2026년까지 추가 64대, 총 100대 확보 의무(법개정에 따라 2023.1. 대폐차 우선)
- 대폐차 차량 고려 2026년까지 78대가 차량연한에 도달, 의무대수 100% 도입가능
- 다만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로 시내버스 운행대수 감소시 동일비율로 감소 조정 예정

< 표 5-2 > 국가계획 버스종류별 도입의무율(2026년)

구분	2022년 운행대수	2026년 목표대수	추가필요대수	비고
저상버스도입	36대	100대	+64대	·시내버스 : 62% ·목포 마을버스 : 49%

- 대폐차 차량 고려 2026년까지 78대가 차량연한에 도달, 의무대수 100% 도입가능

< 표 5-3 > 대폐차 고려 저상버스 도입규모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대폐차대수	2대	11대	16대	26대	23대	+78대
누적대수	36대	47대	63대	89대	112대	-

나. 목포시 대폐차 규모 검토

- 목포시 대폐차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목포시 시내버스 차량 연한은 다음과 같음

< 표 5-4 > 목포시 시내버스 차량 연한

구분		회사	차량번호	차종	계
도입연도	폐차연도				
2011	2020	유진	700A1227	저상	5대
			700A1229		
			700A1247		
			700A1250		
		태원	700A1015	저상	
			700A1016		
			700A1020		
소계					8대
2012	2021	유진	700A1212	일반	7대
			700A1209		
			700A1211	저상	
			700A1251		
			700A1308		
			700A1306	좌석	
			700A1307		
		태원	700A1019	저상	
			700A1022		
			700A1008		
			700A1105	좌석	
			700A1102		
			700A1103		
			700A1106		
소계					14대
2013	2022	유진	700A1252	그린시티	1대
		태원	700A1039	그린시티	1대
		소계			
2014	2023	유진	700A1237	그린시티	8대
			700A1241		
			700A1244		
			700A1217	일반	
			700A1219		
			700A1243		
			700A1218		
		700A1300	좌석		
		태원	700A1001	일반	
			700A1107	좌석	
			700A1118		
소계				11대	

<표 계속>

구분		회사	차량번호	차종	계
도입연도	폐차년도				
2015	2024	유진	700A1200	그린시티	9대
			700A1201		
			700A1202	일반	
			700A1203		
			700A1328	좌석	
			700A1324		
			700A1325		
			700A1326		
			700A1327		
		태원	700A1034	일반	7대
			700A1078		
			700A1119	좌석	
			700A1120		
			700A1123		
			700A1121		
		700A1122			
소계					16대
2016	2025	유진	700A1238	그린시티	18대
			700A1271		
			700A1272		
			700A1222	일반	
			700A1242		
			700A1230		
			700A1220		
			700A1240		
			700A1249		
			700A1221		
			700A1248	저상	
			700A1239		
			700A1270		
			700A1273		
		700A1274	좌석		
		700A1301			
		700A1323			
		700A1302	그린시티	8대	
		700A1012			
		700A1013			
		700A1011			
700A1014					
700A1025					
700A1023					
700A1026	일반				
700A1024	저상				
소계					26대

<표 계속>

구분		회사	차량번호	차종	계
도입연도	폐차연도				
2017	2026	유진	700A1231	그린시티	14대
			700A1232		
			700A1233		
			700A1236		
			700A1213		
			700A1235		
			700A1245		
			700A1215		
			700A1216		
			700A1208		
			700A1214		
			700A1228		
			700A1234		
			700A1246		
2018	2027	태원	700A1075	그린시티	9대
			700A1010		
			700A1071		
			700A1076		
			700A1027		
			700A1031		
			700A1029		
			700A1030		
		700A1077		저상	
		소계			23대
2018	2027	유진	700I1266	그린시티	6대
			700A1262		
			700A1263		
			700A1264		
			700A1665		
			700A1269		
		태원	700A1042	그린시티	16대
			700A1046		
			700A1054		
			700A1049		
			700A1059		
			700A1043		
			700A1047		
			700A1051		
700A1056					
700A1045					
700A1048					
		700A1044	저상		
		700A1057			
		700A1038			
		700A1104	좌석		
		700A1100			
		소계			22대

• 2029년까지 유진은 68대, 태원은 66대가 폐차연도에 도달함

< 표 5-5 > 회사별 폐차연도 도달 차량 (단위: 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유진	5	7	1	8	9	18	14	6	-	-	68
태원	3	7	1	3	7	8	9	16	6	6	66

다. 저상버스 운행노선 확대

- 저상버스는 목포시의 경우 현재 4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어 이용에 제한적임
-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22개 노선의 전체 운행 저상버스 대수를 32%(중형저상버스 5%)까지 확대 추진(30만 미만 해당도시)

< 표 5-6 > 저상버스 운행노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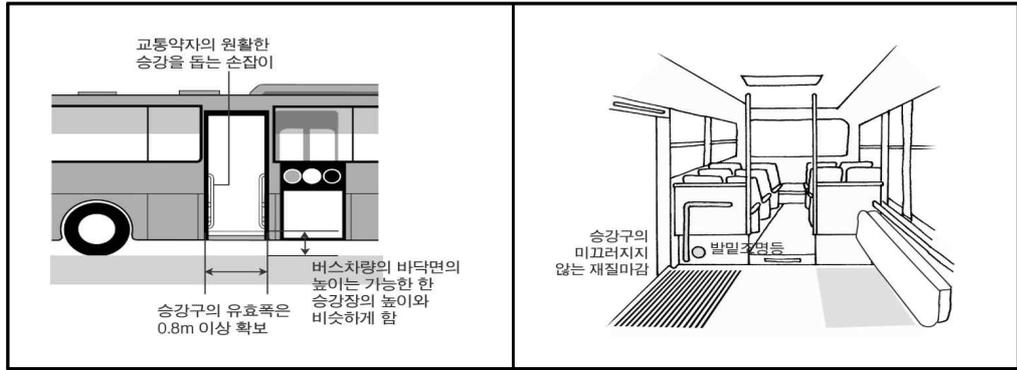
구 분	현재 (2017)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누적노선수 (누계노선)	4	5	10	13	18	22	22
저상버스 (중형저상버스)(대)	23	27	32(2)	36(4)	41(7)	45(8)	2024년까지 : 54대
비 고						목표 : 32% (중형저상버스 5%)	

라. 기타시설 정비기준

-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별도로 필요 없으나 기존의 계단형 시내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해야함
- 기존 버스에 설치되는 주요한 승강설비는 휠체어리프트나 경사판으로 최소 폭원이 80 cm 이상의 출입문에 시설을 설비해야 함
- 본 계획에서 기존 시내버스의 부분 개소를 위한 승강장 설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차량(車齡) 등을 고려할 때 저상버스 도입 등이 오히려 바람직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기존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는 시설 기준만 제시하고 기존 버스에 추가설치는 제외

< 표 5-7 > 휠체어 승강설비

구 분	시 설 기 준
설치폭원	휠체어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승강구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휠체어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0.8미터 이므로, 출입문이 열렸을 때 승강구의 유효폭이 8미터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
바닥면 재질	승강구의 바닥은 탑승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타라매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雨天)시를 고려하여 적절한 마찰력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승강구색상	승강구의 계단코는 계단의 바탕색과 그 색상과 명도치를 달리하여 시력에 문제가 있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승·하차 할 때 계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림 5-2 > 휠체어 승강설비 시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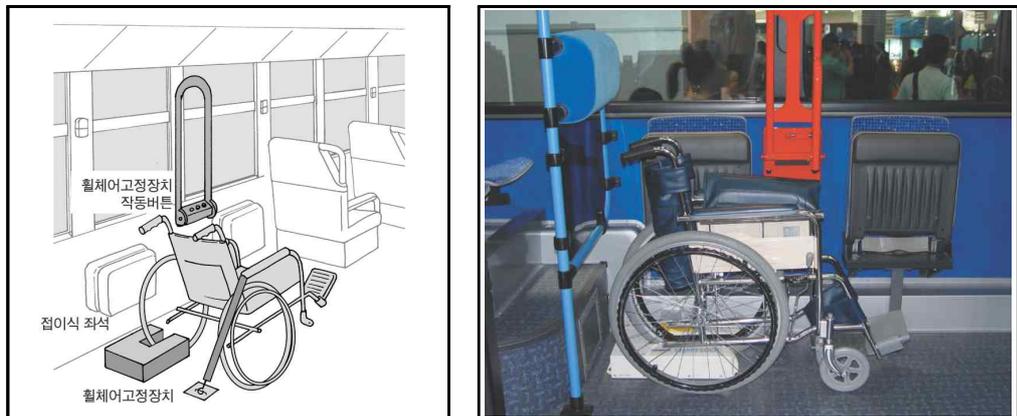
- 다만 최근 구입한 신차나 내구연한이 장기간 남은 시내버스의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승강설비 시설검토(장기안)



< 그림 5-3 > 승강설비 시내버스

▣ 교통약자용 좌석

- 휠체어사용자용 전용공간이 확보된 버스차량의 경우, 유모차나 일반인을 위하여 휠체어사용자용 전용공간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그림 5-4 > 휠체어고정 장치

▣ 휠체어사용자 전용공간 내 접이식 의자와 보호대

- 휠체어사용자가 승차할 수 있는 버스차량은 운행 중에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고정설비를 갖추어야 함



< 그림 5-5 > 휠체어전용공간

▣ 교통약자용 좌석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 분1 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함
-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시인성이 높은 좌석 커버를 씌어야 함
- 정차신호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시켜 수 있는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함



< 그림 5-6 > 교통약자용 좌석 및 안내판 설치의 예

- 다음은 시내버스 수직손잡이 시설기준이다.

< 표 5-8 > 시내버스 수직손잡이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설치규모	• 저상형 · 일반형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
지름크기	•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
기 타	•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 • 입석승객 및 내부 이동자를 위한 보조 손잡이 등 병행설치



< 그림 5-7 > 시내버스 수직손잡이 설치사례

마. 중형저상버스도입

- 중형 저상버스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R&D 사업을 통해 교통소외지역, 지역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중형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
- 전체 시내버스 차량 중 5%를 중형 저상버스로 대체 가능



< 그림 5-8 >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시범차량



< 그림 5-9 > 중형 저상버스 예시

< 표 5-9 > 중형저상버스 기본 사항

구 분	RFP(요구조건)	표준모델 시범차량
차량형식	중형급차량(7~9m)	7.2m
운행가능여건	등판능력 25%이상	충족
	도로폭 5m에서 회전가능	
저상면적	40% 수준	48%
저상고	340mm 확보	330mm
승차정원	30명 이상(좌석 10석 이상)	30명(좌석 12석)
최고속도	80km/h 이상	120km/h
편의 및 안전사항	휠체어 1개소 및 슬로프, 표시장치, 개문발차 방지장치, 행선지 표시기	충족
환경목표	유로6 충족	충족

5.1.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가. 특별교통수단 개념 및 확보기준

1) 특별 교통수단의 개념

-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이외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3. 1.19」 제2조(정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방안

- 기본방향
 - ▶ 교통약자의 이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편의 제공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을 검토함
 - ▶ 각 행정구역별 교통약자 파악을 통한 특별교통수단 도입규모를 결정함
- 세부내용
 -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도입의무화
 - ▶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 각 읍면동별 등록 장애인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 도입대수를 판단함

나. 장애인콜택시 도입

- 미니버스(소형승합자동차)를 개조한 호출버스 운행(서울, 순천시 시행)
 - ▶ 전화를 이용 장애인이 예약도 가능
 - ▶ 노선운행 및 비정규노선 운행방안
 - ▶ 봉고버스 개조(발판, 손잡이)
 - ▶ 램프시설 검토
 - ▶ 이용요금 목포시 지원
- 버스승강장 바닥면 높이 조정
- 바닥이 낮은 버스도입 및 차내램프설치로 장애인 탑승할 수 있는 시설지원

- 운전자가 램프를 조작하여 장애인을 정류장에서 버스로 탑승할 수 있는 시설도입 검토
- 시내버스 앞좌석 장애인용 공간확보(휠체어) 및 지원시설



< 그림 5-10 > 장애인을 위한 개조된 미니버스 < 그림 5-11 > 저상버스 내부(휠체어 공간)

▣ 목포시 도입방안

- 특별교통수단은 2026년까지 100% 도입의무화 됨
- 다음은 목포시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으로써 장기 목표연도인 2026년까지 26대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음(1, 2급 장애인 150명당 1대씩 도입)
- 목포시 2022년 보행장애인은 3,733명이며 수요예측 결과 2026년 3,877명으로 예측됨

< 표 5-10 > 목포시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구분	보행중증장애인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용자예측	3,733명	3,768명	3,804명	3,840명	3,877명	수요 대응
소요대수	25대	25대	25대	26대	26대	1/150명

- 현재 보유대수는 19대로 추가 확보 7대 필요

< 표 5-11 > 목포시 특별교통수단 추가확대 대수

(단위 : 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추가확보	-	1	2	2	2	7
누적대수	19	20	22	24	26	-

- 전남도의 핵심 추진 사업인 바우처 택시는 2026년까지 12대 운행 유지

< 표 5-12 > 바우처 택시 도입목표

구분	2022년	2026년 목표	비고
바우처 택시	0	12	현재 운행대수 유지
임차 택시	4	4	현재 운행대수

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
- 다만 관리 인력은 현재 22명에서 교통약자 수 변화와 교통약자 수단 변화에 따라 증가 검토

< 표 5-13 >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구분	운영 방식	운영 형태	위탁기관	운영 인력
2022년 현재	위탁	콜센터	장애인관련 협회	22명
2026년 계획	위탁	콜센터+추가지원	장애인관련 협회	22명+추가
비고				수요대응 증가 유도

5.1.3 교통약자지원시스템 도입(장기)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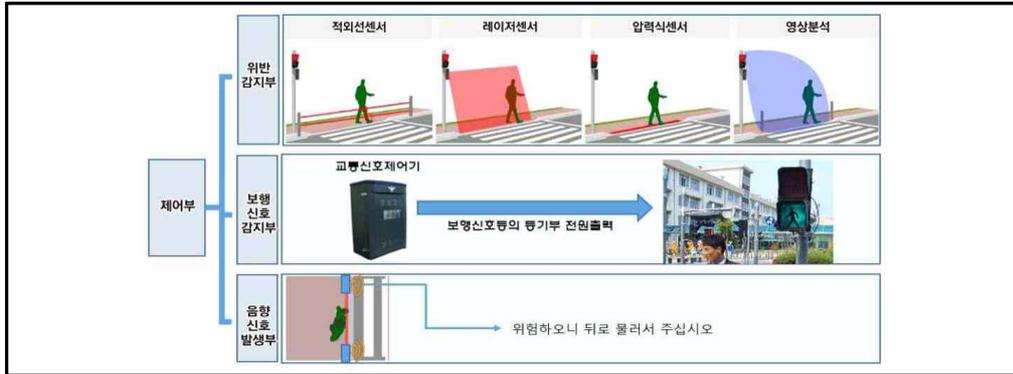
-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은 감속도로노변경고시스템과 보행자 안전대기시스템으로 나누어지며 목포시 ITS기본계획에서 도입계획에 반영되었음

나. 감속도로 구간 노변경고시스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한 횡단신호제어를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보행안전은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임

다. 보행자 안전대기시스템

-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통해 안내음성 표출 및 보행자 위험감지 유도
- 보조장치는 제어부, 위반감지부, 보행신호감지부, 음향신호발생부로 구성되며 위반감지 후 보행자 위치를 판단하여 안내음성을 표출함



< 그림 5-12 > 보행자 안전대기시스템 개념도

라. 도입 필요성

-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보호구역 지정 법규 중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관한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지역에는 안전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음

< 표 5-14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관한 법규

구 분	정의	설치시설	규제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자동차 통행금지 및 제한 • 자동차 주·정차 금지 • 통행속도 30km이하로 제한
노인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 •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 통상 제한속도 30km이하 존(Zone)인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는 일반 도로 통행속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횡단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 사고 잦은 지점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장착하여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의 안전서비스 증진을 도모함

마. 시스템 구축계획

▣ 시스템 선정기준

-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은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함
 -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 ▶ 보행자가 집중되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

▣ 단계별 구축전략

-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의 단계별 구축전략은 다음과 같음

< 표 5-15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단계별 구축전략

구 분	구축전략	수량
중기 (2022~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초등학교 구축 • 노인보호구역 	9개소
장기 (2027~2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초등학교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점 	9개소

▣ 시스템 구축지점

- 시스템 선정기준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구축지점을 선정

< 표 5-16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축지점

구 분	설치지점	선정근거
중기 (2022~2026)	1 목포동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점
	2 서해초등학교	
	3 서부초등학교	
	4 대성초등학교	
	5 연동초등학교	
	6 용호초등학교	
	7 이로초등학교	
	8 대성동 노인복지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사고 우려지점
	9 하당 노인복지회관	
장기 (2027~2032)	10 산정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앞 4차로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사고 위험 내제
	11 삼학초등학교	
	12 옥암초등학교	
	13 영산초등학교	
	14 대연초등학교	
	15 부주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앞 커브 길의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시야확보 어려움

- 교통약자 지원시스템 설치지점은 다음과 같음



< 그림 5-13 > 교통약자 지원시스템 구축지점도

바. 시스템 운영계획

▣ 감속도로 구간 노변경고시스템 운영방안

- 감속도로 구간 노변경고시스템은 설치된 레이더검지기를 통해 주변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행자 안전도모 및 운전자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함

< 표 5-17 > 구성요소별 운영방안

구분	운영방안
횡단보도시간 조정	• 보행자의 대기유무와 횡단상황을 검지한 후 신호제어기와 연동하여 적절한 녹색시간을 제공
안전조명등 작동	• 야간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행자여부를 검지한 후 조명등을 자동으로 작동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
감속도로노변 경고시스템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진입전 설치된 노변경고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현재 주행 속도를 표출함으로써 서행을 유도

▣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 운영방안

-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은 보행신호등 적색신호시 안전차단기 하강으로 어린이 보행자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보행신호 준수를 유도하고 횡단보도 대기선 이탈시 경고음성을 표출하여 안전선 안으로 보행자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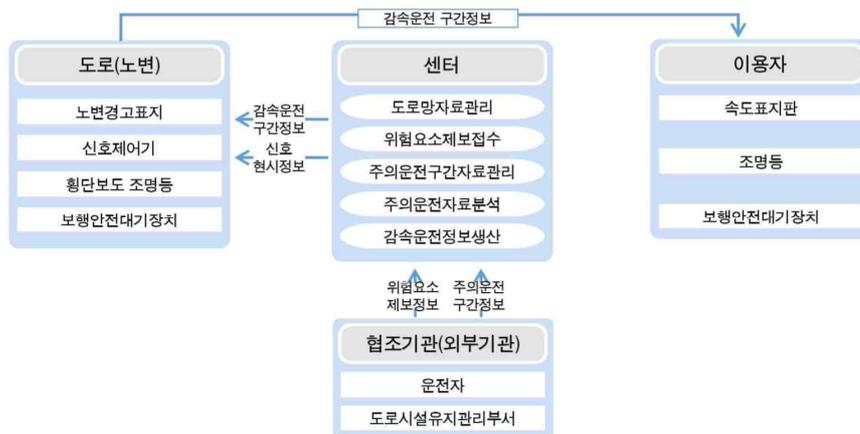
< 표 5-18 > 구성요소별 운영방안

구분	운영방안
안전차단장치	• 횡단보도 신호(보행 신호)와 연계해 안전차단기를 개,폐
음성안내장치	• 횡단보도 대기선 이탈방지를 위한 음성안내를 실시
안전LED블라드	• 횡단보도 신호(교통신호)와 연계해 보행자 횡단시 차량들이 정지선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을 활용한 보행자 제어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안전차단기 상승시 어린이를 2~3초간 지연시켜 횡단하도록 유도하고 운전자 제어는 안전LED 블라드 설치로 주·야간 스쿨존 진입시 차량 서행 및 정지선 준수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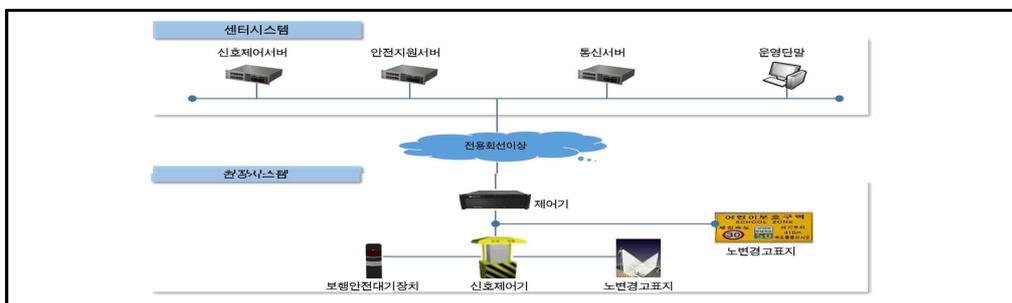
사. 시스템 설계 개념

-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음



< 그림 5-14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성체계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음



< 그림 5-15 > 교통약자지원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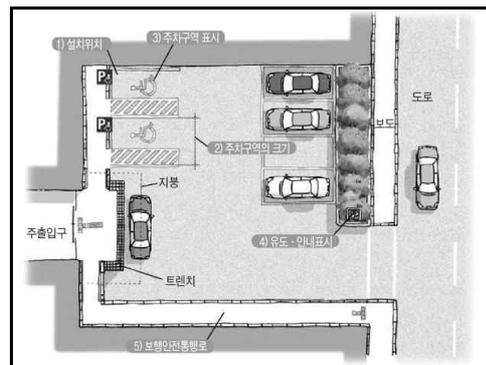
아. 기대효과

-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성 확보
- 사고 잦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통한 사고위험성 감소
-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향후 C-ITS 도입시 차량내 단말기를 통해 위험구간 진입시 안전운전 유도

5.1.4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 개선방안

- 주차장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함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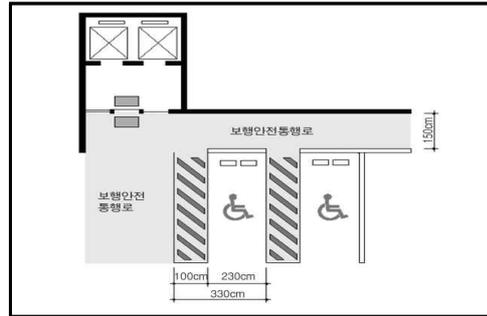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이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차로를 횡당 통과하여 도달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장소를 선택하여야 함



< 그림 4-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3.3미터는 차량의 문을 90도로 열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와 휠체어 등이 통과할 수 있는 1미터 이상의 통행로 유효폭을 보장하기 위한 크기임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음



< 그림 5-16 >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공간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함

-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의 입구, 주차면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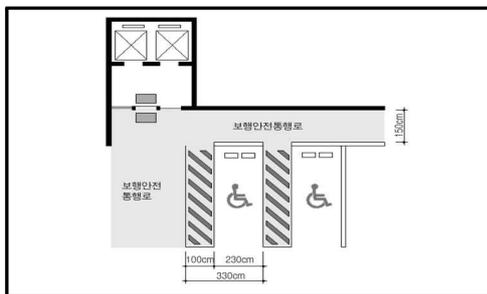
등에 안내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것은 물론주차면 바닥에 장애인전용 표시를 하는 것임. 이러한 유도 및 안내표시는 일반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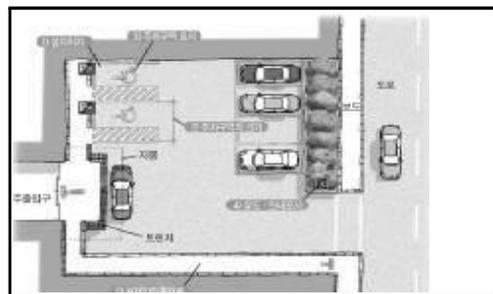
< 그림 5-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안내판설치 예

- 목포시 일부 여객시설 및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시설이 기준치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 개선방안으로써 법정확보대수인 총 확보대수의 3%이상이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출입구와 근접하여 장애인 주차장 1면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정비 유도



< 그림 5-18 > 장애인주차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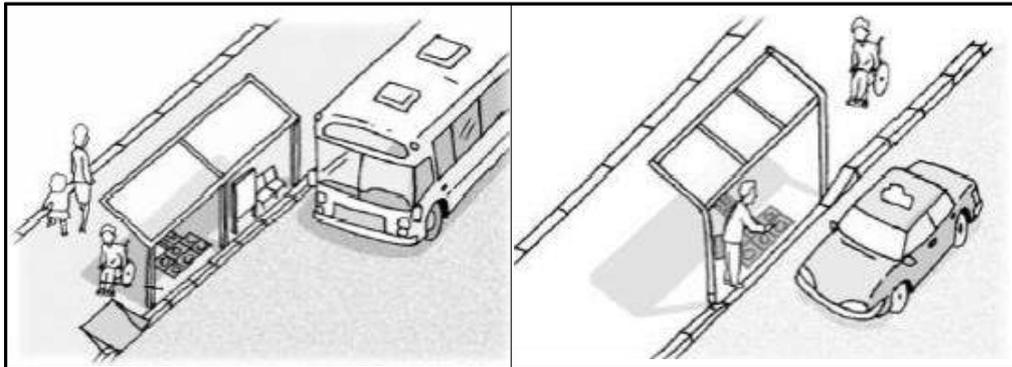


< 그림 5-19 > 주차장 확보(개념)

5.1.5 버스정류장시설 개선방안

가. 설치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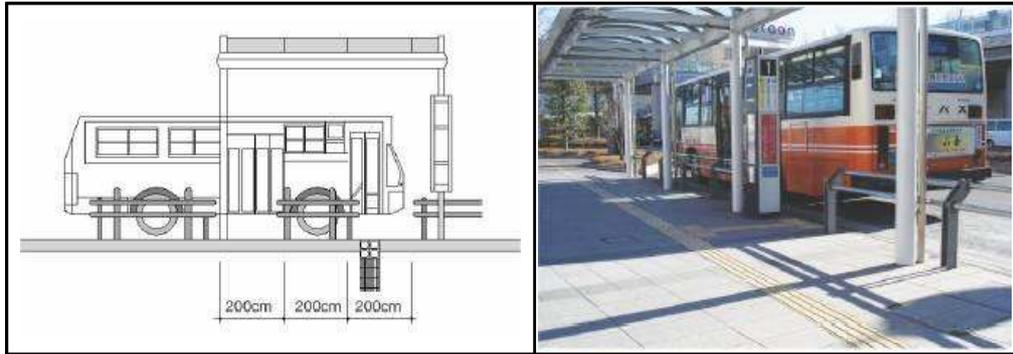
- 버스, 택시등 공공기관이 모든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장, 차량, 각종 안내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배려가 필요함
- 설치시 시각장애인이 정확하게 탑승하려고 하는 교통수단의 입구로 유도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함
- 또한 휠체어가 진출입, 회전등이 자유롭도록 배려해야 하고 시각장애인과 상호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적절히 분리해야 함



< 그림 5-20 > 버스정류장 시설 설치원칙

나 .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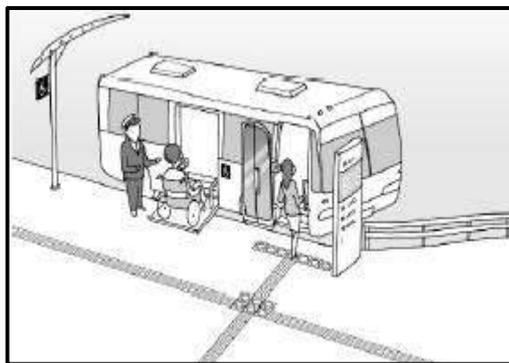
- 노인,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보도폭은 아주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우산을 들고 대기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덮인 대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행선지, 시간표 등 운행안내를 표시한 안내판을 휠체어 장애인, 어린이도 읽을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함
- 안내판은 점자안내를 병행하고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음성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림 5-21 >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례

다. 버스정류장 대기시설 개선방안

- 버스정류장시설의 경우 승강장내 대기시설 및 안내시설, 휴식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버스정류장의 경우 공공교통수단인 버스 승하차를 위한 대기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버스정류장의 개선은 터미널과 정류소간의 환승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연계(Network)을 위주로 개선을 하며, 개선 시 정류장 주변 및 여객시설 주변의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이 포함되어야 함
-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폭 확대, 점자블록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 설치
 - ▶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
 - ▶ 버스의 정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전기사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특히 저상버스의 운행에 대처하기 위해 승강장의 구조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라. 버스정류장 정비

- 저상버스확대 도입에 따라 기존버스 정류장의 무장애버스 승강장 사업 추진
- 주요시설은 승객대기 알람표시, 조명 모션감지센서, BIT,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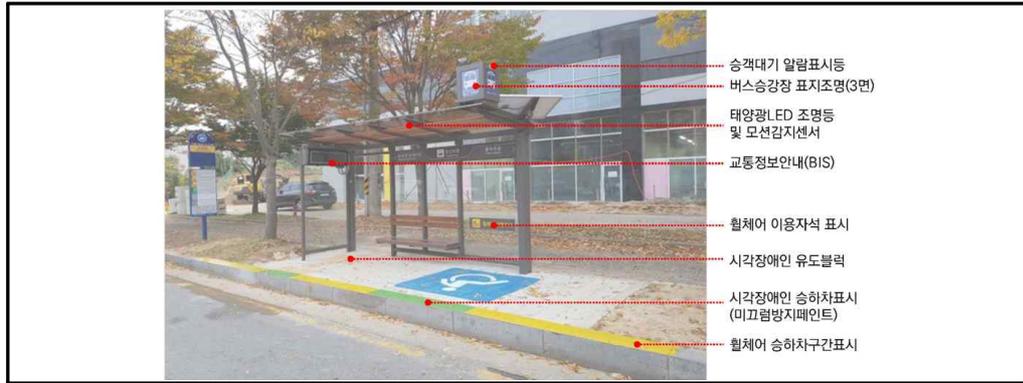
< 표 5-19 > 무장애 버스정류장 정비시설

구 분	세부 개선방안	비 고
경계석 턱 낮추기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15cm 이하 • 조정 및 정비(전노선)	
주변보도 폭원 확보	• 최소 유효보도폭 2.0m 확보	
휠체어 관련시설	• 휠체어 대기공간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 휠체어 승하차 구간 표시	
대기시설 설치	• 쉼터 설치(지붕 및 의자 등)	
버스정보안내판 설치	• BIS 설치 • 점자안내판, 음성안내병행 설치 • 바닥에서 1.5미터 내외 설치 • 버스운행에 관한 정보제공(전노선)	
점자블럭 설치	• 보도폭 넓은 경우 : 선형, 점형블럭 병설 • 보도폭 좁은 경우 : 점형블럭만 설치	
기타 정보시설	• 승객대기 알람 표시 • LED 조명 및 모션감지 센서 • 기타 시설	

- 저상버스 합승 승강장은 저상버스 운행에 따라 턱 낮춤 및 휠체어 대기장소, 경로 정비 등이 필요함
- 저상버스 이용 확대 반영 무장애 정류장 매년 3개소 이상, 총 12개소 설치
- 다음은 무장애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 계획임

< 표 5-20 > 무장애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신설	-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12개소
비고	시범 사업					



< 그림 5-22 > 무장애 버스 승강장 사례

- 버스정류장 중 정주식 166개소 매년 10개소씩 유개로 정비

< 표 5-21 > 버스정류장 정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버스정류장 정비	정주식:166 유개:77 방풍:284	10	10	10	10	40
비고	합계:543					

- BIT는 현재 설치율을 고려하여 매년 10대씩 설치율 3.8% → 4.5% 목표

< 표 5-22 > BIT설치 목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비고
BIT 누적 대수(개)	205	215 (+10)	225 (+10)	235 (+10)	245 (+10)	245 (+40)	매년 10대씩 추가 설치
설치율(%) (543개소)	3.8	4.0	4.1	4.3	4.5	-	

- 버스정류장 약자 접근 시설 설치율은 현재 30.36%에서 50.38% 적합을 상향됨

< 표 5-23 > 버스정류장 접근시설 목표 설치율

구분	2022년 현행 설치율(적합율)	2026년 목표	증감
턱낮춤 정비	59.5%	83.0%	
활동공간 확보	50.0%	70.0%	
동선분리(시각, 휠체어)	19.1%	40.0%	
점형블럭 설치	9.5%	50.0%	
선형블럭 설치	4.8%	20.0%	
안내시설 위치	100.0%	100.0%	
점자 및 음성	0.0%	20.0%	
정보제공 버튼	0.0%	20.0%	
합계	30.36%	50.38%	

5.2 보행환경 개선방안

5.2.1 유효보도폭원 확보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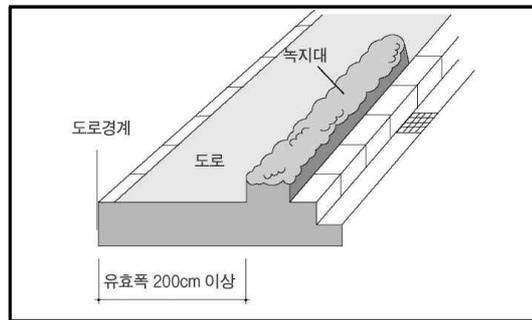
- 본 과업에서는 조사한 목포시 주요간선도로 총 27개 노선 연장 L=160.74km조사 결과 월체어 등 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보도폭인 2.0m 확보하지 못한 구간은 18개 노선 L=6.53km로 조사되었음
- 또한 27개 노선 중 보도 미설치구간이 7개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총 연장 22.40km로 나타났음

< 표 5-24 > 조사대상 주요간선도로의 최소보도폭원 미확보 노선 및 정비구간

번호	도로명	노 선 명	구간연장 (km)	보도폭 2.0m 미만 설치구간	보도정비구간	비 고
1	해안로	대3-13	10.96	-	-	
2	북향로	대2-4, 대3-13, 중2-3	4.46	0.04	-	
3	청오로	대3-3, 대1-2	7.60	0.10	-	
4	고하대로	대1-6, 대1-7	15.04	0.06	9.08	
5	대양로	대1-6	7.2	-	3.88	
6	영산로	대1-1, 대2-1, 대3-1, 중2-1	17.02	1.80	0.99	
7	용당로	대2-2, 대3-4	8.02	0.10	-	
8	양을로	대2-3, 대3-8	14.16	0.30	3.80	
9	산정로	대3-7, 대1-5	6.30	0.26	-	
10	삼일로	중3-5, 중3-6	4.80	1.55	1.87	
11	남교로	중3-1	1.46	-	1.46	
12	수문로	중2-2	2.90	0.30	-	
13	삼학로	대1-1, 대3-1	7.90	0.46	0.50	
14	백년로	광로3-1호선	7.76	-	-	
15	하당로	대3-5, 중1-25	5.56	0.60	-	
16	문화의거리	대3-12	3.86	0.30	-	
17	미향로	중1-32, 중1-34, 대3-16	4.40	-	-	
18	평화로	대2-7	3.20	-	-	
19	후광로	광3-2	2.32	0.06	-	
20	영산강하구로	대1-3	8.86	0.10	-	
21	부흥로	중1-19	2.38	0.10	-	
22	신흥로	중1-18	2.24	0.15	-	
23	비파로	대2-6	2.42	-	-	
24	교육로	대3-9	2.42	-	-	
25	석연로	대2-5, 대3-28	2.42	-	-	
26	옥암로	중1-20	3.48	0.20	-	
27	유통로	대3-29	1.60	0.05	0.42	
계			160.74	6.53	22.40	

나. 시설기준

- 휠체어사용자가通行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 이라 한다)의 유효폭원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1.2미터는 휠체어사용자가通行을 할 때 다른 보행자가 비켜선 채로 교행할 수 있는 최소폭임. 휠체어사용자가 일반보행인이 정지하여 비켜서지 않고 계속通行을 하며 교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미터이상의 유효폭이 필요함
- 보도의 유효폭 1.5미터는 휠체어사용자 상호간 또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서로 교행할 때 한쪽通行을 하고 다른 편이 정지하여 교행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임
- 하지만 휠체어사용자가 주의깊게 상호 교행할 수 있는 최소 통과 유효폭은 1.8미터 이상임. 따라서 원활하게 교행하며通行할 수 있는 일반자인 최소 폭을 2미터로 규정함



< 그림 5-23 > 최소 유효폭 기준

-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 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함
- 동절기가 긴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보도의 결빙이 잦은 지역에서의 12분의 1이사의 경사는 휠체어사용자의通行이 불가능한 기울기이므로 이때는 별도의 해빙(解氷)장치나 결빙(結氷)방지 장치를 할 필요가 있음
- 통상적으로 기울기 24분의 1이하의 보도는 평지와 동일하게 인정함

다. 정비방안

▣ 기존개설도로

- 기존개설도로(전폭준공)중 기존 폭2.0미만 확보된 보도는 현실적으로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가능 공간을 확보하여 Turn-out 형태의 교행 대기공간을 부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업추진

- 다음은 보행환경 지구 개선사업은 2022년에 1개소, 2024년에 1개소, 2026년에 1개소 총 3개소를 진행할 예정임

< 표 5-25 > 보행환경 지구 개선사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보행환경 지구 개선사업	1개소	-	1개소	-	1개소	3개소
비고	완료					

▣ 차량진입구 시설 개선

- 차량진입구 및 보도턱 및 폭 기준 표준화로 적합을 평균 80.0% 목표 정비

< 표 5-26 > 차량진입구 시설 현행 및 목표 설치율

구분	현행 설치율(%)	목표 설치율(%)
진입구보도턱 조정 위치, 보도폭 유지	81.42%	90.0%
진입구생식 및 질감 다르게 설치	56.64%	70.0%

▣ 보도턱 및 보도 재포장사업 상시 추진

- 보도턱 재포장 사업 지속 추진(상시 정비 사업)

< 표 5-27 > 보도정비 사업 현행 및 목표 설치율

구분	현행 설치율(%)	목표 설치율(%)	비고
보도정비 사업	상시정비 지속추진	정비기준 통일	

▣ 계획도로

- 계획도로폭원이 20m이상인 도로는 시설기준에 의거 최소 보도폭이 2.0m이상 확보가 가능하므로 본 계획의 기준에 적합
- 다만 종로 1류 미만(20m 미만)도로의 경우 도로 계획시 최소 폭2.0m, 또는 교행가능 공간 대피소 추가 확보



< 그림 5-24 > 교행구간 대피소 설치

- 기존 보도설치 구간에 대한 교행구간 정비방안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5-28 > 보도폭 2.0m미만 교행구간 정비계획

번호	노선명	기 종 점	총연장	2.0m미만 보도연장	교행구역 설치(개소수)	비 고
1	해안로	대3-13	10.96	0.02	3개소	
2	북향로	대2-4, 대3-13, 중2-3	4.46	0.04	2개소	
3	청오로	대3-3, 대1-2	7.60	0.10	1개소	
4	고하대로	대1-6, 대1-7	15.04	0.06	2개소	
5	중앙로	대1-1, 대2-1, 대3-1, 중2-1	17.02	1.80	37개소	
6	용당로	대2-2, 대3-4	8.02	0.10	2개소	
7	양을로	대2-3, 대3-8	14.16	0.30	7개소	
8	산정로	대3-7, 대1-5	6.30	0.26	6개소	
9	삼일로	중3-5, 중3-6	4.80	1.55	32개소	
10	수문로	중2-2	2.90	0.30	5개소	
11	삼학로	대1-1, 대3-1	7.90	0.46	10개소	
12	하당로	대3-5, 중1-25	5.56	0.60	12개소	
13	문화의거리	대3-12	3.86	0.30	6개소	
14	미향로	중1-32, 중1-34, 대3-16	4.40	0.60	12개소	
15	후광로	광3-2	2.32	0.06	1개소	
16	영산강하구로	대1-3	8.86	0.10	2개소	
17	부흥로	중1-19	2.38	0.10	2개소	
18	신흥로	중1-18	2.24	0.15	3개소	
19	석현로	대2-5, 대3-28	2.42	0.30	6개소	

주) 교행구역 설치 개소수는 50m 마다 1.5m×1.5m 대피소 설치

5.2.2 보도포장정비

- 다음은 보도포장의 시설기준임

< 표 5-29 > 보도포장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포장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평탄하고 단단하게 고정된 표면처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보행장애인은 물론 주의, 집중력이 낮은 어린이나 굽이 높고 뾰족한 구두를 신은 보행자들에게도 안전한 보행을 보장해 주는 필요조건이다. 이음새 부분의 틈은 그 간격이 목발이나 신발이 굽이 빠지지 않도록 1센티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며 비온 후에 움푹임이나 물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이음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장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의 유효통과 폭인 2미터 내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보도 등에 가로등, 전봇대,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 유효 폭인 2미터 바깥쪽에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유효폭이 확보된 경우에는 보행로내에 설치된 각종 장애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장애물 가장자리로부터 각각 폭 60센티미터 이상의 바닥재의 재질과 색상을 구분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히 지지대인 기둥은 유효폭 바깥쪽에 위치해 있으나 매달린 간판 등 부착물이 보행 유효폭내 보행자의 얼굴 높이까지 돌출되어 침범해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기둥이 흰지팡이 등으로 인지되지 않아 가장 위험하다. •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로 인지 가능한 부분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30센티미터 이하의 부분이다. 따라서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폭 2미터에 높이 2.1미터의 장애물 없는 3차원적인 안전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로수의 경우에도 유효 통과폭 이내로 가지가 뻗었을 경우에는 지면에서 2.5미터까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통행의 편의를 돕도록 해야 한다
경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좌우기울기의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통행할 경우 좌우 기울기는 휠체어 전복 등으로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보도 등의 좌우기울기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5.2.3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기준

- 보행자 및 시각장애인의 보도 충돌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이 적용된 시설설치
- 시각장애인 지팡이로 인지가능 높이 : 바닥으로부터 30cm
- 보도와 차동 경계 난간 : 30cm이하로 설치

-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폭 30 ~ 60센티미터 정도의 보도와 질감, 재료, 색상 등을 달이한 경계 띠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유도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보행로 내에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이를 벗어날 경우 명확히 인지되도록 하는 『경고 중심의 점자블럭 설치 방법』과 동일한 개념이임



< 그림 5-25 > 장애물 존, 경계띠, 안전보행로가 설치된 예

- ▶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 자전거정용도로, 보도의 순서로 하고 시각장애인 유도표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차 경계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함
 - ▶ 가로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높이 2.5미터까지 가로수의 가지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밖에 보·차 경계표시를 함
- 또한 시각장애인이 보도에 설치된 육교나 지하로 난간에 충돌할 수 있어 충돌방지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함



< 그림 5-26 > 보행안전지대 미설치사진

5.2.4 보행자 우선구역

가. 보행우선구역의 개요

- 보행우선구역은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시설)을 도입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공간임
- 일반적으로 보행자 우선구역은 종로1류 이하 이면도로나 생활도로의 안전성과 정온화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며 보행자 중심공간 조성을 위해 차량의 통제가 그 주요 내용임
- 다음은 보행우선 구역의 정의임

< 표 5-30 > 보행우선구역의 정의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거나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되는 구역 •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하여 자동차의 진입과 통행이 허용되지만 속도제한, 통행제한, 주차제한 등 각종 규제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구역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폭 12m 미만의 생활도로(국지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생활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하면 모든 도로는 자동차위주로 계획·관리되고 있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보호를 위한 근본적 조치의 어려움이 있었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의 확보를 위해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

나. 설치기준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대상선정 근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18조 및 시행령 16조에 보행우선구역지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보행우선구역지정은 시장 또는 군수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 등 보행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 구역으로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 5-31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지정 대상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정 2023.01.19 시행령 제 19280호]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지정 기준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음

< 표 5-32 >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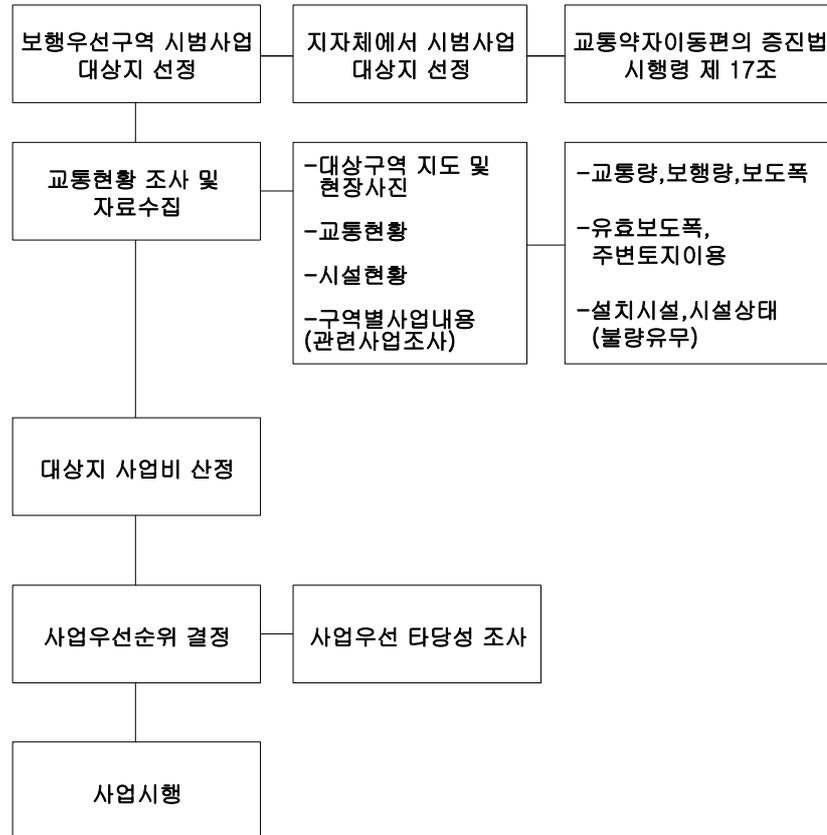
구 분	지정기준 및 면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2	학교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4	공공사업의 시행 후 도심 보행체계의 많은 변화가 발생한 지역 (예-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등)
5	공공시설(시청, 구청, 보건소, 시민회관, 시민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교육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6	인근주민의 이용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업시설(쇼핑시설, 식당가,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의 밀집지역 (예-서울시 압구정 로데오거리)
7	역사적 분위기와 함께 도심특성과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예-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	이용자수가 많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시설을 포함한 지역
9	대형병원이나 복지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또는 주변의 일상 생활권내의 주민에게 유일하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10	기존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주민이 보행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원하는 지역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0.5km²~1km² 정도를 정함.

주)1,2,3항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4, 5, 6, 7, 8, 9, 10항은 서울시 및 부천시의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일본 사례를 참고한 사항임

다.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정 절차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해 보행우선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사전검토하고 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그림 5-27 >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정 절차

라. 추진계획

- 보행자 우선구역은 보행관련 법에 의거 2022년까지 4개소를 지정 운영
- 1차적으로 2018년에 시범사업추진(국비지원사업)을 통해 1개소 시행

< 표 5-33 > 목포시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비 고
개 소	1	1	1	1	1	5	
비 고	시범사업						

5.2.5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 사업개요

- 목포시내 일원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 등의 밝기 개선을 통해 야간 보행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
- 주요 사업 내용은 고장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및 교체사업과 밝기, 조도가 불량한 가로등 시설 개선

나. 대상시설

- 목포시 총 조명시설은 가로등 9,855등, 보안등 7,510개로 나타났으며 점멸기는 495개소로 조사되었음

< 표 5-34 > 목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현황

구 분	조명시설(등)			점멸기(기)	비 고
	가로등	보안등	계		
개 소	9,855	7,510	17,365	495	

다. 조명기준

- 조명기준은 조명시설 서치기준에 의거 보행자용 가로등의 경우 다음 LUX이상을 유지

< 표 5-35 > 목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현황

야간의 보행자 교통량	지 역	조도(lx)	
		수평면조도(⁵)	연직면조도(⁸)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주(⁵) 수평면 조도는 보도의 노면상 평균 조도.

(⁸) 연직면 조도는 보도의 중심선 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 조도

라. 가로등사업계획

- 다음은 목표연도내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임

< 표 5-36 >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가로정비등수	150	150	150	150	150	750
소요사업비 (백만)	300	300	300	300	300	1,500

마. 투광기 설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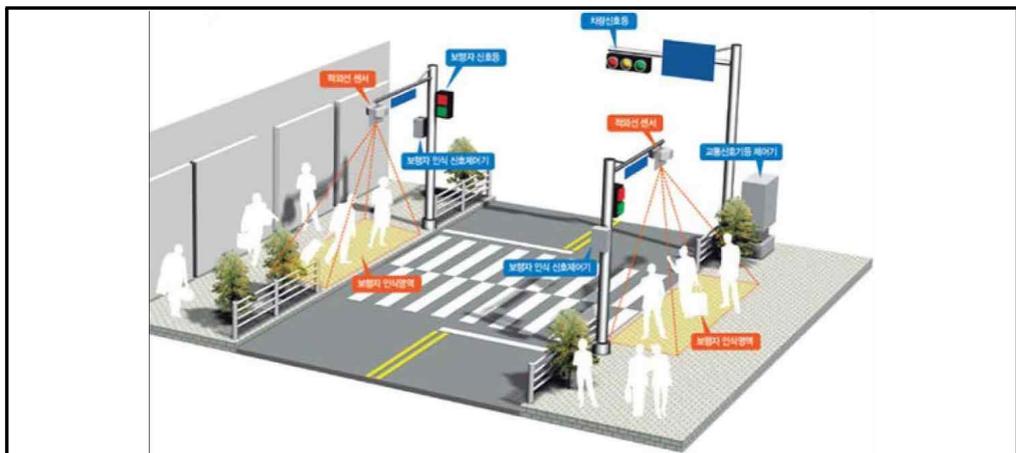
- 목포시의 야간조명 개선을 위한 투광기 설치사업은 2022년 기준 현재 455개소로 조사되었음
-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은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10개소씩 추가

< 표 4-1 > 야간조명개선 투광기 설치사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투광기 설치	-	10	101	10	10	40
누계	455	465	475	485	495	-

5.2.6 횡단보도 안전 확충

- 보행자의 이동 유무에 따른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설치 도입
- CCTV와 적외선 기능을 도입하여 보행자 이동 시 차량신호등 적색으로 변경되는 시스템
- 2018년 시범사업 시행 후 도입 확대



< 그림 5-28 >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구성



< 그림 5-29 >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사례

5.2.7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화사업 추진

가. 추진현황

- 목포시에서는 2012년부터 육교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24개 대상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 사업추진 목적은 차량우선 시설인 육교에 대해 교통약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이 용율이 낮은 시설을 철거하고 횡단보도 복원 추진
- 다음은 2017년 육교 철거 추진 현황임. 다만 목포시 재정여건을 고려 2018년 이 후 매년 1개소씩 복원화사업 추진

< 표 5-37 > 육교철거 추진 현황

구 분	총 대상육교(계)	철거완료	철거예정	존치	비고
시설수	24	11	4	9	

자료 : 목포시 내부자료

- 다음은 기철거전 육교 시설 현황임

< 표 5-38 > 기철거 육교시설 현황

번호	육교명	시설개요	설치년도	구 조	비 고
1	유달중 앞 육교	L= 15m, B=3.0m	1994	강구조	2013. 8.28 철거
2	연동건강약국 앞	L= 26m, B=2.5m	1996	강구조	2014. 2.20 철거
3	역전육교	L= 18m, B=2.5m	1997	강구조	2014. 4. 7 철거
4	연동육교	L= 22m, B=2.5m	1997	강구조	2014. 6.27 철거
5	대성초등학교 앞	L= 20m, B=2.5m	1996	강구조	2014. 5.30 철거
6	연산 현대@ 앞	L= 21m, B=2.5m	1997	강구조	2014.10. 7 철거
7	호남소방파출소 앞	L= 20m, B=2.5m	1996	강구조	2015. 1.13 철거
8	용해지구 포미타운 앞	L= 24m, B=4.0m	2004	강구조	2015. 2. 6 철거
9	하당 기독교병원앞	L= 42.1m, B=4.0m	2001	강구조	2015. 3.31 철거
10	MBC방송국 앞	L= 20m, B=2.5m	1996	강구조	2015. 6. 9 철거
11	북향동사무소 앞	L= 26m, B=2.5m	1996	강구조	2016. 6.17 철거
계	11개소				

나. 철거대상 육교 검토

- 다음은 목포시 육교 추가 철거 대상 검토 육교로 이중 2개소에 대해서 2026년까지 철거를 추진 중임

< 표 5-39 > 추가 철거 평가 우선순위

번호	육교명	시설개요	설치년도	구 조	비 고
1	하당 우미@ 앞	L= 42.1m, B=4.0m	1999	강구조	○ (대상)
2	삼향동사무소 앞	L= 38m, B=3.0m	1998	강구조	
3	광산가든 앞	L= 40.7m, B=3.0m	1998	강구조	○ (대상)
4	대박산 앞	L= 38m, B=3.0m	1998	강구조	
5	석현 구)검문소	L= 83m, B=3.0m	1998	강구조	
6	용해 금호@ 앞	L= 32m, B=3.0m	2000	강구조	
7	문화예술회관 앞	L= 70m, B=4.61m	2008	강구조	
8	산정동 동초등학교앞	L= 15.6m, B=3.0m	2004	강구조	
9	하당 롯데마트앞	L= 43.0m, B=3.5m	2002	강구조	
10	용해 여상고앞	L= 29m, B=2.5m	1995	강구조	
11	용해 동아@ 뒤	L= 30m, B=2.5m	1997	강구조	
12	옥암자전거육교	L=257m, B=4.0m	2012	아치강관 거더교	
13	목포역철도육교	L=181m, B=2.5m	1990	철근조 및 강구조	
계	13개소				

자료: 목포시 내부자료

- 2026년까지 철거대상 육교는 2개소로 해당 육교는 다음과 같음

< 표 5-40 > 4차연도 철거대상 육교

구 분	철거대상 순위1	철거대상 순위 2	계	비고
철거대상 육교	광산가든 앞	하당 우미@ 앞	2개소	
소요사업비(백만원)	120	120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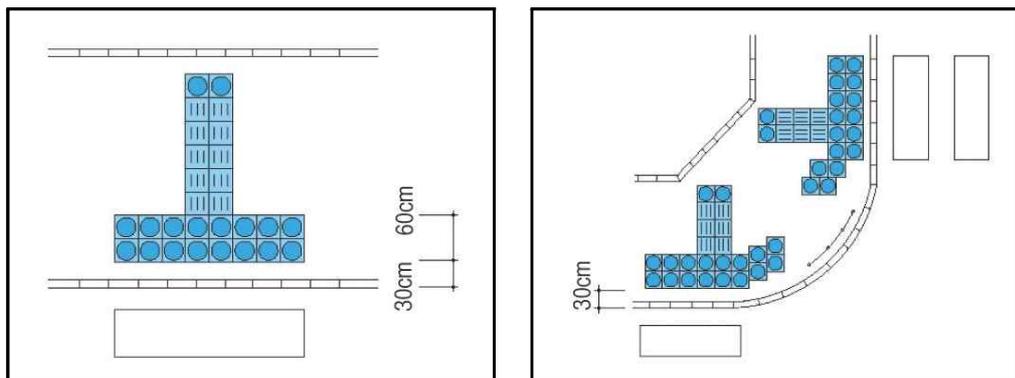
자료: 목포시 내부자료

5.3 장애인 관련 시설

5.3.1 점자블럭 시설정비

가. 횡단보도주변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횡단보도 진입부분의 점형블록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도로부터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이며, 보도폭으로부터 5분의 4지점까지 설치하는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음향신호기 전면의 점형블록은 보행장애물에 대한 경고 표시이자 음향신호기의 조작을 안내하는 역할을 위해 설치한 것임
-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외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그림 5-30 > 횡단보도 앞 점자블럭 시설기준

- 목포시 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의 횡단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아 매년 정비사업 추진 필요

나. 진행방향(종방향)점자블럭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횡단보도 부근에만 점자블럭이 시설되어 시각장애인의 도로방향의 보행이 어려운 실정
- 조사결과 목포시 해양로 등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방향 점자블럭 미설치



< 그림 5-31 > 외국의 진행방향 점자블럭 시설사례(日本)

다. 점자블럭 설치목표

- 점자블럭은 설치율이 낮아 보도 연 100m 씩 중점 설치하여 2026년에는 총400m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여객시설 주변중심)

< 표 5-41 > 점자블럭 설치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점자블럭 설치 계획	-	100m	100m	100m	100m	4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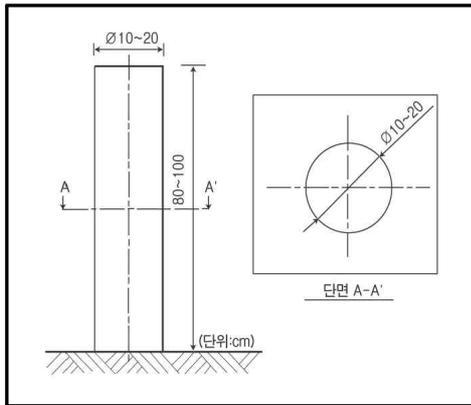
5.3.2 기타 교통약자시설 정비

가. 차량진입 억제 말뚝(블라드)

1) 시설기준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1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목포시의 블라드 조사결과 대부분이 법제정 이전에 설치되어 기존 노선의 경우 대부분 비규격으로 정비 필요



< 그림 5-32 > 블라드 시설기준적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사례

2) 블라드 교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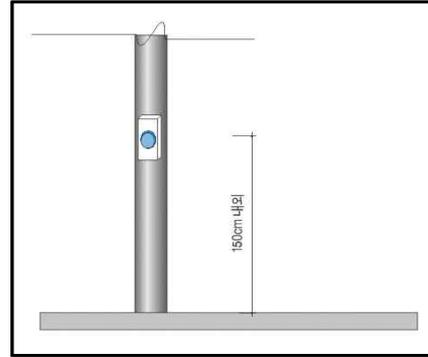
- 현장 시설기준 미만 다수 존재, 위규 블라드 교체 사업 추진(연50개소)

< 표 5-42 > 블라드 설치 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블라드 설치 계획	-	50개	50개	50개	50개	200개

나.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커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함
-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 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1.5미터로 하여야 함
-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음



< 그림 5-33 > 음향신호기 시설기준(높이)



< 그림 5-34 > 각종 음향신호기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는 2022년 현재 30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10개소씩 확충(정비) 포함
-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해 음향신호기 연 10개소씩 추가 설치

< 표 5-43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정비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비 고
설치 개소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누적개수	304	314	324	334	344	344	

다.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 장애인 및 일반보행자 등 모든 보도도로이용자를 위해서는 음향신호기와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은 진도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목포시의 2022년 현재 잔여시간 표시기는 총 850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과업 조사구간 미설치 횡단보도에 대해 연차적으로 설치



< 그림 5-35 > 잔여시간표시

- 보행자 사고 감소 및 정보제공을 위해 잔여시간 표시기 10개소씩 추가 설치

< 표 5-44 > 목포시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비 고
설치 개소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누적개수	850	860	870	880	890	890	

라. 투광기 설치

- 보행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투광기 연10개소씩 신설

< 표 5-45 > 투광기 설치 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투광기 설치(개소)	-	10	10	10	10	40
누적 개소수	455	465	475	485	4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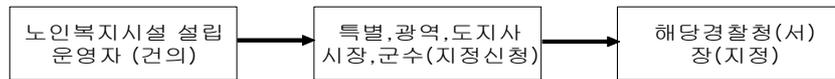
5.3.3 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지정운영

가. 개요

-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 31조 규정에 의거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
- ‘노인보호구역’ 에서는 노인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구역을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 도로교통법 : 제 12조의 2의 노인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 ▶ 지정 및 관리 주체
 - ▶ 지정절차 및 기준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 노인보호구역의 서부지정 기준
 - ▶ 보호구역 관리 및 재정조치
 - ▶ 각종 시설운영 및 보호구역 내 필요설치
 - ▶ 보호구역 사후관리

나. 보호구역 신청 절차



- 해당 주변시설의 자동차 통행량, 주차수요 조사
- 해당 주변시설의 교통사고 발생수 및 현황
- 해당 주변시설의 노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
- 해당 주변시설의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등
-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신청지역 시설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 청장 및 서장은 매년 3월 말 ‘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
- 해동규칙 제11조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사후관리 및 해당조치 의무화

다. 노인보호구역 관련시설

- 노인보호구역 신호등 우선설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노인 보행특성을 고려한 보행녹색시간 조정

< 표 5-46 > 평균 보행 속도 비교

구 분	일반인	노인	비고
평균보행속도 (m/sec)	1.0~1.2	0.8~1.0	

다. 노인보호구역관련 안전시설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Speed Hump)
- 미끄럼 방지시설
- 방호 울타리
- 기타노인 보호필요시설



< 그림 5-36 > 노인보호구역 관련시설

라. 주변주차(노상주차) 금지 규제

- 노인복지시설 주출입문과 직접연결 도로의 경우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기존 노상주차장은 노인이동을 고려 이전해야 할 것

마. 노인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제한

- 경찰청장 및 시장은 다음 사항의 차량통행제한 가능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매시(每時)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

사. 노인보호구역 추가지정

- 목포시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현재 5개소에서 2026년까지 15개소로 10개소 추가 지정

< 표 5-47 > 노인보호구역 추가지정

구분	현황	추가지정	2026년 목표
노인보호구역 개소수	5개소	10개소	15개소
비고			

5.4 제도 및 정책 정비

5.4.1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BF제도)

가. 개요

-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본 계획 내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역이나 시설·수단 등에 대해 장애물이 없는 정도를 판단, 무장애 인증을 하는 제도
- 인증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 받은 시설이나 지역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정보의 BF제도 시행방침 및 지원 상황에 따라 광주광역시도 도입하여 계획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외국의 사례

1) 일본

- 적용법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신법으로 시행 중 2006년부터 제도시행
- 기존의 ‘하트빌법’과 ‘교통무장애법’을 통합하여 2,000㎡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일부지역에서 각종 조례를 만들어 개별건축물의 신청에 따라 적용(동경도의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등)

2) 프랑스

- 프랑스는 ‘TH(Tourisme & Handicap) 인증제도’가 무장애 인증제도임
- 이는 장애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 등 관광시설을 인증함
- 인증부문은 장애 유형에 따라 정신·지체·시각·청각 장애부문을 구분 시행

다. 우리나라 추진 내용 및 적용방법

1) 인증주체

-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
- 인증의 유효기간의 5년이며 인증기간을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BF 인증대상

- 인증대상은 ‘도시 및 구역인증’ 과 ‘개별시설’ 의 인증으로 구분되며, 세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음

< 표 5-48 > BF 인증 대상 시설

구 분	대 상	세부시설
도시 및 구역	도시구성체계	• 보행망, 녹지조성계획, 이용 및 교통시설 계획 등
	보행네트워크	• 보행자 전용도로부문, 보·차공존도로 부문 등
	도시관리	• 제도, BF계획 수립 여부
개별시설	건축물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도 로	• 보도, 횡단보도, 기타 시설
	공 원	• 접근성, BF보행연속성, 편의성, 유도 및 안내
	여객시설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3) 인증 시기 및 주체

- 인증 신청자
 - ▶ 도시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
 - ▶ 구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구역 소유자 및 관리자
 - ▶ 개별시설 : 시설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예비인증은 사용허가(준공)전, 본 인증은 공사 준공 후

4) 인증절차

- 다음은 단계별 인증절차 및 세부내용임

< 표 5-49 > BF 인증 절차

단 계	주 체	내 용	비 고
1. 인증신청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신청서 작성제출 인증자체 평가서 작성제출 	지자체 시설소유자
2.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단 구성	인증기관 (토지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단 구성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행정절차 지원 	인증기관 (토지공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3. 인증심사단 평가	인증심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 현장 점검 평가서 작성 	인증심사단
4. 심 의	인증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 심의 등급 결정 (1, 2, 3 등급) 평가결과 작성 (인증보고) 	인증심의위원회
5. 인증서 발급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위원회 결과 검토 인증서 발급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5.4.2 홍보 및 교육

가. 개요

- 교통환경개선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의식 전환유도가 절실함
- 보행관련 및 교통약자 홍보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홍보
- 홍보방법으로 교통방송, 유선방송, 공중파방송, 인터넷,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등 이용, 기타 홍보책자 제작 등 도 추진

나. 홍보방안

- 사회일반의 보장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통약자 인식제고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 추진
-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 주최 행사후원 및 기금조성 추진
- 시민 대상 인식개선 매뉴얼 및 시청각 교재 개발
- 다음은 정부의 교통약자에 대한 홍보방법임

< 표 5-50 > 정부의 교통약자 홍보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교통약자 홍보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광고, 교통약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홍보위원회 구성 • 홍보방법 및 홍보내용 등 교통약자 홍보 추진방향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위원회 • 건설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방송 및 유선방송 등과 같은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 인터넷, 교통전광판, 지하철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교통사업자 • 건설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홍보책자 발간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책자 발간 • 각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 등에 배포, 국정홍보물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장애인협회 • 건설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교통약자 인식제고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통행사 등을 통한 홍보 및 시민의식 고취 • 교통약자 보호운전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부 • 경찰청 • 보건복지부 • 지자체

자료 : 교통약자기본 계획

-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민 홍보 강화
 - ▶ 보행자의 날 축제(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며,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 ▶ 토론회 개최(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부산의 실정에 맞는 보행환경의 개선과 정책논의)
 - ▶ 주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개선 캠페인 진행 및 표어 제작 배포 추진
- 보도주변 환경정비 홍보
 - ▶ 노상 적치물, 노점상,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 ▶ 구/동 및 지역주민단체와 결합한 홍보캠페인 전개
- 차 없는 거리 정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 차 없는 거리의 조성 및 그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문화공연 프로그램 개발
 - ▶ 문화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만드는 문화공연 추진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지원

-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인 보행자 관련 교육 실시
 - ▶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호운전 캠페인
 - ▶ 보행자와 관련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편람(Manuel)작성 등을 통해 교육기회 제공
- 학교교육을 통한 보행자 중요성 인식제고 방안 마련
 - ▶ 유치원에서는 지역여건 및 유아발달을 고려한 보행자 및 교통약자 교육 실시
 -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시 보행자 관련 사항을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지도
 -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보행자관련 내용의 보충자료 개발·보급 및 VR 교육 확대
 - ▶ 보행환경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교육 실시(VR교육) 및 협의 시행
- 다음은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의 교육방안임

< 표 5-51 > 교육관련 사례 (교통약자 교육방안 사례)

방 안	내 용	비 고
사회 및 교육기관을 통한 교통약자 관련 인식제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개정을 통한 교통약자관련 내용 심화 보충 • 민간기업 행사 후원 및 기금조성 마련 • 교통약자 인식개선 매뉴얼 및 시청각 교육 마련 • 교통약자 체험교육 실시(VR 교육 확대) 	교육지원청과 연계
교통약자 관련 교통안전교육의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연수원의 운전자교육으로 운전자의 의식전환 (보행우선 구역내 속도저감등) •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약자 관련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 • 교통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교육 	

자료 : 교통약자 기본계획

라. 교통약자 조례 정비

- 목포시 교통약자 조례는 기존에 제정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에 따라 조정 또는 정비 되어 왔음
- 금번 4차 계획 검토 결과 다음 사항 조례 정비 필요
 - ▶ 실태조사 항목 및 시행 누락 → 반영
 - ▶ 보행우선구역 반영 누락 → 반영
 - ▶ 기타 상위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른 목포시 조례 정비 추가

제6장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

6.1 투자사업규모

6.1.1 사업규모

• 다음은 본 계획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규모 현황임

< 표 6-1 > 사업규모 현황(2021~2026년)

구 분	주 요 지 표	단위	2021년 (현황)	2026년 (누적)	4차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	• 저상버스도입(버스대수 조정시 연계)	대	36	100	64
	• 특별교통수단(장,쿨)	대	39	46	7
	• 바우처택시(운영비)	대	12	12	0
	• 임차택시	대	4	4	4
	• 소계(4개 사업)		91	162	71
	이동지원센터 확충		1식	1식	1식
교통수단정비 및 버스정류장	• 시내버스 약자시설 정비(내부시설)	식	1식	1식	1식
	• 시내버스 승강장 약자접근성개선	식	1식	1식	1식
	• 무장애버스 정류장	개소	0	12	12
	• 버스정류장 현대화(유개화)	개소	361(유개)	401	40
	• BIT 설치	개소	205	245	40
	• 소계(5개 사업)		-	-	-
여객시설 정비	• 여객터미널 정비	식	1식	1식	1식
보호구역 정비	•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개소	63개소	73개소	10개소
	• 보호구역 정비(표준화)	개소	63개소	63개소	정비
	• 소계(2개 사업)		-	-	-
보행환경 정비	• 보행환경 개선지구	개소	1개소	4개소	3개소
	• 차량진입구 및 보도폭정비	식	1식	1식	1식
	• 보도 재포장	식	1식	1식	1식
	• 육교철거	개소	11개소	13개소	추가 2개소
	• 점자블럭설치(점,선형)	식	1식	1식	400m
	• 위규볼라드교체	식	1식	1식	200개
	• 음향신호기 설치	개소	304	344	40개
	• 잔여시간 표시기 추가 설치	개소	850	890	40개소
	• 투광기 설치	개소	455	495	40
	• 가로등 설치	식	1식	1식	상시
	• 소계(9개 사업)		-	-	
	전체계(22개 사업)		91	162	71

-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사업비 규모 현황으로 2026년까지 총 사업비는 330.64억 원으로 추정됨

< 표 6-2 > 주요 사업비 규모(2021~2026년)

구 분	주 요 지 표	소요사업비및 자원조달(백만원)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계	
특별교통수단	• 저상버스도입(버스대수 조정시 연계)	6,560	3,280	3,280	13,120	대당205
	• 특별교통수단(장,콜)	168	84	84	336	대당48
	• 바우처택시(운영비)	-	(128)	(128)	248	운영비
	• 임차택시	-	-	(150)	150	운영비
	• 소계(4개 사업)	6,728	3,492	3,642	13,854	
	이동지원센터 확충	250	250	7,000	7,500	년 1,500
교통수단정비 및 버스정류장	• 시내버스 약자시설 정비(내부시설)			100	100	
	• 시내버스 승강장 약자접근성개선			500	500	
	• 무장애버스 정류장		54	126	180	대당15
	• 버스정류장 현대화(유개화)			1,600	1600	개당40
	• BIT 설치			320	320	개당8
	• 소계(5개 사업)		54	2,646	2,700	
여객시설 정비	• 여객터미널 정비			200	200	
보호구역 정비	• 보호구역 추가 지정			250	250	
	• 보호구역 정비(표준화)			4,000	4,000	
	• 소계(2개 사업)			4,250	4,250	
보행환경 정비	• 보행환경 개선지구		1,200	1,200	2,400	
	• 차량진입구 및 보도폭정비				사업시행자	
	• 보도 재포장			1,000	1,000	육교별도
	• 육교철거			240	240	
	• 점자블럭설치(점,선형)			100	100	대당0.2
	• 위규볼라드교체			80	80	대당0.4
	• 음향신호기 설치			100	100	대당0.2
	• 잔여시간 표시기 추가 설치			20	20	대당0.5
	• 투광기 설치			120	120	대당3
	• 가로등 설치			500	500	
• 소계(9개 사업)		1,200	3,120	4,320		
	전체계(22개 사업)	6,978	4,740	20,542	33,064	

6.1.2 연차별 투자계획

•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임

< 표 6-3 > 주요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21~2026년)

구 분	주 요 지 표	연차별 투자계획					4차 사업규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특별교통수단	• 저상버스도입	-	16대	16대	16대	16대	64대
	• 특별교통수단(장,콜)	-	2대	2대	2대	1대	7대
	• 바우처택시(운영비)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 임차택시	-	1대	1대	1대	1대	4대
	• 소계(4개 사업)	-	18대	18대	18대	17대	71대
이동지원센터 확충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교통수단정비 및 버스정류장	• 시내버스 약자시설 정비(내부시설)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시내버스 승강장 약자접근성개선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무장애버스 정류장	-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12개소
	• 버스정류장 현대화(유개화)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 BIT 설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 소계(5개 사업)	-	23개소	23개소	23개소	23개소	23개소
여객시설 정비	• 여객터미널 정비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보호구역 정비	• 보호구역 추가 지정	-	3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10개소
	• 보호구역 정비 (표준화)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소계(2개 사업)	-	3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10개소
보행환경 정비	• 보행환경 개선지구	-	1개소	1개소	1개소	-	3개소
	• 차량진입구 및 보도폭정비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보도 재포장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육교철거	-	1개소	1개소	-	-	2개소
	• 점자블럭설치 (점,선형)	-	100m	100m	100m	100m	400m
	• 위규블라드교체	-	50개소	50개	50개	50개	200개
	• 음향신호기 설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 잔여시간 표시기 추가 설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 투광기 설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 가로등 설치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소계(9개 사업)		92	92	91	90	365	
전체계(22개 사업)			136	136	135	133	540

6.2 투자효과평가 및 자원조달방안

6.2.1 투자효과 평가

- 투자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방안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또한 평가를 위한 별도 위원회 및 협의회구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정조직은 향후 별도 검토
- 아울러 교통약자와 관련된 모든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 및 준공단계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필요

6.2.2 정부의 본계획관련 투자계획

가. 중앙정부의 자원조달방안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투자이므로 사회적 형평성측면에서 일반회계를 통한 자원조달
 - ▶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자원조달을 하되, 만약 일반회계에서 자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원조달방안 고려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계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련 국고지원 방안 강구
 - ▶ 저상버스도입,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특별교통수단과 도시철도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대중교통계정에서 사업시행주체에 국고지원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은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에서 자원조달방안 검토
 - ▶ 복권기금 중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구입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 복권기금의 용도에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자원조달방안

- 지방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자원조달
 - ▶ 단, 일반회계에서 자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자원조달방안을 모색
- 지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위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상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

※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①교통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②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③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④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사업에 지원이 가능

-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이동편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
 - ▶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전입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장비 등에 사용

※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7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며,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방식을 정함

다. 민간투자사업(BTL)의 활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대상시설에 포함 추진
 -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의 사업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 필요
- 건설교통부가 추후 정하는 BTL 적합성기준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투자를 추진
 - ▶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등급이 낮으나 투자재원이 부족한 경우 BTL 추진 검토
 - ▶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BTL 추진 검토

<참고> 외국의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재원조달 사례

- 미국 뉴저지주정부는 카지노사업장에 카지노세(Casino Revenue Tax)를 부과하여, 노인·장애자 특수교통서비스(paratransit)의 재원으로 활용
- 미 연방정부는 특수교통서비스를 위한 차량구입 등을 위해 ‘Section 5310 Grant Program’을 통해 매칭펀드방식으로 국고지원
- 일본 국토교통성은 교통시설 배리어프리(Barrier-Free)화 설비 정비비 보조금제도를 통해 철도사업자에게 중앙정부 1/3, 지자체 1/3 지원

<참고>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대중교통계정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재정지원토록 개정
 - ▶ 동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의 제2조7호의 ‘이동편의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
 -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2항제7호에서 이동지원센터 등이 이동편의시설로 분명히 규정되도록 법 개정

6.2.3 재원조달 방안

가. 교통약자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1) 중앙정부의 재원조달방안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투자이므로 사회적 형평성측면에서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 ▶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을 하되, 만약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재원조달방안 고려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계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련 국고지원 방안 강구
 - ▶ 저상버스도입,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특별교통수단과 도시철도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대중교통계정에서 사업시행주체에 국고지원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은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에서 재원조달방안 검토
 - ▶ 복권기금 중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구입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 복권기금의 용도에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2)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조달방안

- 지방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
 - ▶ 단,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조달방안을 모색
- 지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위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상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
 - ※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①교통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②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③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④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사업에 지원이 가능
-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이동편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

- ▶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전입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장비 등에 사용
- ※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7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며,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방식을 정함

< 표 6-4 >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조달 유형

구분	내용	특징	관련 법령
지방세 수입	• 지방세 중 일부를 개발에 투자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취약으로 자원조달 한계	•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세) •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중앙정부 보조금	• 지방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 요청 가능	• 사업유형에 따라 보조금액 제약	• 지방재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보조금 신청
각종 기금	•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차입	• 재원의 규모가 작음	-
선수금	• 지역개발의 주요한 자원조달 형태	• 기업유치의 일환으로도 활용가능	• 지역균형발전법 제22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지방채	• 지역개발사업을 담보로한 수익채권 발행 가능	• 강제매매의 형태가 강해 자원조달에 한계 • 지방재정규모를 고려 적정량 발행필요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7조, 제8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2 ~ 제18조, 제20조
지방채의 해외발생	• 지방채의 해외발행은 국내 발행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발행에서의 외국환 관리법 적용	• 민간과 동일한 계약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지방재정법 제7조, 제8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2 ~ 제18조, 제19조 외환관리법 준용

3) 민간투자사업(BTL)의 활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이 대 상시설에 포함 추진
 -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의 사업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 필요
- 건설교통부가 추후 정하는 BTL 적합성기준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투자를 추진
 - ▶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등급이 낮으나 투자재원이 부족한 경우 BTL 추진 검토

- ▶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BTL 추진 검토
-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으로 민간부문에서도 도시개발사업에 진출할 여력이 증대되었고 건설업계의 도시개발경험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사업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경영기술과 운영능력을 이용함으로써 개발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함

< 표 6-5 > 민간참여의 유형

구 분	직 접 참 여	간 접 참 여	제3섹터(민관합동개발)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공공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거나 허가권을 받아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일정지분을 가지고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투자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복합터미널, 컨벤션센터 등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 • 관광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참여, 간접참여의 모든 대상사업
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에 자율적인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 및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 사업의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권개입의 소지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자금 조달 • 민간의 창의력 활용에 한계 • 적절한 민자유치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고 특혜소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 • 대규모 투자사업이 민간 자본의 참여로 신속하게 활성화될 수 있음 • 민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능률의 저하가 우려됨

4) 자체 자원 강화

-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자원 확보방안을 자체 수립하여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신 세원 개발을 하여야함
- 목포시 전체 투자전망 중 교통부문 투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교통부문 분배 비율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교통분야의 새로운 세원 적용 예로서 도로 사용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는 지방주행세 도입이나 지방 소득세 신설 등을 검토

5) 국세이양 추진

- 국세 중 유류 특별 소비세와 자동차와 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자동차 취득세, 면허세 등은 자동차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등이 해당됨
- 이런 세수원 중에 간접세 수입, 유류 특별세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의하였음

나. 자원 조달방안 판단

- 본 사업비 규모는 5년간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목포시 전체 규모에 비해 많지 않으며 사업규모 설정시 기존 집행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자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문제가 되는 저상버스 사업은 국비와 도비지원이 가능해야하고 정부의지가 확고하여 정부 분담금 확보 총력 필요
-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능하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정책확보가 필요함

1. 보고 및 자문

□ 중간보고회

- 일시 : 2023년 2월 21일
- 장소 : 목포시 소회의실
- 참석 : 전문가 및 목포시 실과 담당자 등 12명

<표 1> 중간보고 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임혜영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연도는 국가계획 및 전남도 계획과 일치하는 것으로 하여 2026년으로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도 승인자료는 2026년으로 연차별계획 제시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가 다양하고 많이 되어 계획 잘된 듯 적극 활용 •사업계획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 계획수립 (예, 버스정류장, 보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에 반영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 분류로 통합하여 별도 제시 (보고서 작성)
송찬현 건설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기본계획과 보행환경 기본계획과의 관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법은 국토부관리법, 보행환경은 행안부법이며, 본 법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보행환경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적합률을 중심으로 다루고 보행환경은 사업위주로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보도정비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보도 정비 예산은 본 계획 특성상 제외하고 별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철거 사업은 3차연도미시행되었으나 1개소 추가 철거(석현동)진행 중이고 계속 추진 예정이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연도에1~2개소 반영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본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자료 적극 활용
남궁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추가지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 개선지구는 법정 지구로 지구지정 등 절차 및 국비 지원 등을 고려 사업 시행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62% 도달시운행 노선비율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20개 노선:전 노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병행 추진
설동진 대중교통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대수 157대가 맞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대는 전남도 자료로 적용(157대는 괄호로 표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모든 대폐차를 대체해도확보를 목표도달미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 지표가 62%로 전남도 승인 필요사항임 •2026년까지 대폐차규모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이재영 이동청소년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수인구 비율 적용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 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장래지표는 모형 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장애인 이용 비율 등도 검토 후 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이용율은 목포시 자료없음, 전남도 자료있으며제시예정, 저상버스는고령자용으로 봐야함
노기창 국장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연도는 국가계획 및 전남도 계획과 일치 필요및 사업계획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연도 일치 및 통합 반영 (과업지시서:2027년, 국가 계획2026년 : 계획은 국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사업에 자료 활용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가 다양하여 관련 목포시 자체 계획 등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하였으며 전남도 등 승인 절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확보를 목표 미 도달시대안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계획을 보면 미도달시국토부에서 조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됨

□ 최종보고회

일시 : 2023년 4월 5일

○ 장소 : 목포시 소회의실

○ 참석 : 전문가 및 목포시 실과 담당자 등 12명

<표 2> 최종보고 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임혜영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가 충분하고 세부적으로 잘 정리됨 •사업 시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 부서별로 나눌 필요가 있음(건설과 등의 사업계획 중 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사업 계획을 조정하여 분류하였으며 별도 연차별 사업에 보완하였음
송찬현 건설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철거 항목 예산 재원이 빠져있음 •기타 우리과 사업 내용인 점자블럭 등은 구분 자료 정리하여 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2개소 반영 •확정 절차 완료시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 및 협의
백동규 기획복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는 안전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장애인 친화 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 연계가 필요하고 자료 공유 •노선 개편이 되면 저상버스 확보 대수 및 운행노선 비율이 높아질 것, 이에 대한 검토 및 언급 필요 •저상버스 운행노선에 무장애 버스정류장 사업규모가 너무 적고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 및 지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확정절차를 통해 실과 연계 및 공유 방안 모색 예정 •저상버스 부분에 해당 내용 언급(5장 참고) •저상버스 부분에 버스정류장 정비 규모 확대 반영(저상버스 운행 비율에 따라 조정)
남궁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내용은 잘된 것으로 보임. 보행약자 증가로 인한 인프라 확대되어야 한다. 매년 보행자 사고가 많은 목포시의 보행 시설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볼라드 시설 규격화 조기 사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에 관한 추가사업 확대 및 사업규모 보완 •볼라드 정비 적극 추진 반영
김웅기 교통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3년 주기로 점검 시행이 될 것에 대비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전체 보호구역의 사업비가 규모 내용 경찰서 협의 여부 •예산 반영이 들어가는지, 음향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등 소요 필요 개수 등 총량을 파악 후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내용은 본 계획과 연계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예정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목포시에서 경찰서와 협의 완료 •본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 차기 사업 등에서 반영
조연주 교육지원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보행 사고가 많음 목포시 특성을 고려, 그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함 •VR등 어린이 안전 교육 강화 반영 필요 및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고관련 법정 계획 드래서 보강) •VR등 어린이 안전 교육 강화 반영(5.4.2절에 추가)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정류장 점자블럭 및 음성시설 등 미비사항 및 내용을 보고서에 설명 필요 •다양한 자료와 계획 실행력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수록하고 보고서에 사업계획으로 반영 •사업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수립
소영호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여러 사업 및 목포시 중요한 사업이 포함됨, 관련 지표나 해당 정책에 적극 활용 필요 •해당 내용이 충실한 내용으로, 중요한 계획으로 실행력 중요 •각 실과 해당 내용 공유 및 업무 추진에 반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공유 및 실행 계획 수립 •관련 자료 목포시 주요 사업 등에 활용, 확정시 자료 공유 •확정 후 자료 공유 및 업무 추진에 반영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음

2. 최종보고회 자료





중간보고 조치계획

중간보고 일시

- ◆ 일시 : 2023.2.21(화), 14:00~15:00
- ◆ 장소 : 소회의실(민원동2층)
- ◆ 참석 : 10명(목포시8,전문기2) 용역사2명

중간보고 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	검토 의견	조치 계획
임혜영 위원	• 목표연도는 국가계획 및 전남도 계획과 일치하는 것으로 하여 2026년으로 추진 필요	• 전남도 승인자료는 2026년으로 연차별 계획 제시 예정임
	• 조사가 다양하고 많이 되어 계획 잘된 듯 적극 활용	• 계획에 반영
	• 사업계획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 계획 수립 (예, 버스정류장, 보도 등)	•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 분류로 통합하여 별도 제시
송찬현 건설과장	• 본 기본계획과 보행환경 기본계획과의 관계 차이	• 본 법은 국토부관리법, 보행환경은 행안부법이며, 본 법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보행환경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적합함을 중심으로 다루고 보행환경은 사업위주로 다룸
	• 우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보고정비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 반영	•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보도 정비 예산은 본 계획 특성상 제외
	• 육교 철거 사업은 3차연도 미시행되었으나 1개소 추가 철거(석현동)진행 중이고 계속 추진 예정이니 반영	• 4차연도에 1~2개소 반영 하겠음
	•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본 자료 활용	• 본 자료 적극 활용

중간보고 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남궁현 위원	•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추가 지정 검토	• 보행환경 개선지구는 법정 지구로 지구지정 등 절차 및 국비 지원 등을 고려 사업 시행이 필요
	• 저상버스 62% 도달시 운행 노선비율도 제시	• 제시(20개 노선:전 노선 확대)
	•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관계	•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병행 추진
설동진 대중교통 팀장	• 버스대수 157대가 맞음 검토	• 161대는 전남도 자료로 적용(157대는 필요로 표기 예정)
	• 저상버스 모든 대폐차를 대체해도 확보율 목표 도달 미지수	• 상위계획 지표가 62%로 전남도 승인 필요사항임 • 2026년까지 대폐차 규모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이재영 이등청소년 팀장	• 교통약자수 인구 비율 적용 적정성	• 교통약자 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장례지표는 모형 값임
	• 저상버스 장애인 이용 비율 등도 검토 후 계획 반영	• 저상버스 이용율은 목포시 자료없음, 전남도 자료있으며 제시예정, 저상버스는 고령자용으로 봐야함
노기창 국장님	• 목표연도는 국가계획 및 전남도 계획과 일치 필요 및 사업계획에 통합	• 목표연도 일치 및 통합 반영 (과업지시서:2027년, 국가 계획 2026년 : 계획은 국가자료)
	• 타사업에 자료 활용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	• 자료 활용
	• 분야가 다양하여 관련 목포시 자체 계획 등 반영	• 반영하였으며 전남도 등 승인 절차 이행
	• 저상버스 확보율 목표 미 도달시 대안 등 검토	• 제3차 계획을 보면 미도달시 국토부에서 조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됨

I. 과업개요

1. 과업개요

1. 응역개요

- ❖ 응역명 : 목포시 교통약자 기본계획 (제4차 수립 계획)
- ❖ 응역기간 : 2022. 10. 12 ~ 2023. 4. 16
- ❖ 응역수행 : (주)동아기술공사 (₩19,980천원)

2. 계획의 성격

- ❖ 계획구분 : 법정계획
- ❖ 수립주체 : 목포시장
- ❖ 계획연도 : 5년 (2022~2026년)
- ❖ 수립근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3. 과업의 내용

- ❖ 현황 조사 및 이용실태, 문제점 분석
- ❖ 3차 계획 평가 및 수요예측, 목표설정
- ❖ 특별 교통수단, 지원센터, 정보제공 등 정비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편의 정비
- ❖ 자원조달방안 및 시행계획

4. 시간적 범위

- ❖ 3차 연도 : 2018 ~ 2022년
- ❖ 4차 연도 : 2022 ~ 2026년 / 과업지시 : 2023 ~ 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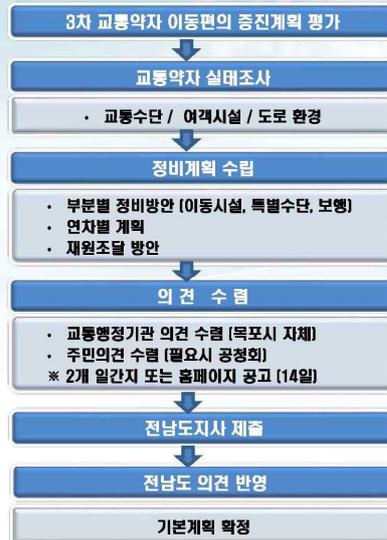
5. 공간적 범위



6. 과업의 주요 내용

구분	제4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적 범위
제4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성과 검토 · 계획의 개요,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부분별 추진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등 정비 확충방안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 보행환경 개선 - 보행우선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홍보방안 - 교통약자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7. 과업 수행절차





II. 현황 및 교통약자 이동실태

제2장 현황 및 교통약자 이동실태

1. 교통약자 현황

- 2016년 이후 **교통약자는 0.71% 감소**
- 2021년 기준 **전체인구 대비 2021년 32.12%**
- 전체 약자중 **고령자 66.63%**, 어린이 22.88%, 장애인 9.57% 순

구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계	인구 대비(%)
2016년	7,616	32,445	1,823	17,622	13,261	72,767	30.61%
2017년	7,461	33,834	1,431	17,523	12,129	72,378	30.88%
2018년	7,324	34,821	1,318	17,749	11,065	72,277	31.11%
2019년	누락	36,087	1,208	17,533	10,137	64,965	-
2020년	6,945	37,827	963	16,737	8,796	71,268	31.81%
2021년	6,720	39,063	792	16,067	7,571	70,213	32.12%
증가율(%)	-2.47	3.78	-15.36	-1.83	-10.60	-0.71	0.97%

- 교통약자 인구 :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각 교통약자 합계중 중복인구(장애인-고령자, 장애인-어린이, 장애인-영유아동반자) 제외
- 장애인 인구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 고령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5세 이상의 인구
- 임산부 인구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생인구현황으로 대체
- 어린이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6-12세 인구
- 영유아동반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0-5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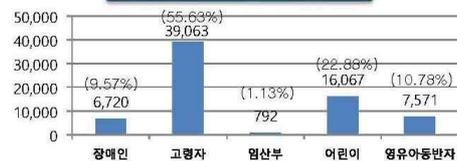
2. 교통약자 시설 현황

교통약자 시설 현황

- 2020년 기준 교통약자 시설은 총 **62개**로 조사되었으며 생활인원은 **1,589명**으로 조사되었음
- 이중 노인복지시설이 시설수의 약 48%, 수용인원의 약 54% 점유

구분	합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2015년	37	1,387	6	307	24	651	4	332	3	97
2016년	44	1,438	6	312	28	694	7	336	3	96
2017년	43	1,443	6	316	27	706	7	328	3	93
2018년	51	1,538	13	351	27	768	8	351	3	78
2019년	56	1,599	13	321	30	854	8	320	5	104
2020년	62	1,589	13	314	30	860	14	298	5	117
증가율(%)	10.88	2.76	16.72	0.45	4.56	5.73	28.47	-2.14	10.76	3.82

목포시 교통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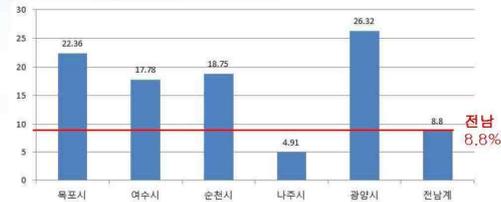
3. 특별교통수단 현황

저상버스 현황

- 목포시는 2021년 기준 시내버스 보유대수 161대(2023년:157대), 저상버스 36대로 도입율은 22.36%, 여수시가 32대, 광양시가 15대, 나주시가 8대로 나타났다
- 전남시 평균 도입율은 16.82% (124/737)

구분	버스대수	저상버스 대수	저상버스 도입율 (%)
목포시	161(157)	36	22.36(22.93)
여수시	180	32	17.78
순천시	176	33	18.75
나주시	163	8	4.91
광양시	57	15	26.32
전남전체	1,337	124	9.27

()는 2023년 기준 보유 대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현황

- 2023년 기준 목포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가 19대, 임차택시가 4대, 바우처 택시가 12대임

구분	특정차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비고
전남 계	180	11	223(235)	
목포시	19	4	(12)	2023년 현황
여수시	22	4	28	
순천시	22	-	27	
나주시	15	-	14	
광양시	12	-	21	
담양군	4	-	-	운영 계획중
곡성군	4	-	7	
구례군	4	-	7	
고흥군	6	-	14	
보성군	5	-	5	
화순군	7	-	10	
장흥군	8	-	-	
강진군	4	-	15	운영 계획중
해남군	7	3	17	
영암군	6	-	6	
무안군	11	-	8	
함평군	4	-	8	
영광군	5	-	6	
장성군	4	-	4	
완도군	4	-	20	
진도군	3	-	5	
신안군	4	-	3	

()는 2023년 기준 보유 대수, 기타지역은 2021년 기준

11

전남시군별 저상버스 노선수

- 운행 노선중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노선 비율은 전국 평균이 18.5%이나, 목포시는 20개 노선 중 5개 노선을 운행 25%로 전남 지역중 최대 노선 운영을 보임

구분	시내버스 노선수	저상버스 노선수	저상버스 운행노선비율(%)	
전국	9,121	1,684	18.5	
전남	계	341	30	8.8
	목포시	20	5	25.0
	여수시	61	9	14.8
	순천시	55	4	7.3
	나주시	177	6	3.4
광양시	28	6	21.4	



12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 목포시의 교통약자 이동 수단 중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도입 현황은 2022년 현재 19대임, 목포시 도입율은 76%임
- 현행 규정상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입 필요대수는 25대임(바우처, 임차 미포함)

시군	보행대수인정 장애인수	보행대수	운행대수	도입율(%)
계	38,064	241	182	75
목포시	3,733	25	19	76
여수시	4,628	31	22	71
순천시	3,874	26	22	85
나주시	2,370	16	16	100
광양시	1,901	13	12	92
담양군	1,007	7	4	57
곡성군	810	5	4	80
구례군	651	4	4	100
고흥군	1,926	13	6	46
보성군	1,069	7	6	86
화순군	1,238	8	7	88
장흥군	1,039	7	8	114
강진군	785	5	4	80
해남군	1,782	12	7	58
영암군	1,173	8	6	75
무안군	1,782	12	11	92
함평군	980	7	4	57
영광군	1,347	9	5	56
장성군	1,017	7	4	57
완도군	1,142	8	4	50
진도군	798	5	3	40
신안군	952	6	4	57

저상버스 배차간격 분석

• 저상버스 배차 간격은 **평일기준 33.8분**으로 타도시 대비 양호한 편임(전남 평균 37.1분)

구분	전체 배차간격(분) (시내+농어촌)	저상버스 운행노선(분)		시간비율 (일반-저상)
		저상 운행노선	저상 배차간격	
전국	평일	32.6	27.1	1:1.53
	토요일	37.5	30.0	1:1.48
	일요일	39.1	31.6	1:1.46
전남	평일	76.6	37.1	1:1.55
	토요일	76.6	43.2	1:1.65
	일요일	76.6	45.2	1:1.60
목포시	평일	44.1	33.8	1:1.50
	토요일	44.8	31.7	1:1.40
	일요일	44.3	45.6	1:1.63
여수시	평일	76.7	53.6	1:2.30
	토요일	77.3	57.1	1:2.38
	일요일	78.4	51.5	1:2.03
순천시	평일	66.4	21.2	1:1.23
	토요일	84.7	31.6	1:1.10
	일요일	86.7	34.8	1:1.16
나주시	평일	-	-	자료없음
	토요일	-	-	자료없음
	일요일	-	-	자료없음
광양시	평일	72.6	71.2	1:1.02
	토요일	79.1	67.3	1:1.08
	일요일	80.6	63.1	1:1.00

저상버스 충전소 설치 현황

• 저상버스 충전소는 1개소로 타도시 대비 부족(차량당 0.028대/차량)

구분	저상버스대수	충전소 수				차량당 충전소
		CNG	전기	수소	계	
전국	9,121	193	379	25	597	0.065
전남	계	341	6	8	14	0.041
	목포시	36	1	0	1	0.028
	여수시	32	2	0	2	0.063
	순천시	33	1	3	4	0.121
	나주시	8	1	2	3	0.375
	광양시	15	1	2	3	0.200



13

4. 교통수단(시내버스) 편의시설 조사

- 목포시 교통수단(시내버스) 조사대상 대수는 3차 168대에서 4차 157대로 11대 감소함
- 편의시설 조사는 3차를 기준으로 기타 버스회사 내부 자료 및 버스운전자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음

안내시설

- 3차 연도 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방송시설, 안내문자, 행선지 표지 등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

[자동안내시설(음성안내 방송시설)](방송여부)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문자 안내판(글자정보)]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행선지 표지]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승강구 시설

- 승강구 시설 중 승강구 폭 및 미끄럼방지시설은 차량 제조 시 설치되는 시설로 3차 계획 반영 모두 설치 된 것으로 판단됨
- 승강구 계단 색상은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명도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100.0% 설치 완료됨

[승강구 폭]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승강구 미끄럼방지]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승강구 계단 색상]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참고) 전국평균 설치율 98.9%

- 승강구 폭 : 0.8m 이상
- 승강구 계단 색상 : 명도차이
- 음성안내 : 방송여부 (※영어 방송은 제외)
- 문자안내 : 설치여부(위치, 글씨크기, 영문표기는 제외)
- 행선지 표지 : 위치 및 설치여부(식별가능은 제외)

14

내부시설

- 교통약자 좌석은 위치 및 설치 좌석은 3차 계획의 조사 시 설치 여부만 조사
- 4차 조사결과 교통약자 좌석 규모는 67대만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42.7% 수준이며 교통약자 자리 표시는 128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27대는 미설치됨
- 수직 손잡이는 3차, 4차 모두 100% 설치되어 있음

[교통약자 좌석 위치]

구분	조사대수	설치 여부	적합 대수			적합율
			적합	미적합	미설치	
3차	168대	168대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100.0%
4차	157대	157대	67	90	0	42.7%

참고) 전국평균 설치율 21.0%

[교통약자 자리 표시]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28대	27	0	81.6%

참고) 전국평균 설치율 76.6%

[수직 손잡이]

구분	조사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3차	168대	168대	0	0	100.0%
4차	157대	157대	0	0	100.0%

교통수단 편의시설 종합평가

- 교통수단 편의시설 주요 조사 항목 평가 결과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100% 적합
- 내부시설 등 교통약자 좌석 규모 및 교통약자 위치 표시만 100% 적합율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종합평가 결과 교통약자 교통수단 편의시설 설치 적합율은 82.42%임

[교통수단 편의시설 종합평가]

구분	구분	적합율 (%)	미적합율 (%)	미설치 (%)	비고
	문자안내판	100.0	0	0	
	목적지 표시	100.0	0	0	
	승강구 폭	100.0	0	0	
	승강구 미끄럼방지	100.0	0	0	
	승강구 계단 색상	100.0	0	0	(98.9%)
	교통약자 좌석 규모	42.7	57.3	0	(21.9%)
	교통약자 위치	81.5	18.5	0	(76.5%)
	교통약자 자리 표시	100.0	0	0	
	수직손잡이	100.0	0	0	
합계	종합평가(전국평균 적용)	82.42	7.68	-	전국평균

()는 전국 평균

15

버스정류장 및 차량 진입부 약자시설 조사

- 버스정류장은 여객시설 주변(목포역,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500m) 조사 적합율 낮은 편임
- 차량 진입부는 급변 계획 조사 포함으로 본 계획 조사결과임

[버스정류장 약자시설 기준 적합율]

구분	구분	턱낮음	활중 공간	동선 분리	점형 블록	선형 블록	안내 위치	경사 용칭	정보 버전
3차	적합/사례	13/64	29/64	19/24	6/64	6/29	32/38	3/38	10/44
	적합율(%)	20.3	45.3	29.7	7.8	17.2	84.2	7.9	22.7
4차	적합/사례	25/41	21/42	8/42	4/42	2/42	42/42	0/42	0/42
	적합율(%)	60.5	50.0	19.1	9.5	4.8	100.0	0.0	0.0

[여객시설 주변 차량 진입부 시설 기준 적합율(여객시설 주변)]

구분	구분	보도턱 낮추기	색상 및 용량	비고 (미설치)
전남	적합/사례	26/33	15/33	4/33
	적합율(%)	78.8	45.5	12.1
목포시	적합/사례	56/65	27/65	7/65
	적합율(%)	86.2	41.5	13.8

자료 : 본과업 현장조사

휠단보드 약자시설

- 휠단보드 약자시설은 음향신호기와 전이시간 표시기를 조사했음
-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전남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이시간 표시기는 전남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음향신호기 및 전이시간 표시기]

구분	구분	음향신호기 (설치율)	신호기 위치	전이시간 표시기	비고
전남 평균	적합/사례	7/49	10/10	6/9	
	적합율(%)	14.3	100.0	66.7	
목포시	적합/사례	8/17	11/11	6/11	
	적합율(%)	35.3	100.0	54.5	

주) 여객시설 3개소 주변 17개 휠단보드 조사

- 버스정류장 시설기준
 - 턱낮음 : 15cm이하
 - 활중공간 : 폭 0.8m 이상, 내부 폭 1.8m X 1.8m 이상
 - 동선분리 : 시각, 휠체어 통행 가능 여부
- 휠단보드 약자시설(터,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17개 대상)
 - 음향신호기 : 전체 조사 시설 중 설치율
 - 전이시간 표시기 : 신호등 설치 휠단보드 중 설치율

16

5. 여객시설

보행 접근로

- 여객시설은 목표역, 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을 조사하였으며 보행 접근로는 4개 항목 모두 적합하게 설치됨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유료폭	평균로 유료폭 2m 이상	2	0	0	4	0	0	1	0	0
기동기	평균로 좌측구간 1/8이하	2	0	0	4	0	0	1	0	0
재질및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	0	0	4	0	0	1	0	0
높이차이 제거	단차가 없이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2	0	0	4	0	0	1	0	0
보행접근로 평균		100.0	-	-	100.0	-	-	100.0	-	-

자료 : 본과업 조사

출입구(문)

- 출입구 조사 11개 항목 9개 여객시설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함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통과수호책	0.9m 이상 확보	2	0	0	4	0	0	1	0	0
전면활판공간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2	0	0	4	0	0	1	0	0
출입구 옆 통행공간	0.6m 이상 확보	2	0	0	4	0	0	1	0	0
충당구간	높이차별 두어서는 안됨	2	0	0	4	0	0	1	0	0
	미닫이문	문지방 또는 솜이 깔아 설치	2	0	0	4	0	0	1	0
문형태	미닫이문	도어제크 설치되고 3요아상 개폐	0	0	2	0	0	4	0	0
	자동문	충돌한 개문시간과 감지범위	2	0	0	4	0	0	1	0
손잡이	충당자원이 비워진으로부터 0.8m~0.9m사이에서 설치	2	0	0	4	0	0	1	0	
공중시무실 점자표지판	공중시무실 출입구 및 벽면 1.5m 높이 설치	1	0	0	0	0	4	0	0	
충돌물류	출입문 전면 0.3m 설치	1	0	0	4	0	0	0	0	
호출벨	자동문 옆 설치	0	0	2	0	0	4	0	0	
출입구(문) 평균		100	-	-	100	-	-	100	-	-

자료 : 본과업 조사

위생시설

[장애인 일반사항]

- 장애인 일반사항(위치 및 점형 블록 등)의 설치율은 버스터미널은 83.3%, 여객선 및 목표역은 75.0%로 조사되었음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좌상설위치	장애인이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점진블록 확보	2	0	0	3	1	0	1	0	0
대변기 남측구분설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좌상설이 남측 구분선과 인 1미터선 설치	2	0	0	3	1	0	1	0	0
바닥면 높이차이	20m이하의 인차	1	1	0	4	0	0	1	0	0
벽면바닥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2	0	0	4	0	0	1	0	0
점형블록	상대인 상용 측정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1	1	0	1	3	0	1	0	0
점자표지판	출입구 옆 벽면에 남측용, 여객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1	1	0	3	1	0	0	1	0
장애인 화장실 평균		75.0	25.0	-	75.0	25.0	-	83.3	16.7	-

자료 : 본과업 조사

[장애인 대변기]

- 장애인 대변기는 평균 83.3% 설치율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 장애인용터미널이고 좌상설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1	0	0	4	0	0	1	0	0
수평선정미	장애인이 수평선정미 설치	1	0	0	3	0	1	1	0	0
세정장치, 휴지장치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휴지장이 높은 대변기 양은 상에서 이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1	0	0	3	1	0	1	0	0
사용여부 설비	대변기 활용가능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1	0	0	2	0	2	0	0	1
장애인 대변기 평균		100	-	-	75.0	62.5	18.75	75.0	-	25.0

자료 : 본과업 조사

17

[장애인 소변기]

- 장애인 소변기는 전체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외 대부분 미설치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수평선정미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바닥면으로부터 0.65m 내외 좌우측설치(간격:0.8m내외)	0	0	1	2	0	2	0	0	1
수직선정미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길이:바닥면으로부터 0.25m 내외	0	0	1	2	0	2	0	0	1
장애인 소변기 평균		-	-	100.0	50.0	-	50.0	-	-	100.0

자료 : 본과업 조사

[장애인 세면대]

- 장애인 세면대 설치율은 76.7%임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설치높이	상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0.85m이상 (휠체어이용자가 올라갈수 있도록 공간확보)	1	0	0	3	1	0	1	0	0
수도꼭지형태	사용하기 쉬운 형태	1	0	0	4	0	0	1	0	0
수평선정미	양옆에 설치 (가운뎃식 세면대 제외)	1	0	0	3	0	1	1	0	0
점자표지	수도꼭지 점자표지	0	0	1	0	0	4	0	0	1
거울	하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세로길이:는 0.86m이상	1	0	0	4	0	0	1	0	0
장애인 세면대 평균		80.0	-	20.0	70.0	5.0	25.0	80.0	-	20.0

자료 : 본과업 조사

안내시설

- 장애인 안내시설은 점자블럭, 안내 및 유도시설, 경보 피난시설 등 대상으로 조사
- 점자블럭은 설치적합률 72.2%임, 안내 및 유도시설은 설치율은 50%, 경보 피난시설의 적합율은 여객선터미널 외 미설치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점자블럭	점자블럭	1	0	0	1	0	1	1	0	0
	규격 및 색상	0.3m x 0.3m 노란색	1	0	0	1	0	1	1	0
	설치방법	점형블록:주요시점 및 위험지점 0.3m전면 설치 선형블록: 유도방향터미널 평행하게 연속 설치	1	0	0	1	0	1	0	1
안내도 및 유도시설	안내도	점자를 병기한 안내판 설치	1	0	0	1	0	1	0	0
	유도 시설	유도선호광지 설치	0	0	1	1	0	1	1	0
경보 피난시설	안내도 및 유도시설 평균	50.0	0	50.0	50.0	-	50.0	50.0	-	50.0
	화라	화라경보장치설치	1	0	0	0	0	2	0	0
	경보 장치	시각경보장치설치	1	0	0	0	0	2	0	0
	경보 장치	경보장치:시각경보장치	1	0	0	0	0	2	0	0
안내시설 평균		100.0	0	-	-	0	100.0	-	-	100.0
안내시설 평균		83.3	-	16.7	33.4	-	66.6	33.3	-	81.1

자료 : 본과업 조사

18

보안검사장 대기장소 편의시설

- 보안검사장의 편의시설은 목표역 및 여객선 터미널 **66.6%** 적합
- 임신부 휴게시설은 목표역은 **100.0%**, 여객선 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은 **미설치**

구분	설치 기준	목포역(개소)			여객선터미널(개소)			버스터미널(개소)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	미적합	미설치	
보안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폭 0.9m이상) 설치	0	0	1	0	0	1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0.9m이상	1	0	0	1	0	0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1/120이하의 기울기 확보	1	0	0	1	0	0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평균		66.6	-	33.4	66.6	-	33.4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휴게시설 위치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 접근가능 위치	1	0	0	0	0	2	0	0	1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별도 설치	1	0	0	0	0	2	0	0	1
	전면 활동공간	1.4m x 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1	0	0	0	0	2	0	0	1
	기저귀 교환대 높이	높이0.85m-0.65m 설치	1	0	0	0	0	2	0	0	1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높이 0.65m이상 길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	0	0	0	0	2	0	0	1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100.0	-	-	-	-	100.0	-	-	100.0
기타시설 평균		83.3	-	16.7	33.3	-	66.7	-	-	100.0	

자료 : 본과업 조사



6. 보행환경 실태조사

보도시설

- 조사 대상은 여객시설 3개 시설 주변 500m로 보도 주요 4개 항목 **적합율은 95.88%로 조사됨**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유효폭	432	376	56	다수	87.04	12.96
넓게	511	505	6	-	98.83	1.17
높이차	627	621	6	-	95.69	4.31
가로수 높이	130	128	2	-	98.46	1.54
평균	1700	1630	70	-	95.88	4.12

자료 : 본과업 조사

점자블럭

- 점자블럭은 조사사례 769개 중 적합시설이 392개로 **적합율은 50.98%임**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횡단보도 위치 안내 앞	312	216	62	34	69.23	30.77
임시 대기용 안전시설 앞	339	176	85	78	51.92	48.08
음향신호기 앞	118	0	29	89	0.0	100.0
평균	769	392	176	201	50.98	49.02

자료 : 본과업 조사

보도 차량 진입부 시설

- 보도의 차량진입부 시설 조사 사례는 113개소로 **적합율은 69.03%로 조사됨**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차량진입 턱낮춤	113	92	21	0	81.42	18.59
색상 및 질감	113	64	49	0	56.64	43.36
평균	226	156	70	0	69.03	30.97

자료 : 본과업 조사

진입차량 말뚝(블라드)

- 차량진입 억제 말뚝 적합율은 **34.48%로 낮음(전국평균 71.3%)**

구분	조사사례	적합	미적합	미설치	적합율(%)	미적합율(%)
시설규격(지정수)	29	18	11	0	62.07	37.93
설치간격	29	12	17	0	41.38	58.62
점형블록	29	0	0	29	0.0	100.0
평균	87	30	28	-	34.48	65.52

자료 : 본과업 조사

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 시설물 현황 조사결과		
<p>•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96개소와 노인보호구역 4개소로 기존 총 100개소로 운영 중이었으나 2022년 조정하여 총 63개소로 통합 조정</p>		<p>• 보호구역 시설 조사 결과는 통합전 점수조사로 세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p>		
<p>[특표시 보호구역 조정(통합, 축소, 확대) 기준]</p>				
구분	정비주요내용	구분	보호구역(66개소)	비고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지정으로 두 보호구역간 거리가 200m 이내인 경우(최대 500m) 어린이 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 거리 100m 이내인 경우 	통합 표지 (293EA)	276	
축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양쪽 지정 시 편측 축소 신호등 2개 이상 교차로 초과 지정 시 축소 통약 특성 시 차량이동이 주 교통수단인 경우 축소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기준(100명)의 50% 미만인 경우 축소 기타 민원 및 주차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택과 	가로형	17	
		세로형	19	
		보호구역해제	28	
		보호구역주위(133)	46	
		보호구역지시(324)	31	
		속도제한(224)	126	
		주정차(218, 219)	69	
		과속방지(129)	158	
		기타표지	278	
		제한 구형(EA)	29	
		속도 신형(518)	263	
		보호구역글씨(EA)	33,783	
		주정차 1선(m)	5,566	
		금지 2선(m)	2,045	
		전면포장(m)	8,438	
		부분포장(m)	134	
		일반(EA)	60	
		고원식(EA)	31	
		신호등(EA)	8,124	
		웬스(m)	60	
		반사경(EA)	75	
		CCTV(EA)	225	
		기타(EA)		

[보호구역 조정 결과]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96개소	58개소	-38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5개소	+1개소	
합계	100개소	63개소	-37개소	



제3장 3차 계획 성과평가

1. 제3차 계획 검토

제3차 계획 검토

- 3차 계획은 4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됨

구분	사업내용	2017년	2022년
교통수단 정비	저상버스도입	23대	45대
	저상버스 운행노선 확대	4개 노선	22개 노선
	특별교통수단 확대	14대	14대
	교통약자 자원센터 운영	1개소(22명)	1개소(22명)
보호구역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개소	34개소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0	107개소
보행환경 정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0	5개소
	보도정비(포장)	-	1식
	점자블럭 확대	-	200m
	위급블라드 정비	-	500
	음향신호기	299	379
	산여시간	413	453
	횡단보도 신호 조정	-	1식
	가로등 정비 보수	-	1식
	투광기 설치 사업	138	163
	육교철거 사업	11개소	+4개소
	3D횡단보도	-	12개소
버스정류장	BIT	120	240
	무장애정류장	1개소	30개소

2. 교통수단 평가

저상버스 도입을 평가

- 목표시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45대 이었으나 36대를 도입 도입율 80%

구분	2017년 운행대수	2022년 목표	도달대수	도달율(%)
저상버스 대수	23대	45대	36대	80.00%

- 국가도입 목표 도달률 비교
- 변경법 기준의 62.00%, 기존법의 33.33%

구분	확보의무대수	버스대수	확보의무대수	확보대수	실확보율
기존법 기준	33.33%	161대	54대	36대	66.67%
변경법 기준	62.00%	161대	100대	36대	36.00%

저상버스 운행 노선 확대

- 2022년 운행노선수는 전체 노선이었으나 실제 5개 노선으로 도달율은 22.73%임

구분	2017년 운행노선	2022년 도달 목표	2022년 운행노선	도달율(%)
저상버스 운행노선	4개 노선	22개 노선 (전노선)	5개 노선	2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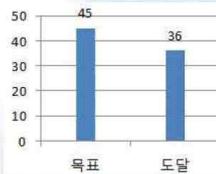
23

전국 저상버스 노선 및 운영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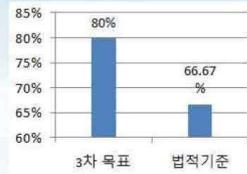
- 목표시는 타지역 보다 높은 노선 운행비율임

구분	전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노선운영율	18.6%	25.0%	14.8%	7.3%	3.4%	21.4%

[저상버스 도입 평가]



[도입율 비교]



특별교통수단 운영

- 3차연도 계획은 도달 대수로 제시
- 특별교통수단은 22년 도달 19대로 도달율 135.7%임

구분	2017년 운행대수	2022년 목표	2022년 도달	도달율(%)
특별교통수단	14대	14대	19대	135.7%

- 관련법 개정으로 보행 어려운 150당 1대로 해당 기준 적용시 도달율은 78%(부족 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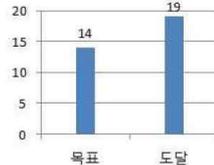
구분	보행중장애인	법정대수	운행대수	법정 도입율
특별교통수단	3,773명	25대	19대	76%
비고	2022년 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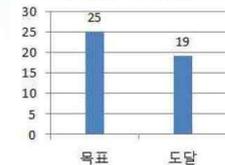
- 이동지원센터는 도입 운영중. 운영인원은 22명이었으나 현재 22명으로 도입율 100%임

구분	도입목표	도입	도입율	비고
이동지원센터	1식(22명)	1식(22명)	100.0%	
비고				

[도입대수 평가]



[이용자수 기준 평가]



24

음향신호기 설치

- 음향신호기는 2022년 목표대수가 379대임(확인중)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음향신호기	299	379(+80)	30.4(+5)	6.25%

잔여시간 표시기

- 잔여시간 표시는 2022년 453대였으나 2022년 (확인중)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잔여시간	413	453(+40)	850(+437)	992.50%

투광기 설치 사업

- 투광기 설치 사업은 455개소가 설치되어 1,268.0% 도달

구분	2017년	2022년 목표	2022년 도달	도달율
투광기 설치사업	138	163(+25)	455(+317)	1,268.0%

육교 철거 사업 평가

- 육교 철거 사업은 최종 철거 목표 15개소 였으나 그대로 유지

구분	2017년 철거수	2022년 누적 철거수	2022년 실 철거수 누적	도달율
육교 철거 사업	11개소	15개소(+5)	11개소(+0)	0.0%

3D 횡단보도 설치

- 3D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구분	2017년	2022년 목표	2022년 설치	도달율
3D 횡단보도	0개소	12개소	0개소	0.0%



5. 버스정류장

BIT

- BIT 설치 사업은 3차연도 205개소를 확보 70.83% 도달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BIT 설치	120	240(+120)	205	70.83%

무장애 정류장

- 무장애 정류장 설치 사업은 별도 사업은 진행되지 않음

구분	2017년 설치대수	2022년 목표대수	2022년 도달대수	도달율
무장애 정류장	1개소	3개소	없음	0.0%



- 승객 대기 알림표시등
- 버스승강장 표지도영(야간)
- 태양광 LED 조명등
- 및 모션감지카운터
- 교통정보안내(해우)
- 휠체어 이용자석 표시
-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 시각장애인 승차지대(시
- 인)규광반사재인식
- 휠체어 승객차구간표시

6. 종합평가

- 제3차 종합평가 결과 상시 시행 정비 포함시 82.26% 도달로 평가됨

구분	사업내용	2022년 목표	2022년 도달	도달율(%)	전체(%)
교통수단 정비	저상버스도입	45대	36대	80.0	84.61
	저상버스 운행노선 확대	22개 노선	5개 노선	22.73	
	특별교통수단 확대	14대	19대	135.70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	1개소(22명)	1개소(22명)	100.0	
보호구역 정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34개소	34개소	100.0	75.00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10개소	5개소	50.08	
보행환경 정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5개소	1개소	20.00	86.02 (100초과 100%로 받)
	보도정비(포장)	1식	1식	100.00	
	점자블럭 확대	200m	1식	100.00	
	위규블라드 정비	500	1식	100.00	
	음향신호기	379	304	6.25	
	잔여시간	453	850	992.50	
	횡단보도 신호 조정	1식	1식	100.0	
	가로등 정비 보수	1식	1식	100.0	
	투광기 설치 사업	163	455	(1250)	
	육교철거 사업	+4개소	0	0.0	
3D 횡단보도	12개소	0	0.0		
버스정류장	BIT	240	205	70.83	35.42
	무장애정류장	30개소	0	0.0	

3. 보호구역 정비 평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2년 전체 정비 계획이 수립됨
- 확인결과 법령 정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 보강
- 3차 계획은 34개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구분	2022년 정비목표	2022년	도달율(%)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4개소	전체 정비 (용역시행)	100.0%	기존대비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초 96개소에서 통폐합58개소(폐지 및 통합 신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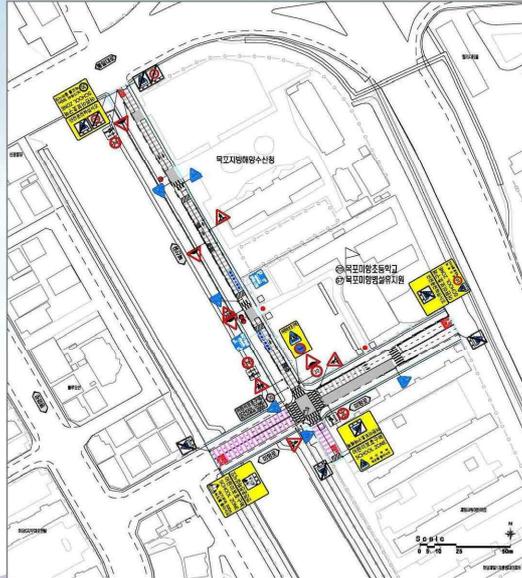
구분	정비			비고
	당초	조정	최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96개소	-38개소	58개소	

노인 보호구역 정비

- 노인보호구역은 2017년 당시 0개소에서 10개소 지정률 목표를 하였으나 최종 5개소가 지정되어 도달률 50%

구분	2017년 지정수	2022년 목표지정수	2022년 지정수	도달율(%)
노인보호구역 정비	0	10개소	5개소	50.0%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례



4. 보행환경 정비 평가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 보행환경 개선지구는 2022년 지정하고 1개소는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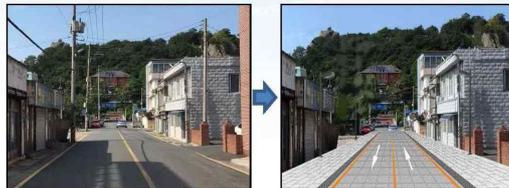
구분	2022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목표	2022년 사업시행	사업시행율	비고
사업시행	5개소	1개소	25%	
지구지정	1식	1식	100%	
비고				

보도정비 사업

- 목포시 보도정비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 점자블럭 추진 사업은 매년 추진이 이루어짐
- 위규블라드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도 교체 사업 시행시 이루어짐
-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은 경찰서에서 개선
- 가로등 정비 사업 역시 매년 시행

보행환경 개선 사례

[조사 사례 이미지 : 제안서 내용]





IV. 분야별 정비계획

제4장 분야별 정비계획

1. 교통약자 정책의 통합과 변화 검토 (4차 국가교통약자 계획)

4차 국가계획 비전 및 목표

구분 정비계획 수립

비전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간 연계성 강화
-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 문화 정착

4차 국가계획 주요 목표

추진전략	주요목표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의 도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 도입률) 시내버스 62.2% ~(서울)100%, (광역시) 70%, (도지역) 52% •(마을버스) 49.0%, (농어촌버스) 42.0%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26년까지 전국 100% 달성 및 유지
물리적 장애를 없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보행환경) 83.0% -(버스정류장) 특별광역시 74.9%, 도지역 53.0% -(철도) 철도차량 99.0%, 도시광역철도차량 98.0% -(역사) 철도 90.3%, 도시광역철도 93.4% -(항공) 항공기 90.0%, 공항어객터미널 92.0% -(해상) 여객선 81.0%, 여객선터미널 92.0%
시스템적 장애를 없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행정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전국 169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자치도) 협의체 구성 •교통수단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심리적 장애를 없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무원대상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실례관리체계 마련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국민 참여형 인식개선 행사 개최

분야별 교통약자 미래성

구분	2020년	주요내용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 가능한 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2%(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 •(마을버스)49.0% (농어촌버스) 42.0%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의버스 확충 •저상 광역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신규도입 또는 대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 의무 •차량개발 및 시범운영 진행 예정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광역버스 개발
특별교통수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 보행상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는 전국 이동지원센터 어디서나 한번만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 이용가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이동지원센터 연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보도)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2.8% -{버스정류장}특별광역시 74.9%, 도지역 53.0% -{철도}철도차량 99.3%, 도시광역철도차량 98.0% -{역사}철도 90.3%, 도시광역철도 93.4% -{항공}항공기 90%, 공항어객터미널 92% -{해상}여객선 81%, 여객선터미널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정류장의 접근, 보행환경, 버스정류장의 시설 개선 •환승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비 •각 교통행정기관에 부여되는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여 이동편의시설 개선 노력
교통약자 유형별 길 찾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결과DB의 민간데이터 연계를 통한 길 찾기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시설 접근경로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현황자료를 활용한 교통약자 특성(시각장애, 휠체어,유모차 이용 등)별 길 찾기 서비스 제공

2. 계획목표설정

제4차 국토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 전략	① 목표치 여건 반영	② 국가, 전년도 계획의 연계성 확보	③ 계획의 지속성 및 일관성	④ 차별 없는 교통체계 구축
	· 고령자 증가 등 사회 여건	· 국가계획 목표 달성률 검토	· 이전 추진 사업의 연계	· 국내, 외 추진사업 반영
	·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 국가계획 주요 사업 반영	· 일관성 있는 중장기 추진	· 제도 개편 등 추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 전담여건을 고려한 연계 방안	·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성 유지	· 인식 개선 방안

비전

지속가능한 교통약자 시설의 확충

교통약자 증가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지속가능 기반시설 확충

목표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전략

- ① 교통수단 등 이동관련 교통약자 인프라 구축
- ② 사람중심, 교통약자중심도시 교통기반시설 확충
- ③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정 시설 개선
- ④ 교통약자시설 및 제도의 운영개선

1

- 교통수단의 개선 추진
- 저상버스 도입 확충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 교통이용수단 지원체계 개선

2

- 교통약자, 보행자를 위한 기초시설 확보
- 비규격, 위규시설의 전반적인 개선 추진
- 교통약자 중심 운영 체계 개선(신호 및 청단시설등)
- 기타 노인, 장애인수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3

- 보행(보도)환경의 지속적 개선 추진
- 교통약자관련 도시기반시설 확충
- 교통약자 참여형 계획수립 및 개선
- 기타 Barrier Free 사업의 단계적 추진

4

- 교통약자시설 모니터링 강화
- 이동지원 센터 합리화 등
- 각종 교통약자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 개선

31

3. 교통약자 수요예측

장애인수 예측 모형 및 예측 결과

· 장애인수는 -2.46% 감소 예상

구분	예측모형	예측 결과(명)	
		연도	예측값
성매입 수 예측모형 및 예측 결과	Y=α+βX (R=0.99) (R ² =0.98)	2021년	6,720
		2022년	6,626
		2023년	6,457
		2024년	6,289
		2025년	6,121
		2026년	5,954
		2027년	5,786
		증가율	-2.46%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예측 모형 및 예측 결과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는 전국 증가율을 적용 산정

구분	예측모형	년도	예측 결과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예측모형 및 예측 결과	적용모형은 전국 임산부 (+1.5%) 및 영유아동반자 (-5.8%)증감률을 적용	2021년	792	7,571
		2022년	804	7,132
		2023년	816	6,718
		2024년	828	6,329
		2025년	841	5,962
		2026년	853	5,616
		2027년	866	5,290
		증가율	+1.5%	-5.80%

고령자수 예측 모형 및 예측 결과

· 고령자수는 3.17% 높은 증가

구분	예측모형	예측 결과	
		연도	예측값
고령자 수 예측모형 및 예측 결과	Y=α+βX (R=0.99) (R ² =0.99)	2021년	39,063
		2022년	40,435
		2023년	41,769
		2024년	43,104
		2025년	44,438
		2026년	45,773
		2027년	47,108
		증가율	3.17%

어린이수 예측 모형 및 예측 결과

· 어린이수는 -1.48%의 감소 예상

구분	예측모형	예측 결과	
		연도	예측값
어린이 수 예측모형 및 예측 결과	Y=α+βX (R=0.84) (R ² =0.70)	2021년	16,067
		2022년	16,170
		2023년	15,874
		2024년	15,579
		2025년	15,283
		2026년	14,987
		2027년	14,692
		증가율	-1.4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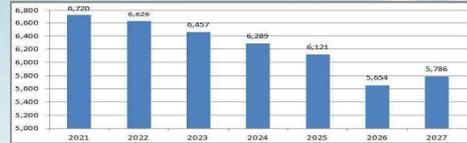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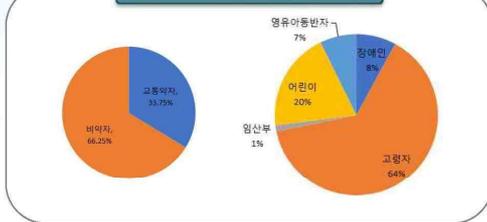
전체 교통약자수 예측

- 전체 교통약자수는 2021년 70,213명에서 2026년 72,883명으로 증가, 인구 대비 약자 비율은 32.12%에서 33.75%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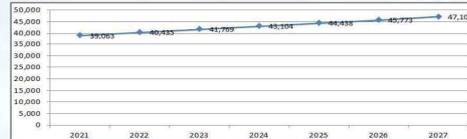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증가율
인구	218,589	216,939	217,256	217,573	217,890	218,199	218,508	-0.01%
장애인	6,720	6,626	6,457	6,289	6,121	5,654	5,786	-2.46%
고령자	39,063	40,435	41,769	43,104	44,438	45,773	47,108	3.17%
임산부	792	804	816	828	841	853	866	1.50%
어린이(6~12세)	16,067	16,170	15,874	15,579	15,283	14,987	14,692	-1.48%
영유아동(0~5세)	7,571	7,132	6,718	6,329	5,962	5,616	5,290	-5.80%
약자계	70,213	71,167	71,634	72,129	72,645	72,883	73,742	0.82%
인구대비약자비율%	32.12%	32.81%	32.97%	33.15%	33.34%	33.40%	33.75%	0.83%

- 인구는 목표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연증가를 적용(2020-2025:0.15%, 2026-203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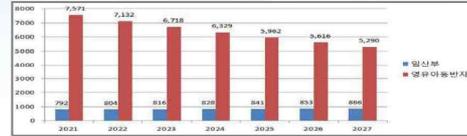
교통약자수 예측(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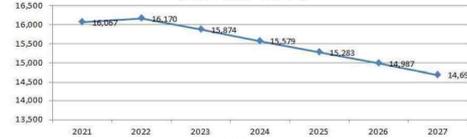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33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정비

저상버스 도입

- 제4차 국가계획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도입율은 62%임
- 목표시 의무 대수는 100대(추가 + 64대 필요)
- 대폐차 차량 고려 2026년까지 78대가 차량연한에 도달, 의무대수 100% 도입 가능

[목포시 저상버스 도입 목표]

구분	2022년 운행대수	2026년 목표대수	추가필요대수	법적기준
저상버스 도입	36대	100대	+64대	• 시내버스 : 62% • 목포마을버스 : 49%

[대폐차 고려 저상버스 도입 규모]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대폐차대수	2대	11대	16대	26대	23대	+78대
누적대수	36대	47대	63대	89대	112대	-

중형 저상버스



34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은 2026년까지 100% 도입의무화 됨
- 목표시 2022년 보행장애인은 3,733명이며 수요예측 결과 2026년 3,877명으로 예측됨

구분	보행중장애인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용자예측	3,733	3,768	3,804	3,840	3,877	수요 대응
소요대수	25대	25대	25대	26대	26대	1/150명

- 현재 보유대수는 19대로 추가 확보 7대 필요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추가확보	-	1	2	2	2	7
누적대수	19	20	22	24	26	-

바우처 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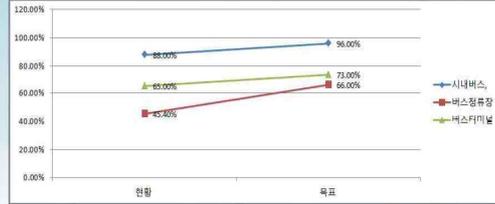
- 전남도의 핵심 추진 사업인 바우처 택시는 2026년까지 13대 운행 유지

구분	2022년	2026년 목표	비고
바우처 택시	0	12	현재 운행대수 유지
임차 택시	4	4	현재 운행대수

교통약자수단 편의시설 정비

- 교통수단의 기준 적합율은 시내버스 96%, 버스정류장은 66%(턱낮춤) 도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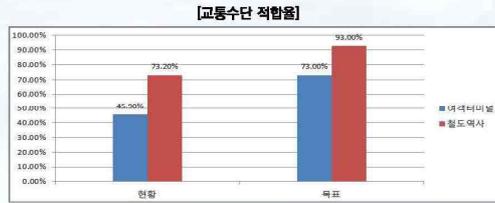
구분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비고
현황	89.6%	59.5%	본과업 조사치
목표(2026)	96%	66%	



여객터미널 정비

- 여객터미널은 평균 73% 설치율 목표

구분	설치율	비고	
		현황	2026년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73%	(국가평균)
	여객선 터미널	45.92-69.93	92% (국가평균)
	철도역사		93% (국가평균)



버스승강장 및 BIT

구분	버스정류장 현대화	무장애승강장	BIT 설치
2027년 추가정비 목표	매년 10개소	매년 3개소	매년 10개소



5. 시내버스 약자시설 확충

- 시내버스 약자시설은 안내시설, 승강구 등 설치율 100% 도달 목표
- 다란 음성안내 영어 방송 도입율은 50.0%, 문자표시는 100.0% 목표

안내시설

- 안내시설은 현재 100%이나 그대로 유지
- 다란 방송어부시 영어방송은 50% 도입, 영문 목적지 표시는 100%

[자동안내시설(방송시설)]

구분	운영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4차(설치)	157대	157대	-	-	100.0%
비고					

[문자 안내판(글자정보)]

구분	운영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4차(설치)	157대	157대	-	-	100.0%
영어방송	157대	79대	-	-	50.3%

[목적지 표시]

구분	운영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4차(설치)	157대	157대	-	-	100.0%
영문표시	157대	157대	-	-	100.0%

내부 시설

- 약자좌석은 모두 1/3이상, 위치는 출입구 쪽 설치 100% 설치

구분	약자좌석 규모	약자좌석 위치	수직손잡이
설치 대수	157	157	157
설치 적합	157	157	157
설치율	100.0%	100.0%	100.0%

승강구 시설

- 승강구 시설 중 미끄럼방지 포장 및 계단 색상은 100% 도입
- 승강구 폭은 현재 100%

[승강구 폭]

구분	운영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4차	157대	157대			100.0%
비고					

[승강구 미끄럼방지]

구분	운영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4차	157대	157대			100.0%
비고					

[승강구 계단 색상]

구분	운영대수	설치(적합)	미설치	미적합	적합율
4차	157대	157대			100.0%
비고					

6. 버스정류장 정비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 저상버스 이용 확대 반영 무장애 정류장 매년 2개소 이상, 총 12개소 설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신설	-	3	3	3	3	12

- 버스정류장 중 정주시 166개소 매년 10개소씩 유개로 정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버스정류장 정비	정주시:166 유개:77 방풍:284	10	10	10	10	40
비고	합계:543					

BIT 설치

- 현재 설치를 고려 매년 10대씩 설치율 3.8% → 4.5% 목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비고
BIT 누적 대수(개)	205	216 (+10)	225 (+10)	235 (+10)	245 (+10)	245 (+40)	매년 10대씩 추가 설치
설치율(%) (543개소)	3.8	4.0	4.1	4.3	4.5	-	

버스정류장 약자 접근성 개선

- 버스정류장 약자 접근시설 설치율 현재 30.36%에서 50.38% 직합율 상향

구분	2022년 현행 설치율(직합율)	2026년 목표	증감
턱낮출 정비	59.5%	83.0%	
활동공간 확보	50.0%	70.0%	
등선분리 (시각, 휠체어)	19.1%	40.0%	
점형블럭 설치	9.5%	50.0%	
선형블럭 설치	4.8%	20.0%	
안내시설 위치	100.0%	100.0%	
점자 및 음성	0.0%	20.0%	
정보제공 버튼	0.0%	20.0%	
합계	30.36%	50.38%	

37

7. 보호구역 표준화 정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 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10개소 목표

구분	현행	2027년	증감
어린이보호구역	58개소	58개소	0
노인보호구역	5개소	15개소	+10
합계	63개소	73개소	+10

보호구역 추가 지정

- 2022년 보호구역 정비(100개소→63개소) 및 정비기준 마련
- 2027년까지 통합 자질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정비 4대 원칙(조사 문제점)

- 통합표지 누락, 위치 부적절 지점 아설
- 해제표지 불합리 지점 개선(연속 제한구역 불합리 다수)
- 주정차금지 2중 실선 확대
-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특히 노면표시 위치) 정비
- CCTV 추가 확보

보호구역 소요 물량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59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	계
통합 표지 (487EA)	가로형	346	30
	세로형	107	4
	보호구역해제	171	12
	보호구역주요(133)	25	-
	보호구역지시(324)	54	24
	속도제한(224)	30	-
	주정차(218, 219)	114	1
	과속방지(129)	135	6
	기타표지	158	2
	노면 표시 (37,393EA)	제한	구형(EA) 189
속도		신형(518) 298	48
보호구역클래(EA)		467	47
주정차		1선(m) 162	-
금지		2선(m) 33,586	2,596
미끄럼 방지 (12,785EA)	전면포장(m)	2,756	-
	부분포장(m)	9,119	910
횡단 보도 (213EA)	일반(EA)	150	3
	고원식(EA)	57	3
	신호등(EA)	28	-
교통 안전 시설 기타 (8,946EA)	헬스(m)	8,381	80
	반사경(EA)	55	-
	CCTV(EA)	78	-
	과속방지턱(EA)	204	14
통학버스승하차(EA)	105	-	

38

8. 보행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보행환경 지구 개선사업	1개소	-	1개소	-	1개소	3개소
비고	완료					

차량진입구 시설 개선

- 차량진입구 및 보도턱 및 폭 기준 표준화로 적합율 평균 80.0% 목표 정비

구분	현행 설치율(%)	목표 설치율(%)
진입구 보도턱 조정 위치, 보도폭 유지	81.42%	90.0%
진입구 생석 및 질감 다르게 설치	56.64%	70.0%

보도턱 및 보도 재포장 사업 상시 추진

- 보도턱 재포장 사업 지속 추진(상시 정비 사업)

구분	현행 설치율(%)	목표 설치율(%)	비고
보도정비 사업	상시정비 지속추진	정비기준 동일	

보도 폭원 시설 기준 미흡구간 정비 추진

번호	노선명	기종점	총연장	2.0m미만 보도면장	교행구역 설치(개소수)	비고
1	해안로	대3-13	10.96	0.20	3개소	
2	북항로	대2-4, 대9-13, 중23	4.46	0.04	2개소	
3	청오로	대3-3, 대1-2	7.60	0.10	1개소	
4	고해대로	대1-6, 대1-7	15.04	0.06	2개소	
5	중앙로	대1, 대4, 대4, 중1	17.02	1.80	37개소	
6	용당로	대2-2, 대3-4	8.02	0.10	2개소	
7	양율로	대2-3, 대3-8	14.16	0.30	7개소	
8	신정로	대3-7, 대1-5	6.30	0.26	6개소	
9	삼밭로	중3-5, 중3-6	4.80	1.55	32개소	
10	수문로	중2-2	2.90	0.30	5개소	
11	삼학로	대1-1, 대3-1	7.90	0.46	10개소	
12	하당로	대3-5, 중1-25	5.56	0.60	12개소	
13	문화의거리	대3-12	3.86	0.30	6개소	
14	미항로	중1-32, 중1-34, 대3-16	4.40	0.60	12개소	
15	추광로	광3-2	2.32	0.06	1개소	
16	영신강하구로	대1-3	8.86	0.10	2개소	
17	부흥로	중1-19	2.38	0.10	2개소	
18	신흥로	중1-18	2.24	0.15	3개소	
19	석현로	대2-5, 대3-28	2.42	0.30	6개소	
20	육암로	중1-20	3.48	0.20	4개소	
21	유통로	대3-29	1.60	0.05	1개소	
총21개 노선			160.74	7.63	154개소	

※ 교행구역 설치 개소수는 50m마다 1.5mx1.5m 대피소 설치

점자블럭

- 점자블럭은 설치율이 낮아 보도 연 100m 씩 중점 설치 추진(여객시설 주변 중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점자블럭 설치 계획	-	100m	100m	100m	100m	400m

위규 블라드 교체 사업

- 현장 시설기준 미만 다수 존재, 위규 블라드 교체 사업 추진(연50개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블라드 설치 계획	-	50개	50개	50개	50개	200개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해 음향신호기 연 10개소씩 추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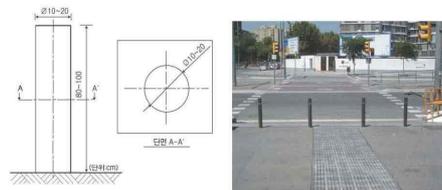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비고
설치 개소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누적 개소수	304	314	324	334	344	-	

잔여시간 표시기

- 보행자 사고 감소 및 정보제공을 위해 잔여시간 표시기 10개소씩 추가 설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비고
설치 개소수	-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누적개수	850	860	870	880	890		

위규블라드 교체사업 추진



투광기 설치

• 보행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투광기 연10개소씩 신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투광기 설치(개소)	-	10	10	10	10	40
누적 개소수	455	465	475	485	495	-

기로동



투광기



V. 소요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구분	현황 (2021)	목표 (2026)	추기도입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백만원)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계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36	100	64	6,560	3,280	3,280	13,120	대당205
	특별교통수단(청, 굴)	39	46	7	168	84	84	336	대당48
	바우처택시(운영비)	12	12	0	-	128	128	248	운영비
	임차택시	4	4	4	-	-	150	150	운영비
	소계(4개 사업)	91	162	71	6,728	3,492	3,642	13,854	
이동지원센터 확충	1식	1식	1식	250	250	7,000	7,500	년 1,500	
교통수단정비 및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약자시설 정비(내부시설)	1식	1식	1식			100	100	
	시내버스 승강장 약자 접근성 개선	1식	1식	1식			500	500	
	무장애 버스 정류장	0	12	12		54	126	180	대당15
	버스정류장 현대화(유개화)	361(유개)	401	40			1,600	1,600	개당40
	BIT 설치	205	245	40			320	320	개당8
	소계(5개 사업)	-	-	-		54	2,646	2,700	
여객시설 정비	여객터미널 정비	1식	1식	1식			200	200	
보호구역 정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63개소	73개소	10개소			250	250	
	보호구역 정비(표준화)	63개소	63개소	정비			4,000	4,000	
	소계(2개 사업)	-	-	-			4,250	4,250	
보행환경 정비	보행환경 개선지구	1개소	4개소	3개소		1,200	1,200	2,400	
	차량진입구 및 보도폭 정비	1식	1식	1식					사업시행자
	보도 재포장	1식	1식(2)	1식			1,000	1,000	
	육교철교(철거수)	11개소	13개소	2개소			240	240	
	점자블럭 설치(정,선행)	1식	1식	400m			100	100	대당0.2
	위규 블럭도 교체	1식	1식	200개			80	80	대당0.4
	음향신호기 설치	304	344	40개			100	100	대당0.2
	진여사간 표시기 추가 설치	850	890	40개소			20	20	대당0.5
	투광기 설치	455	495	40			120	120	대당3
	가로등 설치	1식	1식	상시			500	500	
	소계(9개 사업)	-	-	-		1,200	3,120	4,320	
전체계(22개 사업)	91	162	71	6,978	4,996	21,098	33,064		

참여기술자 명단 및 연락

성 명	직 책	자 격 명	참 여 기 간	업무분야	비 고
김 효 종	교통부 부사장	교통기술사 / 공학박사	'22. 11 ~ 현재	사업책임기술자	
박 영 미	교통부 이 사	조경기사	'22. 11 ~ 현재	분야책임기술자	
이 중 명	교통부 이 사	교통기사	'22. 11 ~ 현재	분야참여기술자	
배 희 진	교통부 과 장	교통기사	'22. 11 ~ 현재	분야참여기술자	
김 우 준	교통부 과 장	공학사	'22. 11 ~ 현재	분야참여기술자	
박 상 서	교통부 과 장	공학사	'22. 11 ~ 현재	분야참여기술자	
최 창 훈	교통부 대 리	토목기사	'22. 11 ~ 현재	분야참여기술자	
전 주 영	교통부 사 원	교통기사	'22. 11 ~ 현재	분야참여기술자	
박 현 호	교통부 사 원	공학사	'22. 11 ~ 현재	분야참여기술자	

연 락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아기술공사 교통부 - 전화 : 062-383-0565 062-383-0566 062-383-0567 - Fax : 062-383-0568 - e-mail : dtrans@naver.com • 용역관련 문의 : 김효종(010-3615-5103)
-------	---